

한·중

FTA 토론회

I N V I T A T I O N

일시 2012. 1. 31(화) 09:30~17:45

장소 COEX 그랜드 컨퍼런스룸 402호



09:30~09:50 등 록

09:50~09:55 개회사 : 채 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09:55~10:00 축 사 :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10:00~12:30 Session 1

사회: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1) 한·중 FTA의 경제적 영향

김영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한·중 FTA의 외교안보적 영향

정진영(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장)

3)제조업

김석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4) 농업

어명근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수산업

장홍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토론

송백훈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

유성우 (지식경제부 자유무역협정팀 팀장)

김진진 (농림수산식품부 지역무역협정과장)

12:30~14:00 중식

14:00~16:30 Session 2

사회: 안세영 (서강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1) 서비스

이시욱 (명지대학교 교수)

2) 문화관광

이성태(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3) 교육

박재윤(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4) 투자

고준성(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지재권

김원오(인하대학교 교수)

토론

조창상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장)

제상원 (한국관광공사 한류관광팀장)

조희래 (리앤목 특허법인 변리사)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16:30~16:45 Coffee Break

16:45~17:45 Session 3: 종합토론

사회: 현정택 (인하대학교 교수)

패널토론

김창규(지식경제부 전략시장협력관)

안세영(서강대학교 교수)

온기운(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윤석원(중앙대학교 교수)

윤태용(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정인교(인하대학교 교수)

최낙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석영(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Session 1

KIEP



한·중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김영귀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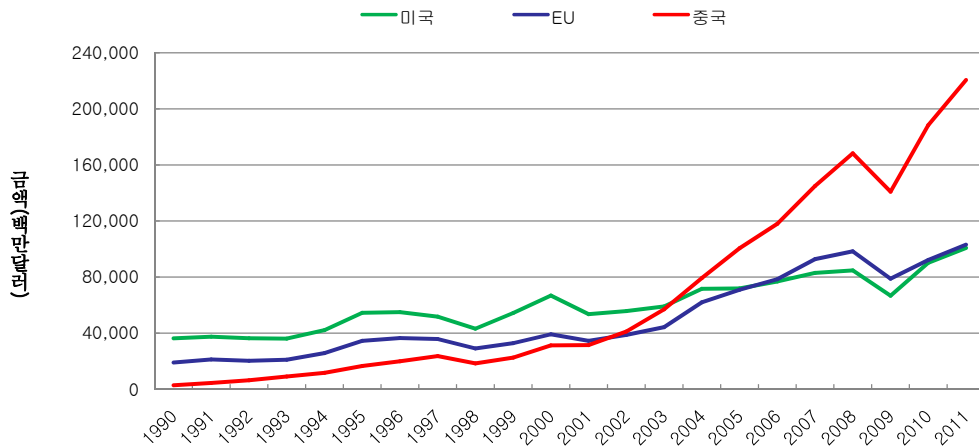


Contents

- ▀ 1. 한·중 경제관계
- ▀ 2. 관세 철폐 효과
- ▀ 3. 비관세 장벽, 규범 효과
- ▀ 4. 서비스 및 투자 개방 효과
- ▀ 5. 통상환경의 변화 (기회비용)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미국, EU, 중국과의 교역액 (1990~2011)



자료: K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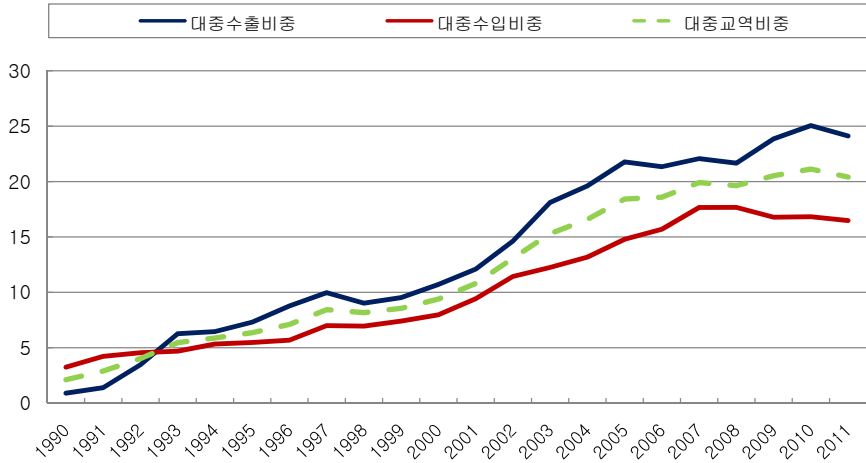
양국의 주요교역상대국 (2011)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한국			중국		
	국가	교역액	비중	국가	교역액	비중
1	중국	220,631	20.4	미국	401,780	12.3
2	일본	108,015	10.0	일본	310,925	9.5
3	미국	100,770	9.3	홍콩	248,904	7.6
4	사우디아라비아	43,941	4.1	한국	223,866	6.9
5	호주	34,486	3.2	독일	155,093	4.8
6	홍콩	33,290	3.1	대만	146,469	4.5
7	대만	32,891	3.0	말레이시아	81,586	2.5
8	인도네시아	30,779	2.8	브라질	77,610	2.4
9	싱가포르	29,820	2.8	러시아	70,743	2.2
10	독일	26,467	2.4	인도	67,265	2.1
	소계	661,090	61.2	소계	1,784,241	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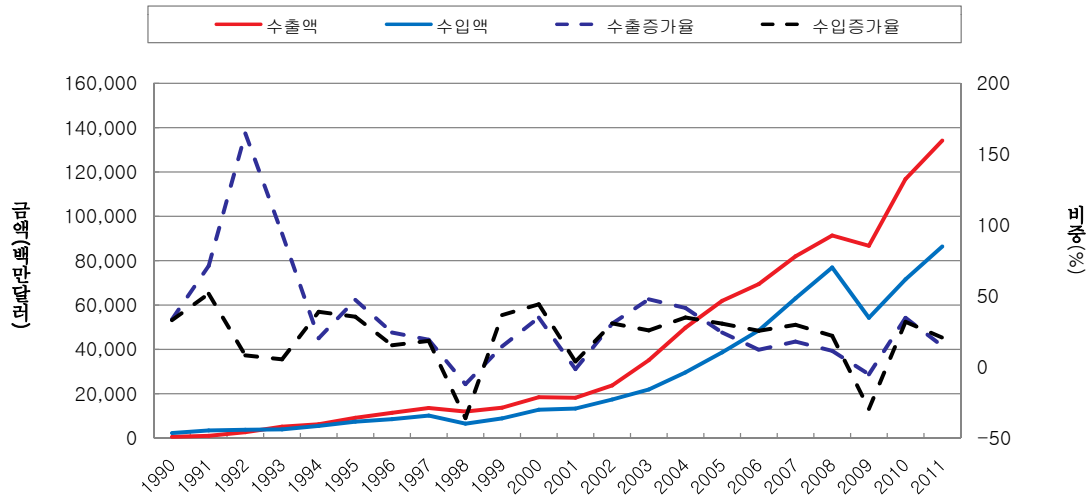
자료: KITA

대중국 교역비중 (199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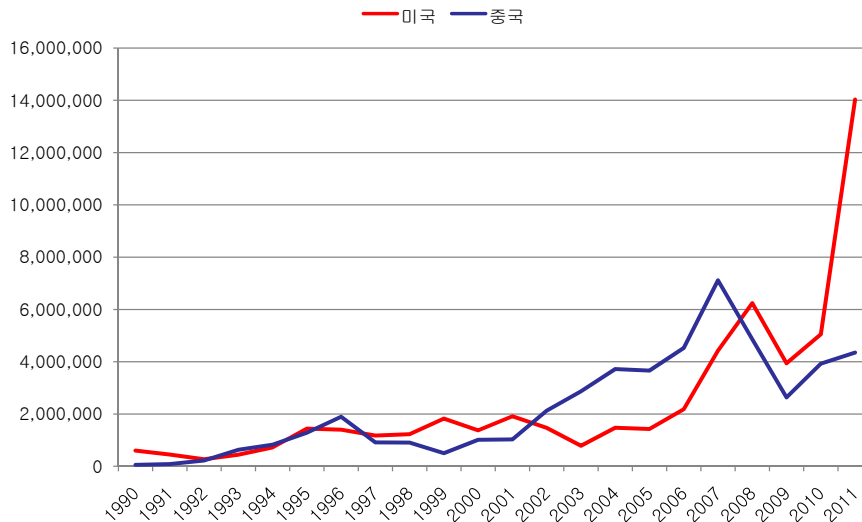
자료: KITA

한중간 상품교역 (1990~2011)



자료: KITA

한국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투자 (1990~2011) (단위: 천 달러)



주: 신고금액 기준
자료: 수출입은행

□ 연산가능일반균형 (CGE) 모델을 이용하여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를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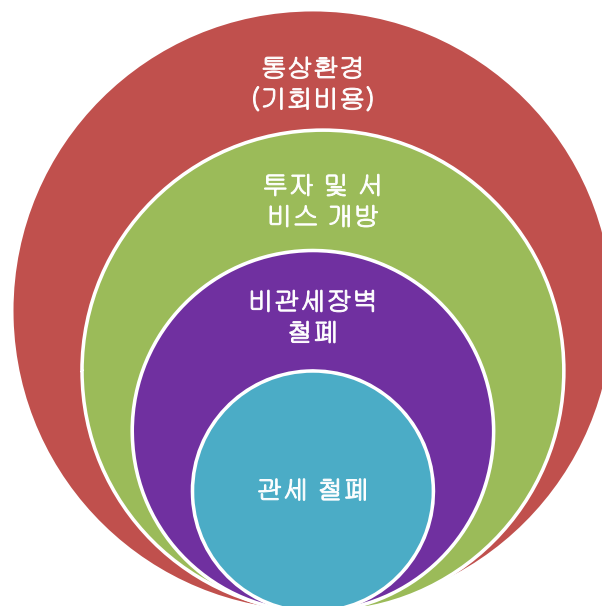
- 이는 상품 관세 철폐 시나리오 구성이 가장 객관적이며, 다른 분야의 개방에 따른 시나리오 구성에는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
- 이런 측면에서, 상품 관세 철폐에 따른 FTA효과는 하한선(lower bound)로 해석할 수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는 포괄적인 FTA를 추구하기 때문에 서비스 및 투자 개방 및 규범 이슈에 따른 효과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미, 한·EU FTA의 경우 서비스나 투자 개방에 따른 효과를 외생적 생산성 증대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감안하였음.

- 미국이나 EU와의 FTA에서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 및 정책의 선진화(upgrade)와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생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또한 FTA의 효과분석시 FTA 정책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는데, 여기에는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가 없음.



한중간 주요수출품목 (2011)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MTI 2단위)	금액	비중	품목(MTI 2단위)	금액	비중
1	전자부품	41,836	31.2	전자부품	14,119	16.3
2	석유화학제품	21,601	16.1	산업용전자제품	12,378	14.3
3	광물성연료	11,039	8.2	철강제품	12,144	14.1
4	산업용전자제품	10,312	7.7	섬유제품	4,412	5.1
5	수송기계	8,641	6.4	정밀화학제품	4,282	5.0
6	철강제품	5,178	3.9	중전(heavy electric) 기기	3,928	4.5
7	기초산업기계	5,167	3.9	수송기계	2,745	3.2
8	산업기계	4,536	3.4	농산물	2,583	3.0
9	비철금속제품	3,343	2.5	가정용전자제품	2,315	2.7
10	정밀화학제품	3,257	2.4	기초산업기계	2,293	2.7
	소계	114,910	85.6	소계	61,199	70.8

자료: KITA

-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품목은 모두 IT제품이 주를 이룸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차 상품에서 IT제품으로 바뀌고 있음
- 한중 교역은 주로 중간재 (부품 및 부분품)가 높은 비중을 차지

한·중 교역품목 및 구조

항목		대중국
교역 품목	수출	LCD,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수입	반도체, 컴퓨터, LCD, 철강판
교역 구조	중간재	- 수출보다는 수입에서 증가 추세 - 부품 및 부분품 비중이 높아짐
	최종재	- 수입보다 수출에서 크게 증가 - 소비재보다 자본재 비중이 월등함

관세철폐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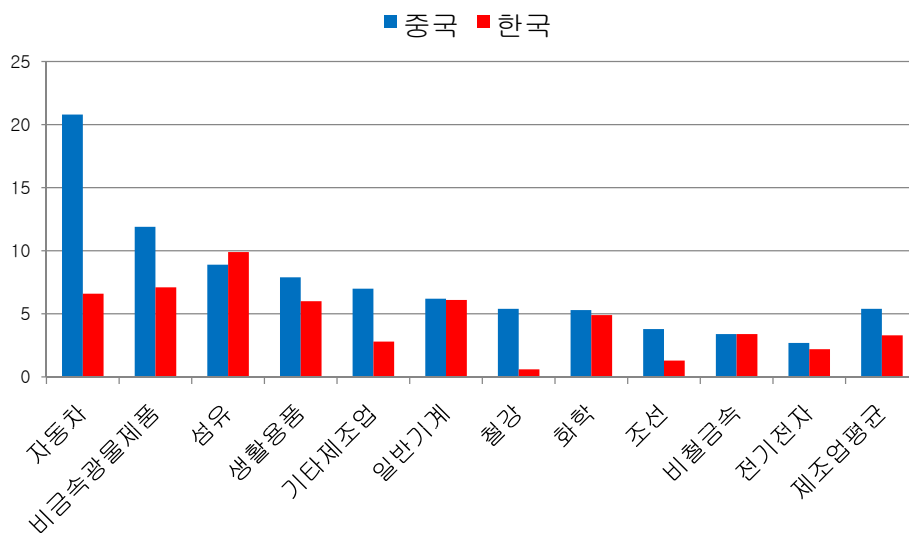
- 한중일 모두 세계시장에서 농축산업 및 금속광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제조업 중심의 교역구조를 갖음 → 특화분야 선정 및 집중이 필요
- 한·중·일의 상호의존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2009년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초과
대중 및 대일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2.1%와 67.5%
최종재의 교역을 증가시키기 위한 FTA추진 필요

[표 11] 한중, 한일 교역경쟁구조

항목		대중국
경쟁 관계	TSI	- 한국의 수출특화산업: 석유, 화학, 기계, 자동차 제조업 - 중국의 수출특화산업: 농림수산업, 채굴업, 음식료품 제조업, 의복, 목재
	RCA	- 절대우위: 석유, 1차금속, 자동차 제조업 - 절대열위: 의복 및 모피, 가죽, 가방 및 신발, 비금속광물 제조업

관세철폐 효과

한국과 중국의 가중평균 명목관세율 (2008, 2010년 평균)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관세율표 및 한국무역협회, 중국관세율DB로부터 계산. 김석진 (2011)에서 재인용

관세철폐 효과

□ 한중 FTA의 상품 관세 철폐에 따른 효과는 CGE분석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 중 상당부분이 중간재교역이며, 가공을 통해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과정에 관세환급이 이루어져 실질관세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현재 CGE분석에서는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
- 장기적으로는 중국내수 시장을 영두에 둔다면 관세환급으로 인한 FTA 실효성 논란은 줄어들 수 있음
- 또한 한중FTA를 계기로 중간재 뿐 아니라 최종재 수출로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음

- 산업구조의 보완관계나, 농업생산 및 소비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한 영향은 모두 CGE분석결과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비관세장벽 및 규범 효과

□ 중국의 경우 비관세 장벽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의 감축에 따른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수입품 검사를 포함한 관세행정 효율화 등 무역원활화 이슈를 FTA에서 다룬다면 이로 인한 교역 증대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국가(지역)별 비관세장벽의 유형별 빈도수

분야	북미	EU	일본	대양주	중국	러시아	인도	ASEAN
수입규제(8)	3	0	1	1	7	6	4	4
통관(15)	5	3	2	1	8	5	8	7
무역구제(3)	1	1	1	2	1	0	2	2
정부조달(8)	4	1	1	5	3	2	6	7
기술장벽(15)	4	5	9	1	8	5	7	6
지식재산권(3)	1	0	0	0	3	3	1	3
경쟁(2)	1	0	0	0	1	2	2	1
계(68)	19	10	14	10	31	23	30	30

자료: 외교통상부(2006), USTR(2007)과 기타 「국별 통상장벽 보고서」 등에서 정리. 한국의 주
 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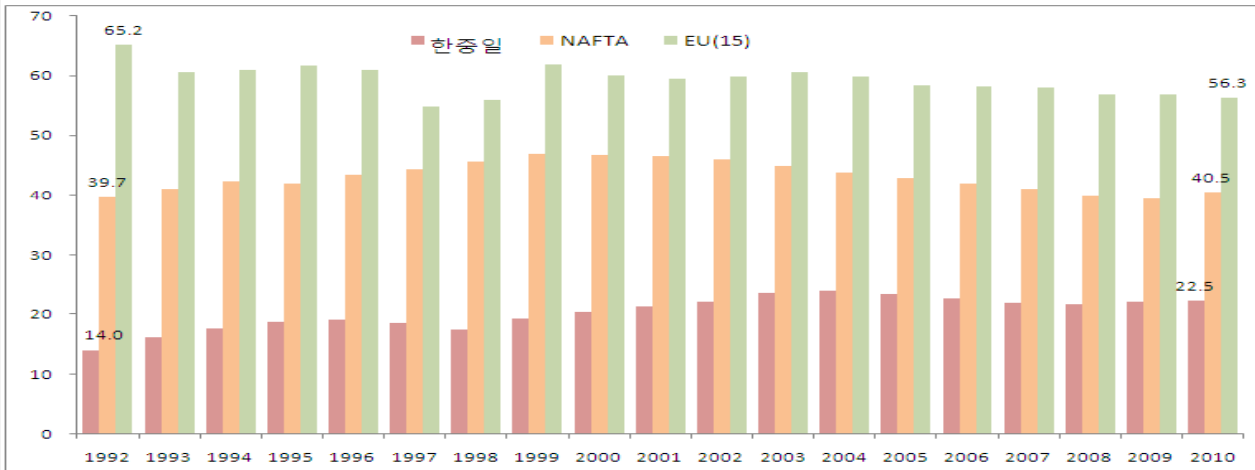
서비스 및 투자 개방 효과

- 한중FTA의 서비스나 투자 시장 개방에 따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서비스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중국에 진출했거나 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으로 대중국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외자 진입 규제, 법 집행의 투명성 결여 등

통상환경의 변화 (기회비용)

- 전 세계적 통상환경 변화와 중국의 성장에 대해 고려한다면 한중FTA의 효과(기회비용)는 그만큼 커짐
- 1. 전 세계적 통상환경의 변화 (경제블럭화)
 - 전 세계적으로 FTA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block화를 통한 글로벌화가 진행중
 - 세계적인 FTA 확산 흐름에 역행하는 경우 무역전환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 2.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세
 - NAFTA, EU의 역내교역비중에 비해 한중일 역내교역비중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며, 장기적으로는 역내교역비중을 높여 역외경제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
 - 따라서 한중FTA는 한일FTA를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고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 될 수 있음

한·중·일 및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비중 (1991~2010)



자료: IMF. 2009.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2011, KIEP)에서 재인용

3. 중국의 변화

-중국도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과 ECFA를 체결

- o 대만은 중국의 기체결 FTA 파트너 중 유일한 제조업 강국
- o 중-대만 ECFA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

-또한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제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은 내수중심으로의 성장전략으로 전환중

- o 따라서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국의 내수시장을 선점 효과 기대
- o 수출선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위기상황에 대처할 필요
- o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 발표한 '2012년 전세계 경제자유도 지수 보고'에서는 중-대만 ECFA가 대만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

- 중국의 FTA 추진 전략
 - (1) 인접 국가와의 FTA를 통한 지역경제통합의 주도권 확보
 - (2) 최근 에너지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원거리 국가들과 협상
- 홍콩, 마카오와의 CEPA, 중대만 ECFA, 싱가포르와의 FTA 등 중화경제권
- 19개국과 FTA 협정체결

중국의 FTA 추진 현황

진행 상황	대상국
발효 또는 협상 종료	홍콩, 마카오,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대만 (ECFA)
협상중	GCC, 호주, SACU,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검토중	한국, 한·중·일, 인도, 스위스

자료: China FTA Network

- 또한 한중FTA가 체결되면, FTA 허브국가로서 교역중심국 및 진출통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중국이나 미국, EU가 FTA를 활용하여 상대국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을 전초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은 중국에 비해 투자여건이 낫고, 미국이나 EU에 비해서는 비용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동북아의 외교안보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한중FTA로 인한 정세 불안감해소는 투자 활성화에 기여

감사합니다

한·중 FTA의 외교안보적 영향

정진영
경희대 국제대학/국제대학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의 "한·중 FTA 토론회"(2012년 1월 31일, COEX)에서 발표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임.

I. 국제경제관계와 국제정치/외교안보관계

1. 두 개의 시각

- 현실주의(Realism): "Trade follows the flag." 외교안보차원에서의 관계가 밀접한 나라들 사이에 무역 등 경제협력이 활발.
- 자유주의(Liberalism): "Trade brings peace." 무역관계가 활발한 나라들은 서로 싸우지 않고 외교안보 차원의 협력이 강화.

2. 중국의 선택

-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조건을 일본(1972년) 및 미국(1979년)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화여 조성.
- 해외무역의 확대에 따라 중국의 대외관계가 개선되고 국제적 영향력도 증대.

3. 한중관계

- 한중관계는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교정상화(1992)가 이루어졌음.
- 북중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중수교는 일중수교보다 20년 늦게 이루어졌음.
-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동맹국이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이 증대하는 불균형을 안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북한과의 군사동맹국이면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불균형을 안고 있음.

II. 특혜무역협정(PTA)의 외교안보적 외부효과

- 다자간 무역협정을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PTA는 무역과 투자 등 경제 협력관계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옴. 물론 불평등한 PTA는 손해를 보는 당사국들의 불만을 증대시켜 오히려 외교안보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음. 또한 PTA에 따른 무역이전효과가 클 경우 주변의 무역파트너들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음.
- PTA의 외교안보적 외부효과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 장래의 경제적 수익에 대한 기대를 통하여 국제협력을 강화
 - 상호주의적 협상을 통한 이익의 균형 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갈등관리의 제도화를 통하여 갈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고 국제관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줌
- 누가 서로 PTA 파트너가 되는가?
 - 외교안보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들끼리: 미국-이스라엘 FTA 등
 - 인접국들과의 갈등관리 및 관계강화: NAFTA, EU, ASEAN 등
 - 외교안보적 수단으로서의 PTA: 미국 및 EU의 대 개도국 및 중동국가들과의 FTA 추진

III. 한중 FTA의 필요성에 대한 양국의 입장

- 한국과 중국은 서로 중대한 무역 파트너로서 무역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 DDA 타결전망이 매우 어둡고 WTO 체제의 효과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양국간의 중대한 무역관계를 WTO에 맡겨둘 수만은 없음.
- 미국과 중국이 외교안보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 모두에서 경쟁과 갈등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음.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특수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유지를 위해서 이들 강대국 관계를 적절히 활용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중국이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한중 FTA를 보는 시각에는 유사성과 차이점이 함께 존재함.
 - 중국의 입장: 한중 FTA는 한국 및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한반도의 남북한 모두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증대와 남북관계의 관리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한국의 입장: 한중 FTA는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안정화시킴으로써 중국의 고속성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한중간의 신뢰증대를 통하여 북한의 핵 포기과 개혁개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유용할 것임.

IV. 한중 FTA의 외교안보적 기대효과

-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추세를 고려할 때 한중 FTA는 세 가지 차원의 외교안보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1. 한중간의 신뢰 강화

-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미국의 군사동맹국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한미 FTA를 통하여 한미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인식.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걸림돌로 인식됨. 이에 따른 대 한국 불신은 미중관계의 잠재적 악화 가능성으로 더욱 심화.
- 또한 북한체제의 불안정과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안보위협이 될 수 있고 동북지방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중국은 우려.
-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시장접근의 애로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북한의 후견국으로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음.
- 한중 FTA는 이러한 양국 사이의 불편한 인식과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남북관계와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 영향

- 한중 FTA로 한중간의 신뢰가 강화되면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과 후견국 역할에 대한 비판이 중국 내부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큼. 중국 내부에서 대 한반도 정책관련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이고, 결국 합리적 국제주의자의 입지가 강화될 것임.
 - 북한도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남북관계 개선으로 가는 선택을 하도록 압박을 받게 될 것임.
 - 한국은 중국에 대한 시장접근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북정책을 중국과 조율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임.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등에서 남방삼각 대 북방삼각의 전통적인 대립구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룰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임.
- 한중 FTA 체결과 이에 따른 한중관계의 강화는 북한 집권세력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으로의 변화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큼. 한중 FTA는 한중 국교정상화 정도는 아닐지라도 북한 집권층에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고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동북아/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국의 역할 강화

- 한중 FTA는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 및 중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임. 일본 자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중국시장을 한국에 잃을 것이라는 일본 내의 우려가 확대될 것임.
- 일본의 TPP 참여 공식화로 미중간의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경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한중 FTA가 체결되면, 동아시아가 지역적 분열이 아니라 지역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한EU,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세계의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될 것임. 이는 한국경제가 개방과 효율성 증대의 선순환을 통하여 선진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임. 물론 이는 한중 FTA가 어떤 내용으로 체결되고, 한국이 앞으로 거대경제권들과의 FTA를 어떻게 대응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음.
- FTA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한국이 지속적 발전을 이룩하려면 우리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갖추어야 함. 그렇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오히려 매우 큰 도전과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임.

V. 한국의 협상력 강화 방안

-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가 높고, 한국이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국주의적 태도와 공산당의 일당지배국가의 형태 등이 모두 한국을 한중 FTA협상에서 불리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특히 한국의 요구사항이 단순히 관세율의 인하를 넘어 중국 내부의 경제시스템 계획과 연관된 다양한 비관세 장벽 이슈들이어서 중국의 양보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음.
- 그러나 현단계에서의 한중 FTA 협상은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도 많이 있음.
 - 한중 FTA 체결을 우리보다 중국이 더 강력히 바라고 있음.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안보적 수단으로 역내 국가들과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임.
 - 중국은 대만, 싱가포르, 동남아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는 이를 전례로 활용하여 중국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중국은 한국과의 FTA를 자국내의 경제개혁과 선진화를 이룩하기 계기로 삼고 차후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과의 FTA를 위한 준비로 활용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큼.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매우 세밀히 체크하여 중국과의 협상에 임해야 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한중 FTA 토론회」, 2012. 1. 31.

한중 FTA 제조업 분야 쟁점과 대응방안

2012. 1. 31.

김 석 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 제조업 분야 한중 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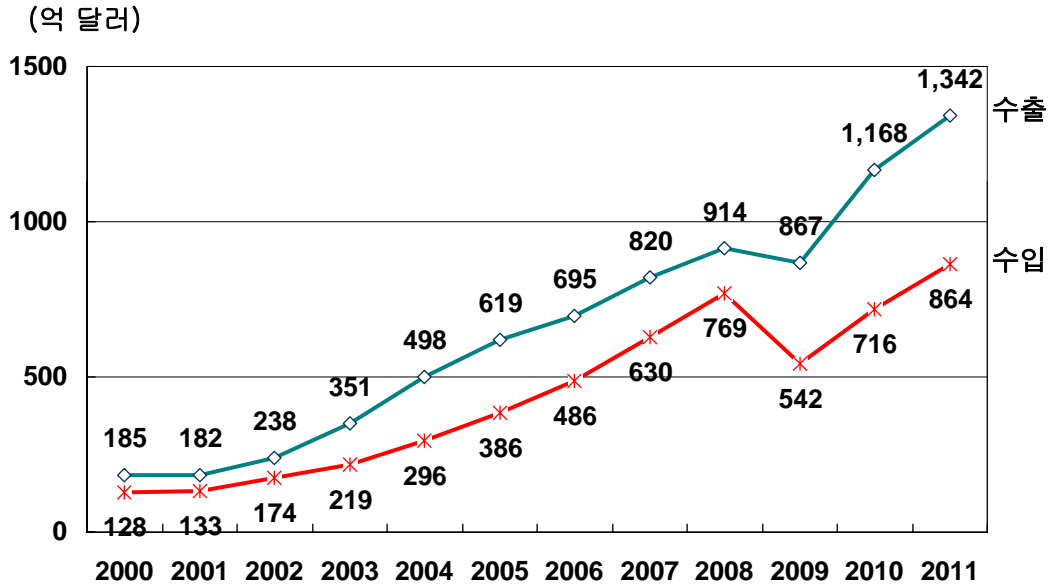
[2] 한중 양국의 관세장벽 현황

[3] 한중 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4] 제조업 분야 쟁점과 대응방안

한중 교역은 빠르게 성장해 왔고 한국 측이 큰 폭의 흑자 기록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 (한국측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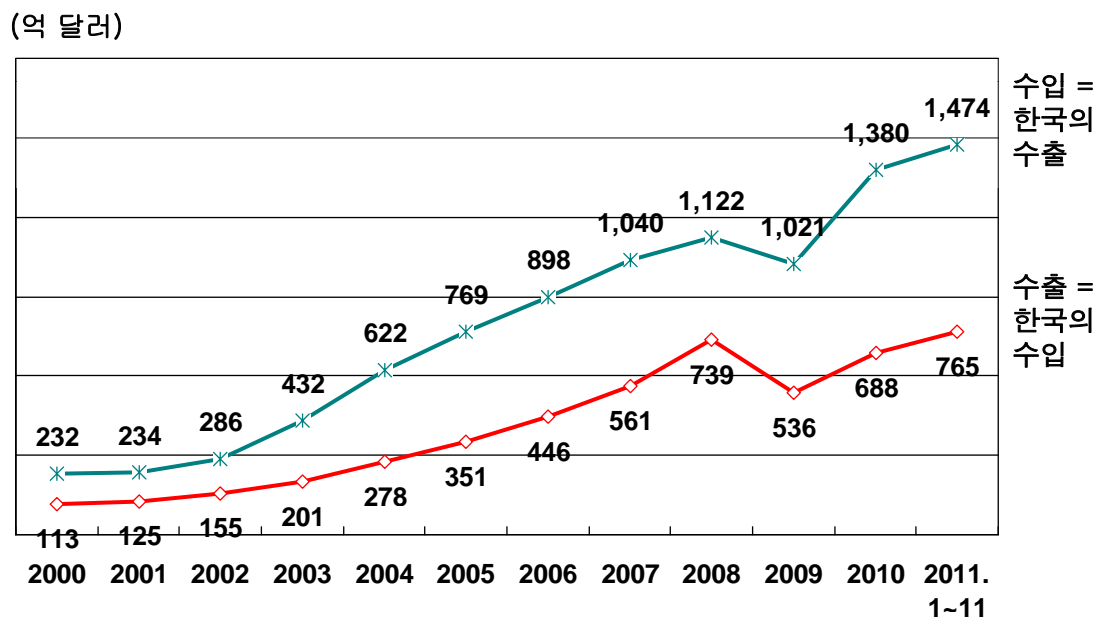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1/39

중국 통계로는 한국 흑자 더욱 커... 홍콩 경유 교역 때문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추이 (중국측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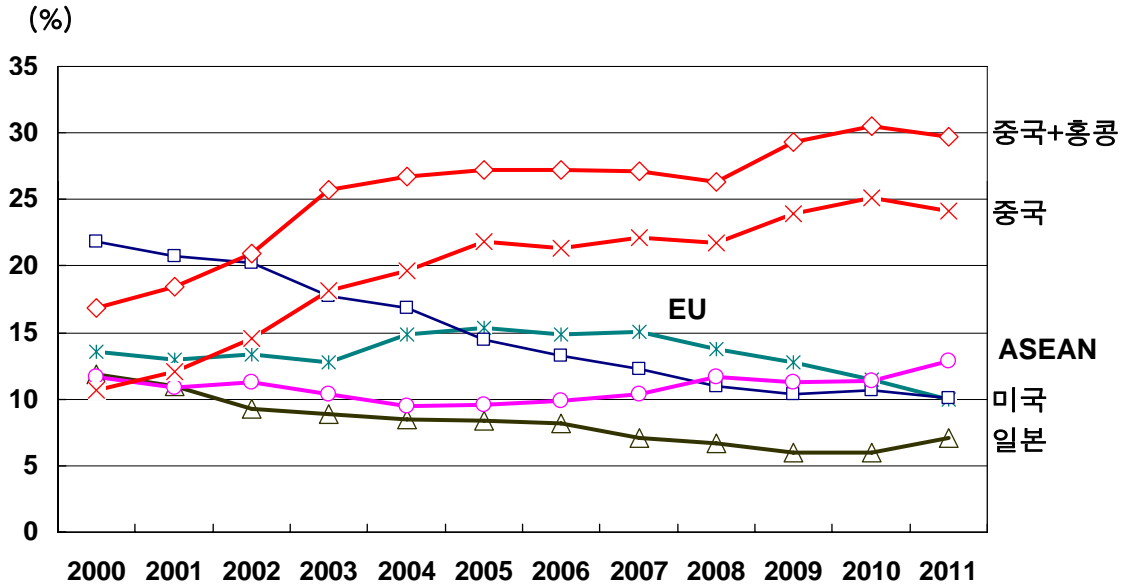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2/39

2000년대 초 이후 중국시장의 중요도 크게 상승

한국 수출시장 주요 경제권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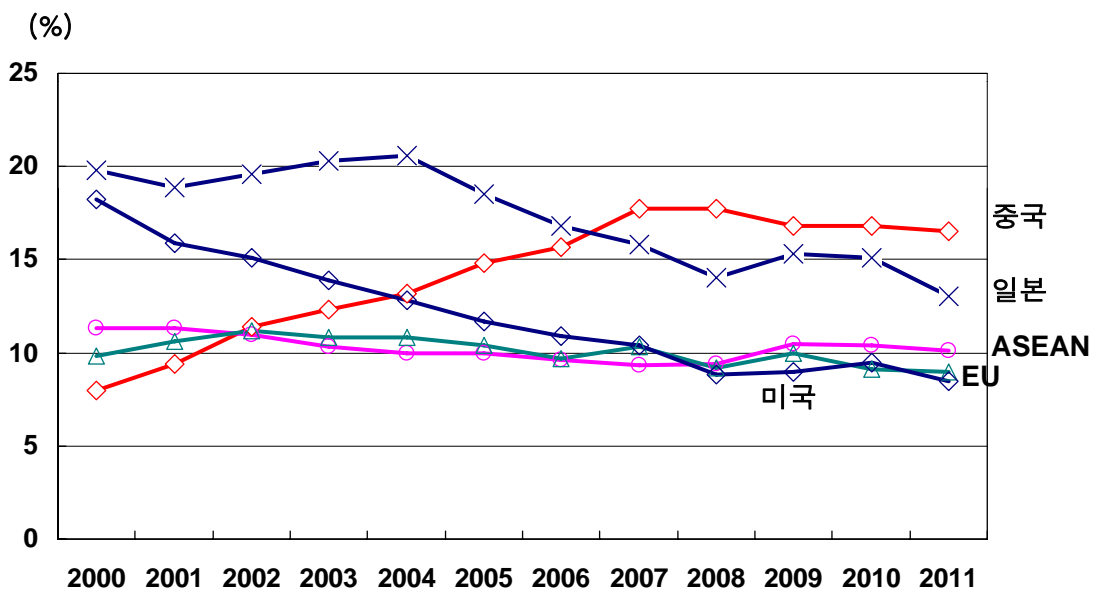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3/39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입상대국으로 부상

한국 수입시장 주요 경제권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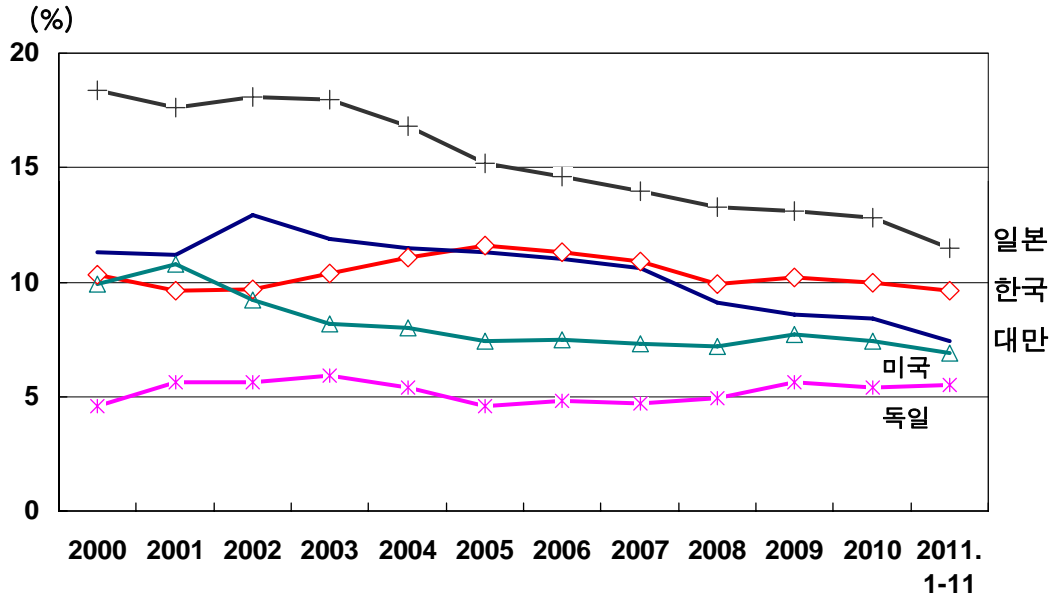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4/39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경쟁상대는 일본과 대만

중국 수입시장 주요 수입상대국별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5/39

전기전자, 화학, 철강, 기계 등이 주요 교역 업종

한국의 대중국 교역 업종별 비중 (2011년, %)

대중국 수출

전기전자	42.9
화학(석유제품 포함)	27.6
기계(수송기계 제외)	10.5
철강금속	6.5
수송기계	6.4
섬유	2.2
플라스틱, 고무, 가죽	2.0
농림수산물	0.8
생활용품	0.5
광산물(석유제품 제외)	0.3
잡제품	0.1

대중국 수입

전기전자	40.1
철강금속	17.0
화학(석유제품 포함)	11.5
섬유	7.6
기계(수송기계 제외)	6.2
농림수산물	5.2
생활용품	3.9
광산물(석유제품 제외)	3.2
수송기계	3.2
플라스틱, 고무, 가죽	1.7
잡제품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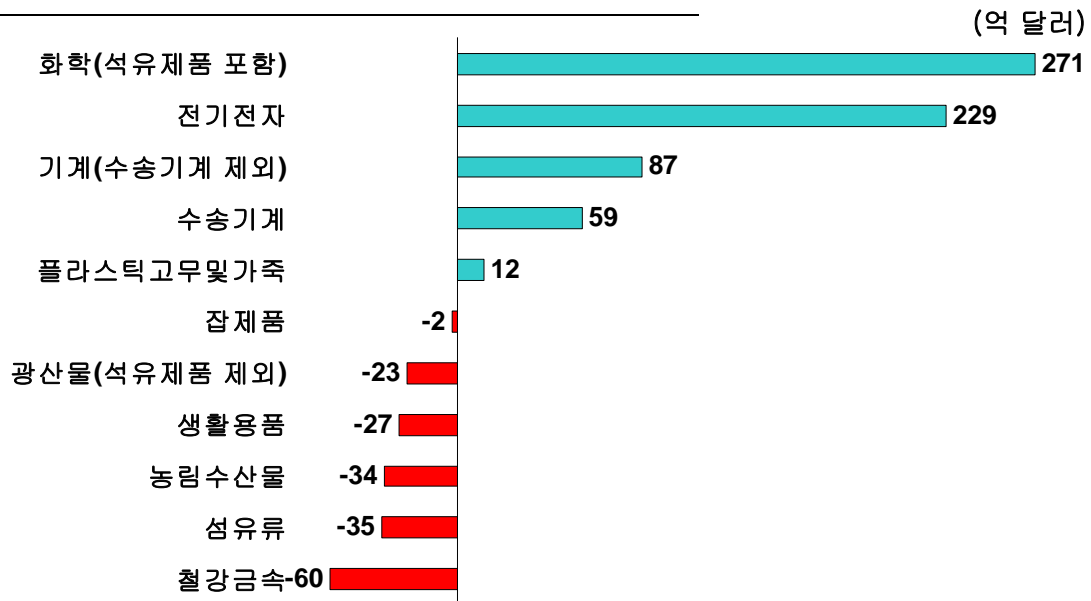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주: MTI 대분류 기준 (단, 석유제품은 광산물에서 화학으로 재분류했고, 기계류 중 수송기계를 별도로 분류)

6/39

한중 교역의 특성은 업종별로 크게 달라

한국의 업종별 대중국 무역수지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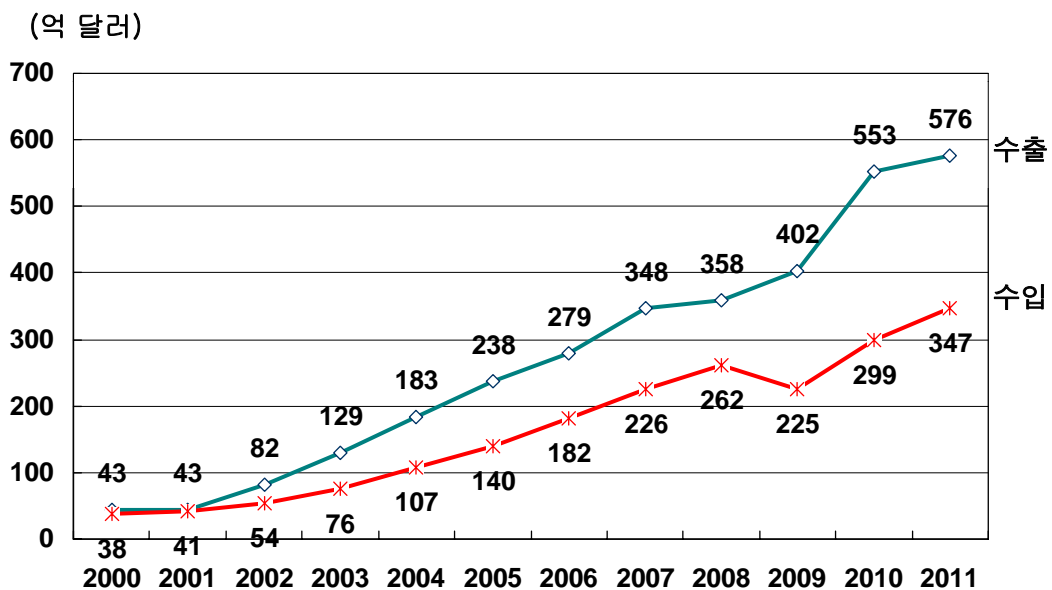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주: MTI 대분류 기준 (단, 석유제품은 광산물에서 화학으로 재분류했고, 기계류 중 수송기계를 별도로 분류)

7/39

[전기전자] 최대 수출업종... 대규모 흑자 기록 중

전기전자: 대중국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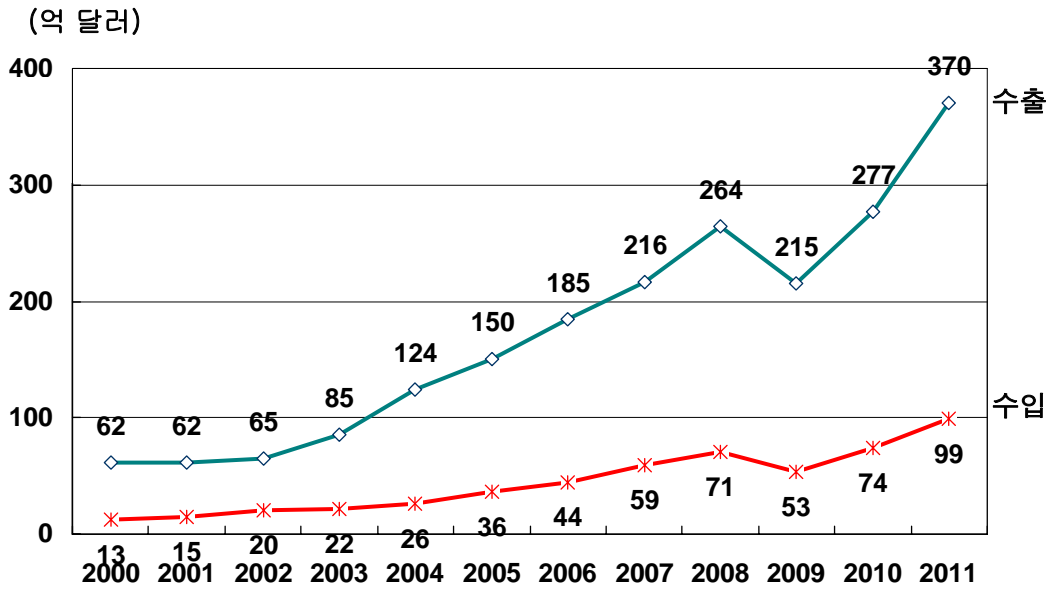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주: 전기전자 = MTI 코드 8

8/39

[화학] 수출 특화 업종... 흑자 규모 증가세

화학(석유제품 포함): 대중국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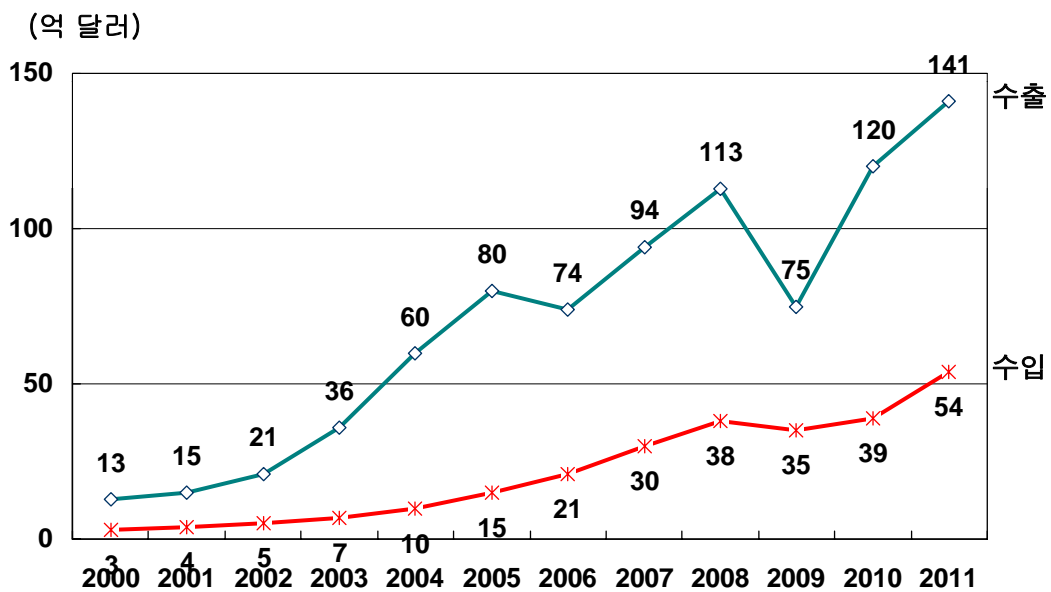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주: 화학 = MTI 코드 2(화학) + 133(석유제품)

9/39

[기계] 역시 주력 수출업종... 대규모 흑자 기록

기계류(수송기계 제외): 대중국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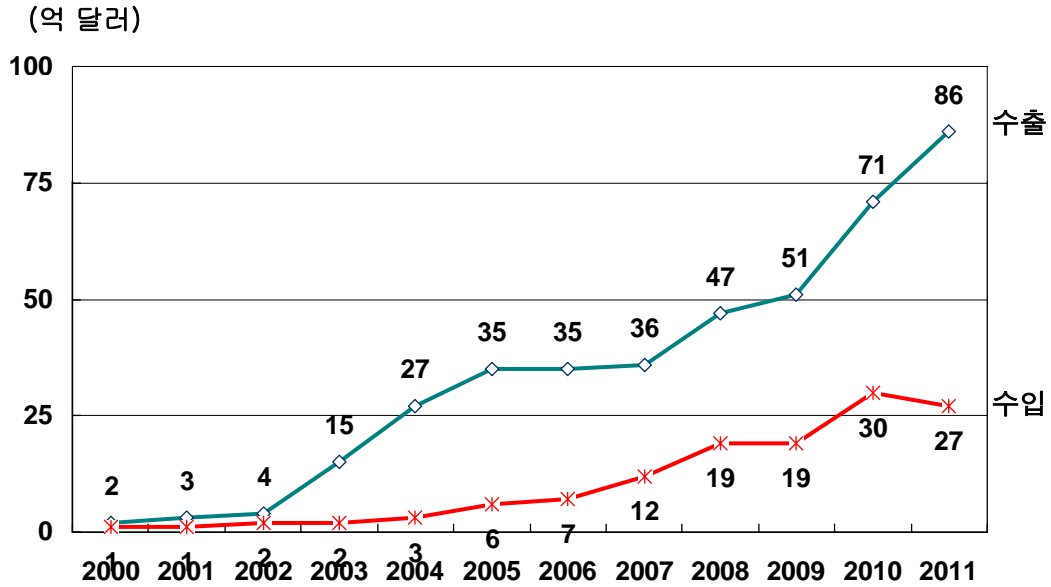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주: 기계류 = MTI 코드 7(기계)에서 74(수송기계) 공제

10/39

[수송기계] 최근 수출규모 급증으로 큰 폭의 흑자 기록

수송기계: 대중국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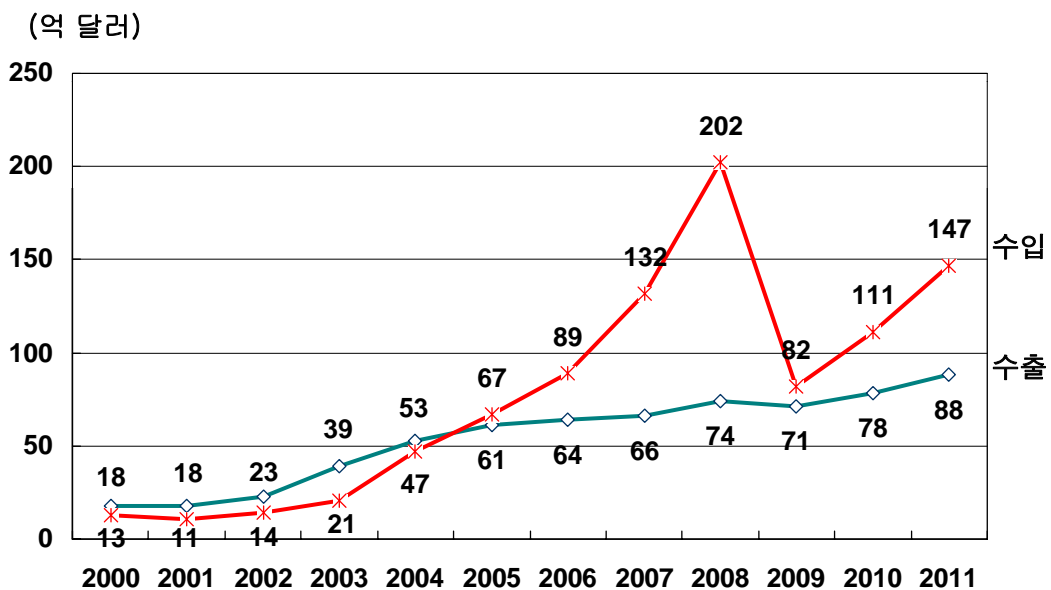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주: 수송기계 = MTI 코드 74

11/39

[철강금속] 대중국 수입이 급증해 적자업종으로 반전

철강금속: 대중국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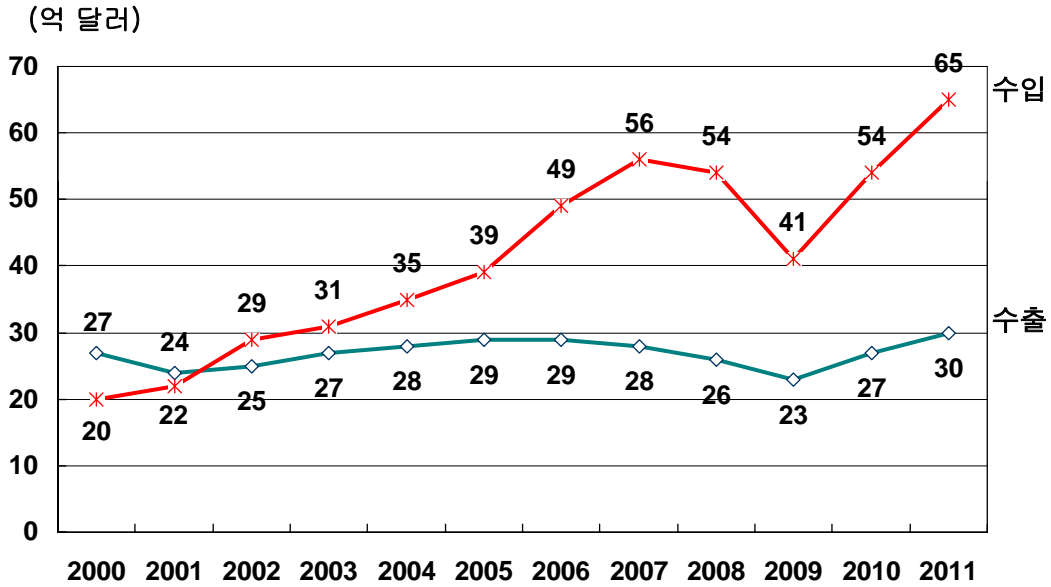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주: 철강금속 = MTI 코드 6

12/39

[석유] 대중국 수입이 수출의 2배에 이르는 적자 업종

석유류: 대중국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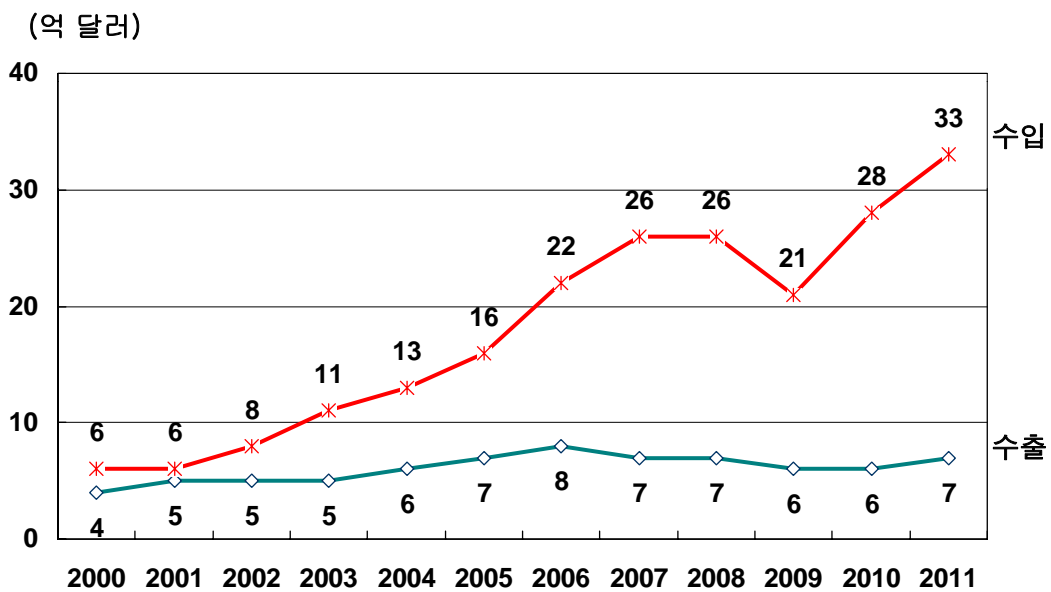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주: 석유류 = MTI 코드 4

13/39

[생활용품] 대중국 수입 특화 업종... 교역 규모는 작은 편

생활용품: 대중국 수출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주: 생활용품 = MTI 코드 5

14/39

[1] 제조업 분야 한중 교역 현황

[2] 한중 양국의 관세장벽 현황

[3] 한중 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4] 제조업 분야 쟁점과 대응방안

[중국] 전기전자는 대체로 무관세 또는 저관세

전기전자 (1) :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 주요 품목 관세율 현황

HS code	품명	2011. 1~11 대한민국 수입액 (백만 \$)	중국 관세율 (%)	업종 중분류
90138030	26인치 이상 액정판	18,205	3 or 5	디스플레이
85423200	메모리 전자집적회로	13,318	0	전자부품
85423100	프로세서와 컨트롤러의 전자집적회로	12,766	0	전자부품
85423900	기타 전자집적회로	4,187	0	전자부품
85177030	휴대용 무선전화기용 부분품	4,008	0	산업용전자
84733090	8471 컴퓨터 기타 부품	2,557	0	산업용전자
85078020	기타 리튬이온 축전지	1,625	9.6	전자부품
85340090	4층 이하의 인쇄회로	1,468	0	전자부품
85258013	핸드폰용 카메라부속품	1,308	2	산업용전자
85419000	반도체 디바이스 부분품	1,006	0	전자부품
84717010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833	0	산업용전자
85340010	4층 이상의 인쇄회로	789	0	전자부품
84798999	CD생산에 사용되는 금속 master 생산설비	606	0	산업용전자
85322410	기타의 고정식 축전기	535	0	전자부품
85414010	발광 다이오드	528	0	전자부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및 중국관세율 DB.
주: 관세율은 최혜국 관세율 및 아태무역협정 관세율.

[중국] 전기전자는 대체로 무관세 또는 저관세

전기전자 (2) : 중국의 대 한국 수입 주요 품목 관세율 현황

HS code	품명	2011.1-11 대한국 수입액 (백만\$)	중국 관세율 (%)	업종 중분류
85369000	전압 1000v이하 전로(회로)스위치 등 전기 장치	510	0	전자부품
85235110	고체형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기록하지 않은 것)	486	0	산업용전자
85423300	증폭기 전자집적회로	432	0	전자부품
85299082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모듈과 그 부분품	358	5	산업용전자
85389000	제 8535,8536,8537호 장치의 기타 부분품	284	7	전자부품
90318090	활주로의 마찰계수 테스트기	280	3 or 4	산업용전자
85299049	픽업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디지털카메라 기타 부분품	263	2	산업용전자
85444919	전압 80V이하 케이블 (접합한것 / 기타 전기도체)	262	0	전기기계
85366900	전압 1000v이하 플러그와 소켓	255	0	전자부품
85363000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기기	242	9	전기기계
85414090	기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233	0	전자부품
84439990	기타 인쇄기,복사기 및 팩스의 부분품 및 부속품	207	0	산업용전자
85411000	다이오드 (감광성 다이오드 또는 발광다이오드 제외)	177	0	전자부품
85299042	비디오카메라레코더,디지털카메라, 핸드폰용 픽쳐픽업모듈	169	2 or 10.8	산업용전자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및 중국관세율 DB.
주: 관세율은 최혜국 관세율 및 아태무역협정 관세율.

16/39

[중국] 화학은 대체로 6% 이하 저관세

화학 : 중국의 대 한국 수입 주요 품목 관세율 현황

HS code	품명	2011.1~11 대한국 수입액 (백만 \$)	중국 관세율 (%)	업종 중분류
27101911	항공용 석유	4,070	6	정유
29173611	테레프탈산	2,199	6	석유화학
27101922	5~7호 연료유	1,909	3	정유
29024300	파라크실렌	1,751	2	석유화학
29025000	스티렌	1,443	1.4	석유화학
39021000	폴로프로필렌	1,294	3 or 6.5	석유화학
29173619	기타 테레프탈산	1,258	6	석유화학
28046190	다결정 규소 웨이스트	1,134	1 or 4	정밀화학
27101120	나프타	1,103	1	정유
29012200	불포화 프로펜(프로필렌)	1,071	1	석유화학
27132000	석유아스팔트	1,041	5.6	정유
27101921	경디젤	1,019	6	정유
39033090	기타 ABS	999	6	석유화학
39012000	폴리에틸렌, 0.94 이상의 비중	893	3 or 6	석유화학
39074000	폴리카보네이트	756	3	석유화학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및 중국관세율 DB.
주: 관세율은 최혜국 관세율 및 아태무역협정 관세율.

17/39

[중국] 기계류 관세율은 대체로 10% 이하에서 다양

기계 : 중국의 대 한국 수입 주요 품목 관세율 현황

HS code	품명	2011.1~11 대한국 수입액 (백만\$)	중국 관세율 (%)	업종 중분류
90139020	레이저,망원경등 장치의 부분품과 부속품	1,231	8	광학기기
90019090	광통신용 미광 회로의 광학부품	934	0~7.6	광학기기
90012000	편광재료제의 판	895	4~7.6	광학기기
84314990	각종 건설장비의 기타 부분품	845	4.5	일반기계
84295212	트랙식의 엑스카베이터 (360도 회전)	825	8	일반기계
84073410	FSI 가솔린 엔진	526	5 or 7	일반기계
84099199	폐기 재순환(EGR) 장치	336	3.5	일반기계
84863090	기타 평판디스플레이용 기기 및 장치	323	0	정밀기계
84864039	기타 집적회로 승강,하역,운반 설비	298	3.5	정밀기계
84807100	CD 생산에 사용되는 전문 주형	205	0	일반기계
84122910	수압모터	203	10	일반기계
84862021	반도체 제조용 증기 침전장치	167	0	정밀기계
84289090	방사성 물질처리용 차폐실 리모콘 조종손	154	5	일반기계
84812010	유압 밸브	151	5	일반기계
90021990	통합 비디오 녹화 카메라 렌즈	144	6 or 15	광학기기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및 중국관세율 DB.
주: 관세율은 최혜국 관세율 및 아태무역협정 관세율.

18/39

[중국] 자동차는 대체로 고관세 (완성차와 엔진은 20% 이상)

수송기계 : 중국의 대 한국 수입 주요 품목 관세율 현황

HS code	품명	2011.1~11 대한국 수입액 (백만\$)	중국 관세율 (%)	업종 중분류
84081000	선박추진용 엔진	1,297	2.5	조선
87032353	피스톤내연발동기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084	22.5	자동차
87084091	소형차용 자동 기어시프트	580	6.5 or 10	자동차
87032352	피스톤내연발동기 (2000cc 초과 2500cc 이하 4륜구동)	500	22.5	자동차
87082990	기타 나열되지 않은 차 부품	416	9	자동차
87084099	기타 자동차용 기어박스 및 그 부속품	378	10	자동차
90328990	비행기 자동운전 시스템	264	1~7	기타수송장비
87089999	혼합동력자동차용 동력전동장치	177	6 or 10	자동차
87032412	피스톤내연발동기 (3000cc 초과 4000cc 이하 4륜구동)	155	22.5	자동차
84099910	기타 선박추진용 엔진의 부품	141	4.5	조선
84089093	출력 132.39kW 이상 농업용 디젤 엔진	140	4.5	기타수송장비
87082959	기타 차체 덮개	134	9	자동차
89080000	선박과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 (해체용)	134	3	조선
87032341	피스톤내연발동기 (1500cc 초과 2000cc 이하)	128	22.5	자동차
84089092	출력 14kW 초과 132.39kW 미만의 디젤 엔진	127	7.6	기타수송장비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및 중국관세율 DB.
주: 관세율은 최혜국 관세율 및 아태무역협정 관세율.

19/39

[중국] 철강금속은 대체로 5% 이하 저관세

철강금속 :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 주요 품목 관세율 현황

HS code	품명	2011.1~11 대한민국 수입액 (백만\$)	중국 관세율 (%)	업종 중분류
74031111	정제한 동	962	0	비철금속
72091790	두께가 0.5mm 이상 1mm이하의 평판압연제품	468	2.1	철강
72103000	아연을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평판압연제품	372	8	철강
72104900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한 평판압연제품	336	4	철강
76071900	기타 뒷면을 붙이지 않은 알루미늄 박	288	3 or 5.1	비철금속
74081100	정제한 동의 선(횡단면 최대치수가 6mm 초과)	253	2.8	비철금속
74101100	CCL 및 Printed circue board용 동박	246	2 or 2.8	비철금속
72107000	페인트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평판압연제품	245	4	철강
72085190	기타 두께 10mm 초과 20mm 이하 평판압연제품	220	6	철강
76061220	직사각형의 알루미늄판 (0.2mm 초과 0.28mm 미만)	213	4.2	비철금속
72091710	0.5mm 이상 1mm 이하 냉간압연한 평판압연제품	192	2.1	철강
72255000	폭 600mm 이상 냉간압연 기타 합금강재	171	3	철강
72091810	0.3mm 미만 냉간압연 평판압연제품	160	4.2	철강
76061259	알루미늄 판 (두께가 0.35mm 이상 4mm 미만)	154	4.2	비철금속
72193400	스테인레스강 (0.5mm 이상 1mm 이하)	153	10	철강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및 중국관세율 DB.
주: 관세율은 최혜국 관세율 및 아태무역협정 관세율.

20/39

[중국] 섬유류는 대체로 10% 내외의 상대적 고관세

섬유 및 생활용품 :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 주요 품목 관세율 현황

HS code	품명	2011.1~11 대한민국 수입액 (백만 \$)	중국 관세율 (%)	업종 중분류
41079200	그레인 스프릿 (가족)	222	5	생활용품
94019019	차량용 기타 의자 부품	122	0	생활용품
95049010	기타 전자식 게임기	104	0	생활용품
60063200	합성섬유제 - 염색된 것	161	8.5	섬유의류
54076100	기타 직물(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126	9.5	섬유의류
59032090	폴리우레탄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103	8.5	섬유의류
551219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함유량 100분의 85 이상)	95	10	섬유의류
55032000	폴리에스테르 섬유	91	4.5	섬유의류
59039090	기타 플라스틱 비중이 60% 이하인 평행방직사총 섬유	85	8.5	섬유의류
54074200	기타 염색 직물(나이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82	9.5	섬유의류
60041030	탄성사함량이 100분의 5이상 합성섬유제	70	10	섬유의류
59032020	폴리우레탄을 도포, 피복한 평행방직사 섬유	61	8.5	섬유의류
41071210	소가죽	53	6	생활용품
54076900	기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직물	50	9.5	섬유의류
54075200	기타 염색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43	9.5	섬유의류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및 중국관세율 DB.
주: 관세율은 최혜국 관세율 및 아태무역협정 관세율.

21/39

[한국] 전기전자는 대체로 무관세 또는 저관세

전기전자 : 한국의 대중국 수입 주요 품목 관세율 현황

HS code	품명	2011.1-11 대중국 수입액 (백만 \$)	한국 관세율 (%)	업종 중분류
847130000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10kg 이하)	1,898	0	산업용전자
8517121090	기타 무선전화기	1,784	0	산업용전자
8542321010	디램	1,611	0	전자부품
8537109000	전압 1,000볼트 이하 전기제어용 기반	1,338	8	전기기계
8544300000	와이어링 세트 (수송장비용)	1,216	8	전기기계
9013801930	텔레비전용 액정 디바이스	1,209	4	전자부품
8531201010	셀룰러 통신망을 이용한 휴대전화용의 것	1,111	0	전자부품
8517701029	유무선 전화기 부분품	922	0	산업용전자
8541402090	기타 광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870	0	전자부품
8542311000	모노리식 집적회로	811	0	전자부품
8528511000	액정 모니터	706	0	산업용전자
8542321090	기타 메모리 반도체	702	0	전자부품
8517611000	기지국용 송수신기	651	0	산업용전자
8534009000	기타 인쇄회로	578	0	전자부품
8543709020	디렉터(광센서를 포함한다)	504	8	전자부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및 관세청, 한국관세율 DB.
주: 관세율은 최혜국 관세율 및 아태무역협정 관세율.

22/39

[한국] 화학은 대체로 8% 이하의 저관세

화학 : 한국의 대중국 수입 주요 품목 관세율 현황

HS code	품명	2011.1-11 대중국 수입액 (백만 \$)	한국 관세율 (%)	업종 중분류
2804690000	기타 비금속 원소	324	2.8	정밀화학
7007191000	두께 8밀리 초과 10밀리 이하 기타 안전유리	300	8	기타화학
3923100000	상자·케이스·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282	6.5	고무 플라스틱
2902430000	파라-크실렌	264	1.5	석유화학
2710114000	나프타	189	0	정유
2710194030	방카 씨유	169	3	정유
2901241000	1,3-부타디엔	156	0	석유화학
3824909090	기타 조제점결제	151	6.5	기타화학
2841909000	기타 산화금속산염	120	5.5	정밀화학
2825901020	산화텅스텐	109	0.5	정밀화학
3926909000	기타 플라스틱 제품	100	6.5	고무 플라스틱
2836200000	탄산이나트륨	88	0	정밀화학
6902100000	마그네슘·칼슘·크로뮴 함유 내화벽돌	87	8	기타화학
6908901000	기타 자기제 타일	87	6.2	기타화학
2842909000	기타 무기산염 또는 과산화산염	81	5.5	정밀화학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및 관세청, 한국관세율 DB.
주: 관세율은 최혜국 관세율 및 아태무역협정 관세율.

23/39

[한국] 기계류는 대체로 8% 또는 그 이하의 저관세

기계 : 한국의 대중국 수입 주요 품목 관세율 현황

HS code	품명	2011.1-11 대중국 수입액 (백만\$)	한국 관세율 (%)	업종 중분류
9001200000	편광재료제의 판	253	8	광학기기
9002119090	기타 카메라용, 영사기용 렌즈, 프리즘 등	202	8	광학기기
8431499000	건설 및 하역장비 기타 부분품	188	0	일반기계
8407349000	1,000cc 초과 볼콧점화식 내연기관	157	8	일반기계
8426190000	기타 선박용 크레인	151	0	일반기계
8481801090	파이프, 보일러 등에 사용되는 기타 밸브	143	4	일반기계
8481909000	파이프, 보일러 등의 부분품	104	8	일반기계
8414301000	사용동력 11kw 미만 냉장설비용 압축기	95	6.4	일반기계
9030820000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 측정용 오실로스코프	86	0	광학기기
8415900000	에어컨디셔너 부분품	79	4	일반기계
8482102000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 볼베어링	79	13	일반기계
8431200000	작업용 트랙의 부분품	75	8	일반기계
8479899099	84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타 기계류	64	8	일반기계
8482990000	기타 베어링	64	8	일반기계
8414599000	기타 기체펌프, 압축기, 팬	63	8	일반기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및 관세청, 한국관세율 DB.
주: 관세율은 최혜국 관세율 및 아태무역협정 관세율.

24/39

[한국] 자동차 · 조선도 대체로 8% 이하 저관세

수송기계 : 한국의 대중국 수입 주요 품목 관세율 현황

HS code	품명	2011.1-11 대중국 수입액 (백만\$)	한국 관세율 (%)	업종 중분류
8901901000	화물선	779	0	조선
8708999000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	349	8	자동차
8708700000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32	8	자동차
8712009090	기타 자전거	113	5	기타수송장비
8708959000	기타 에어백 부분품	109	8	자동차
8708290000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	106	4	자동차
870840000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00	8	자동차
8708309000	기타 제동장치 부분품	91	4	자동차
8409993030	출력이 2,000kw 초과 내연기관의 부분품	79	4	조선
8708940000	운전대 · 스티어링 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76	4	자동차
8428401000	에스컬레이터	49	0	기타수송장비
8708930000	클리치와 그 부분품	45	4	자동차
8708303000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36	4	자동차
8906900000	기타 선박	32	0	조선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및 관세청, 한국관세율 DB.
주: 관세율은 최혜국 관세율 및 아태무역협정 관세율.

25/39

[한국] 철강은 대부분 무관세, 비철금속은 8% 이하 저관세

철강금속 : 한국의 대중국 수입 주요 품목 관세율 현황

HS code	품명	2011.1~11 대중국 수입액(백만\$)	한국 관세율 (%)	업종 중분류
7208519000	기타 두께 10밀리 초과 열간압연한 코일상의 평판압연제품	1,654	0	철강
7308909000	기타 철강제 구조물	1,404	0	철강
7326909000	기타 철강제의 제품	421	5.6	철강
8111000000	망간과 그 제품(웨이트와 스크랩 포함)	350	1.5	비철금속
7208399000	기타 두께 3밀리 미만 열간압연한 평판압연제품	345	0	철강
7202210000	실리콘 함유량 100분의 55 초과 합금철	309	0	철강
7208379000	기타 두께 4.75 이상 10밀리 이하 열간압연한 평판압연제품	307	0	철강
7225409090	기타 폭 600밀리 이상 합금강 평판압연제품	260	0	철강
7228300000	기타의 봉(열간압연·열간인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256	0	철강
7208389000	기타 두께 3밀리 이상 4.75밀리 미만 열간압연한 평판압연제품	249	0	철강
7210499090	기타 도금 또는 도포한 폭 600밀리 이상 평판압연제품	249	0	철강
7216333000	높이 300밀리 미만 에이치 형강	209	0	철강
7208369000	기타 두께 10밀리 초과 열간압연한 코일상이 아닌 평판압연제품	205	0	철강
7606119000	기타 알루미늄 판, 쉬트 및 스트립	202	8	비철금속
7227909000	기타 합금강의 봉	188	0	철강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및 관세청, 한국관세율 DB.
주: 관세율은 최혜국 관세율 및 아태무역협정 관세율.

26/39

[한국] 섬유와 생활용품은 대체로 10% 내외의 상대적 고관세

섬유 및 생활용품 : 한국의 대중국 수입 주요 품목 관세율 현황

HS code	품명	2011.1~11 대중국수입액 (백만 \$)	한국 관세율 (%)	업종 중분류
6109101000	티셔츠	212	13	섬유의류
6404199000	기타 신발류(바닥은 고무 또는 가죽이고 감피는 섬유제인 것)	166	9.1	생활용품
6402999000	기타 신발류(바닥과 감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61	9.1	생활용품
9401909000	기타 가구 부분품	158	8	생활용품
6202931000	기타 합성섬유제 여자용 재킷 및 유사 의류	137	6.5	섬유의류
4202122000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가방	115	5.6	섬유의류
6403999000	기타 신발류(바닥은 고무 또는 가죽이고 감피는 가죽인 것)	113	11.7	생활용품
6204621000	면제 여자용 의류(데님의 것, 청바지 포함)	112	7.8	섬유의류
6204629000	기타 면제 여자용 의류	111	7.8	섬유의류
9404900000	기타 매트리스 및 침구류	111	8	섬유의류
6201931000	기타 합성섬유제 남자용 재킷 및 유사 의류	111	13	섬유의류
6404110000	스포츠용 신발류	102	11.7	생활용품
9401699000	기타 의자	98	0	생활용품
5402339000	기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97	8	섬유의류
6211331000	합성섬유제 트랙슈트, 스키슈트, 수영복	96	13	섬유의류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및 관세청, 한국관세율 DB.
주: 관세율은 최혜국 관세율 및 아태무역협정 관세율.

27/39

참고: 한국과 중국의 관세감면 및 환급제도

- 한국과 중국 모두 **수출품 제조용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면제하거나 일단 징수한 후 환급하는 제도 운영 중.
- 관세감면제도를 감안할 때 한중 양국의 **실효관세율**은 **명목관세율**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됨.
- 특히, 한국기업을 비롯한 많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을 수출품 생산기지로 활용하므로 중국의 수입에서 관세감면 또는 환급 대상 수입의 비중은 매우 높음.

-
- 여기에서 '실효관세율'은 '실효보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과는 다른 개념임.
 - 실효보호율이란 관세(and/or 부가가치세)가 해당 품목의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실효적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세금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율을 가리킴.
 - 이 발표에서 실효관세율은 수입액 대비 실제 관세수입액의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1] 제조업 분야 한중 교역 현황

[2] 한중 양국의 관세장벽 현황

[3] 한중 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4] 제조업 분야 쟁점과 대응방안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기대 ...

한중 FTA의 기대효과에 대한 업계 의견 조사 결과

2006년 전경련 조사		2008년 무역협회 조사	
통관절차 간소화	39.3%	상호 무관세로 수출입 증가	30.1%
		비관세장벽 해소	21.9%
고관세 철폐	37.4%	중국진출 한국기업 경영개선	14.7%
		중국의 비합리적 상관행 개선	13.4%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발동 감소	19.5%	중국 내 지적재산권 보호	9.3%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8.1%
기타 비관세장벽 해소	3.7%	인력이동 제한 완화	2.4%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중 FTA 기업여건 조사결과”, 2006. 1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중 FTA가 우리 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2008. 1.

29/39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한국보다 훨씬 높고 다양...

일본 경제산업성이 조사한 한국과 중국의 무역장벽

중국

- 투명성, 행정, 사법심사 문제
- 수출세
- 무역권
- 수입제한조치
- 수출허가·제한
- 반덤핑 조치, 상계 조치
- 보조금
- 세이프가드
- 무역관련 투자조치
- 표준·인증제도
- 서비스 무역
- 지적재산권
- 정부조달

한국

- 표준·인증제도
- 지적재산권

자료: 日本 經濟産業省, 「不公正貿易報告書」, 2010年.

30/39

한중 공동연구에서도 비관세장벽 이슈 검토 ... 그러나...

FTA 협상에서 논의되는 비관세장벽 이슈

	한미 FTA 협정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원산지	○	○
무역 원활화 및 관세 행정(통관 절차)	○	○
무역구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
정부조달	○	○
지적재산권	○	○
위생·검역(SPS)	○	○
무역기술장벽(TBT, 표준 및 기술규제)	○	○

자료: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2007; 외교통상부, The Joint Study Report for Korea-China FTA, 2010.

31/39

[1] 제조업 분야 한중 교역 현황

[2] 한중 양국의 관세장벽 현황

[3] 한중 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4] 제조업 분야 쟁점과 대응방안

관세 양허 수준에 관해서는 충분한 업계 의견 수렴 필요

쟁점 (1) 공산품 분야 관세 양허 수준

- 제조업 분야에서 관세 철폐·인하 조치는 대체로 한국기업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업종에서는 상당한 피해도 우려.
- 관세 양허 수준이 높을 경우 (+)와 (-)의 영향이 모두 커지고 양허 수준이 낮을 경우 반대로 (+)와 (-)의 영향 모두 줄어들 것.
-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관세철폐 일정 조정 및 구조조정 지원 대책 필요.

32/39

관세 양허 수준은 품목 등급 구분 및 관세 철폐 일정에 의존

쟁점 (1) 공산품 분야 관세 양허 수준

쟁점

참고사항

양허 등급 구분과
각 등급의 비중은?



- 한·미 및 한·EU FTA에서는 공산품을 4개 등급으로 구분
- 한·ASEAN FTA에서는 3개 등급(한국은 2개 등급)으로 구분

관세 철폐 일정은?



- 한·미 및 한·EU FTA에서는 즉시, 3년, 5년, 7년, 10년 균등 철폐
- 한·ASEAN FTA에서는 일반품목은 대부분 3년 내, 민감품목은 10년 내 철폐

33/39

참고: 한·미 FTA 공산품 분야 관세 양허안

양허 유형	한국 양허		미국 양허	
	품목수 (HS 10단위)	수입비중 (%)	품목수 (HS 8단위)	수입비중 (%)
즉시	8,453	81.0	7,424	85.5
3년 균등	594	13.2	346	6.9
5년 균등	177	1.5	339	3.4
10년 균등	180	4.2	392	4.2
계	9,404	100	8,501	100

자료: 외교통상부, 「한·EU FTA 상세 설명자료」, 2010, p. 6.

참고: 한·EU FTA 공산품 분야 관세 양허안

양허유형	한국 양허		EU 양허	
	품목수 (HS 10단위)	수입비중 (%)	품목수 (HS 8단위)	수입비중 (%)
즉시	8,535	69.4	7,201	76.7
3년 균등	478	22.4	151	16.6
5년 균등	346	6.9	46	6.7
7년 균등	45	1.3	-	-
계	9,404	100	7,398	100

자료: 외교통상부, 「한·EU FTA 상세 설명자료」, 2010, p. 6.

참고: 한·ASEAN FTA 상품 분야(전체) 관세 양허안 개요

	일반품목	민감품목 (한도)	초민감품목 (한도)
한국 및 ASEAN 6	품목수의 87% 및 수입액의 87% 이상	품목수의 10% 및 수입액의 10% 이내	품목수의 3% 및 수입액의 3% 이내
베트남	품목수의 87% 이상	품목수의 10% 및 수입액의 25% 이내	품목수의 3% 이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품목수의 87% 이상	품목수의 10% 이내	품목수의 3% 이내
관세 철폐·인하 일정	한국은 2010년, ASEAN 6는 2012년, 베트남은 2018년, 나머지 나라는 2020년까지 철폐 완료	한국 및 ASEAN 6는 2016년, 베트남은 2021년, 나머지 나라는 2024년까지 5% 이하로 인하	해당 품목을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국가별 및 그룹별로 양허요건 설정

자료: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ASEAN FTA 주요 내용』, 2007, pp. 45-52.

주: 한국은 양허안보다 더 빠른 속도로 관세를 철폐했음. 일반품목은 2007년 6월 협정 발효 즉시 70% 이상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2008년 1월 1일까지 95%, 2010년 1월 1일까지 100% 관세 철폐를 완료하였음.

참고: 한·ASEAN FTA 한국측 관세 양허안

		총계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전체	품목수(HS 6)	5,224	4,742	282	200
	수입액 비율	100%	91.6%	5.6%	2.8%
공산품	품목수(HS 6)	4,329	4,182	147	0
	수입액 비율 (분야내 비율)	92.5% (100%)	88.1% (95.3%)	4.4% (4.7%)	0% (0%)

자료: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ASEAN FTA 주요 내용』, 2007, p. 51.

참고: 중국의 주요 FTA 관세 양허안 (상품 전체)

	중국측 관세 철폐율	상대국 관세 철폐율	민감품목				관세철폐 유예기간	특이사항
			관세 인하품목		관세철폐 예외품목			
			중국	상대국	중국	상대국		
중·아세안 (2005.7)	90%	90%	10%	10%	극소, 연초류	극소	6개국: 7년 4개국: 13년	-
중·칠레 (2006.10)	99.2%	98.1%	×	×	2.8%	1.9%	10년	낙농품 세이프가드 포함
중·파키스탄 (2007.7)	85%	85%	5% 이상	5% 이상	10% 이하	10% 이하	5년	발효 6년째 2단계 설정
중·뉴질랜드 (2008.10)	96%	99.6%	×	×	4%	0.04%	10년	-
중·싱가포르 (2009.1)	95%	100%	5%	0%	중·아세안 FTA와 동일	0%	3년	중국 일부 농산품(강낭콩, 돼지고기)무관세 쿼터 얻어냄
중·페루 (2010.3)	99%	90%	×	×	1%	10%	17년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 FTA 추진전략』, 2010, p. 65.

주: 1) 괄호 안은 발효시기, 2) 비중은 수입액 기준(중·칠레FTA의 칠레측 비중은 세목수 기준)

38/39

비관세장벽 해소 가능성은 미지수이지만 협정에 반영 필요

쟁점 (2) 비관세장벽 해소 가능성

- 중국은 FTA 협정에 비관세장벽 해소를 명시하는 데 대해 소극적일 전망.
- 비관세장벽 관련 사안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협정문의 규정은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더욱이 중국의 비관세장벽 문제는 법규와 실제 관행 사이의 불일치 문제.
- 그래도 FTA 협정에 이를 반영하여야 분쟁 발생 시 우리 측 논거를 강화할 수 있고 점진적인 장벽 해소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9/39

감사합니다!

한·중 FTA와 농업부문의 대응



어 명 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 차

■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과 배경

■ 한·중 농업과 농산물 교역

■ 한·중 농업경쟁력 비교

■ 중국의 FTA 추진 전략

■ 한·중 FTA 영향과 대응 방안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과 배경

○ 2011년 10월 현재 발효중인 WTO 통보 지역무역협정(RTA); 310건

- 1995년 WTO 출범 이후 체결된 RTA; 267건(86.1%)
- 자유무역협정(FTA); 181건
- 서비스 협정; 92건
- 관세동맹(CU); 22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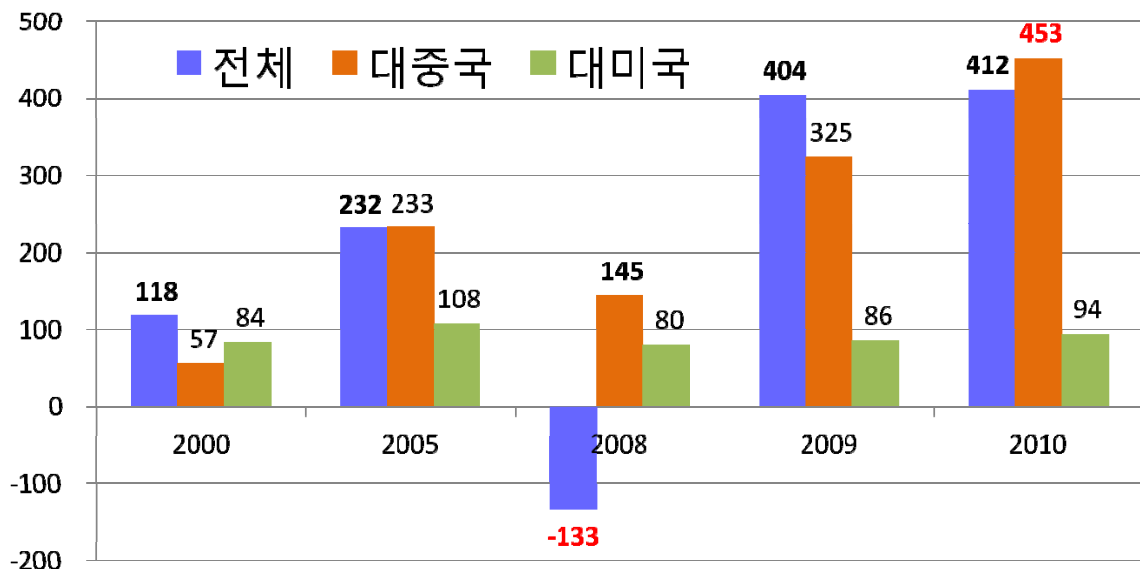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주요국들과 동시다발적 FTA 협상 추진

- 발효; 칠레(2004. 4), 싱가포르(2006. 3), EFTA(2006. 9), ASEAN(2007. 6, 2009. 9), 인도(CEPA; 2010. 1), EU(2011. 7), 페루(2011.8), 미국(2012 예정)
- 협상중;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일본)
- 공동연구; 중국, 한중일, 이스라엘,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 / 16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과 배경

무역흑자와 미국 및 중국의 비중



한 · 중 농업과 농산물 교역

- 우리나라 농업 생산은 2000년 33.2조원에서 2009년 43조원으로 연평균 2.9% 성장
 - 농림어업 GDP 비중은 4.2%에서 2.3%로 감소
 - 호당 경지면적(2009년); 1.45헥타
 - 재배업 생산액 24.9조원, 축산업 16.5조원, 임업 1.6조원(합판류 제외)
 - 쌀 8.7조원, 돼지 5.5조원, 한우 3.8조원, 닭 2조원, 우유 1.7조원, 계란 1.4조원, 오리 1.2조원, 고추 9,900억원, 감귤 9,100억원, 사과 8,100억원
- 중국의 농업 GDP는 2000년 2.5조위안(약 380조원)에서 2008년 5.8조위안(약 1,068조원)으로 연평균 13.8% 증가
 - 농업의 GDP 비중은 같은 기간 25.1%에서 18.5%로 감소
 - 호당 경지면적(2008년); 0.63헥타
 - 2008년 쌀 생산량; 1억 9,190만톤(동북3성; 2,600만톤)
 - 소맥; 1억 1,250만톤, 옥수수; 1억 6,590만톤, 대두 1,550만톤

한 · 중 농업과 농산물 교역

<표 1>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 수입시장 점유율(2010년)

단위: 백만불, %

품목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대두	쌀	포도주
총 수입액	2,000	1,186	717	588	249	113
1	미국 (84.2)	호주 (53.5)	미국 (25.7)	미국 (60.5)	중국 (54.6)	프랑스 (32.0)
2	중국 (3.7)	미국 (35.6)	칠레 (15.7)	브라질 (32.3)	미국 (31.4)	칠레 (22.0)
3	헝가리 (3.5)	뉴질랜드 (10.2)	캐나다 (14.2)	중국 (6.1)	태국 (12.5)	이탈리아 (17.0)

한·중 농업과 농산물 교역

<표 2> 한·중 농림산물 교역동향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0	2005	2008	2009	2010
수출	국가전체	184.6	619.2	913.9	867.0	1,168.4
	농림산물 (비중)	1.18 (0.6)	2.31 (0.4)	3.49 (0.4)	4.20 (0.5)	5.56 (0.5)
수입	국가전체	128.0	386.5	769.3	542.5	715.7
	농림산물 (비중)	14.1 (11.0)	22.2 (5.7)	26.2 (3.4)	28.2 (5.2)	32.3 (4.5)
무역 수지	국가전체	56.6	232.7	144.6	324.6	452.6
	농림산물	-12.9	-19.9	-22.8	-24.0	-26.7

한·중 농업과 농산물 교역

<신선농산물 수출 1억 달러 증가의 파급효과>

○ 산업연관분석 결과

- 생산유발효과; 1억 6,100만 달러(0.9배))
- 부가가치유발효과; 8,206만 달러(1.9배)
- 고용유발효과; 720명(1.3배)
- 취업유발효과; 4,870명(7.1배)

* () 속은 휴대전화 1억 달러 수출시 유발효과 대비임.

한 · 중 농업과 농산물 교역

- 중국시장 농식품 수출은 가공식품이 주도(2010년)

- 당류; 9,700만 달러, 펄프; 4,800만 달러, 커피조제품; 4,300만 달러, 라면; 2,800만 달러 등
- 신선농산물은 난초; 1,800만 달러, 밤; 1,700만 달러, 유자; 1,400만 달러, 홍삼; 1,100만 달러, 팡이버섯; 650만 달러 등.

- 중국산 농림산물 수입(2010년)

- 화강암; 5.3억 달러, 쌀; 1.4억 달러, 전분박; 1.2억 달러
- 고추, 김치, 마늘; 각 1억 달러 수준
- 2007년까지 최대 수입품 옥수수는 2008년 이후 중국 정부의 수출 규제

한 · 중 농업경쟁력 비교

◆ 농산물 가격 차

- 한국의 농산물 도매가격은 2010-11년 평균 31개 주요 품목 가운데 28개 품목이 중국보다 2 배 이상 높았으며 그 가운데 25개는 3배 이상 높았음.
 - 가격차가 큰 품목은 관세 철폐의 충격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
 - 2010년 이후 중국의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2007-09년 대비 양국간 가격 차 축소.

한·중 농업경쟁력 비교

<표 3> 주요 품목의 한중 도매가격 비교(2010-11년 평균)

품목	중국가격 (원/kg)	국산가격 (원/kg)	가격차 (%)	양허관세 (%)
감자	363	1,363	375	304
건고추	3,849	15,205	395	270
참깨	2,437	17,136	703	630
상추	433	3,733	862	45
배	463	2,329	503	45
시금치	358	2,922	816	27
생강	912	3,831	420	377.3
가지	490	2,574	525	27
마늘	1,402	5,193	370	360
토마토	498	2,554	513	45
단감	423	2,486	588	45
녹두	2,037	9,761	479	607.5
포도	1,189	3,818	321	45
복숭아	938	3,045	325	45
오이	439	2,186	510	45
땅콩	1,762	6,147	349	230.5

품목	중국가격 (원/kg)	국산가격 (원/kg)	가격차 (%)	양허관세 (%)
사과	1,013	3,682	364	45
팥	1,812	6,435	355	420.8
방울토마토	759	3,406	449	45
대두	834	5,546	665	487
배추	199	672	338	27
대파	245	1,592	650	27
양파	264	647	245	135
감귤	709	1,315	185	144
쌀	704	1,771	252	-
당근	210	1,347	641	27
쇠고기	4,495	9,879	220	40
양배추	207	652	315	27
무	206	767	372	45
닭고기	2,032	3,319	163	18
돼지고기	3,093	5,299	171	25

중국의 FTA 추진전략

- **중국이 체결한 모든 FTA 협정에 양허제외 품목 설정**
 -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중국만 곡물, 곡분, 당류, 유지류 등 50개를 양허제외한 '비대칭적 FTA' 체결
 - 칠레와의 FTA에서는 양국 모두 양허제외 허용
 - ASEAN과의 FTA에서는 100개 이내의 고민감품목을 포함한 400개까지의 민감품목 관세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동시에 관세철폐 대상 44개는 2005년 관세 유지
- **동아시아 역내 FTA에는 조기자유화계획(EHP)에 따른 자유화 품목 설정**
 - ASEAN 국가에 01류부터 08류까지의 신선농산물 593개 조기 철폐안 제시
 - 대만과의 ECFA에서는 과일과 차류 등 18개 품목을 일방적으로 관세 철폐

중국의 FTA 추진전략

- **낙농품 등 농업경쟁력이 높은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일반적인 무역구제 수단인 다자간 SG와 양자간 SG 외에 특별농산물 SG(SASM)도 도입(부속서 2)**
 - SASM 대상품목은 우유와 크림, 버터, 치즈 등 낙농품 11개로
최장 2023년까지 발동기준 물량 명시
 -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연유 등 SASM 대상 품목 일부는
중간심사제도(Mid-term review mechanism)를 적용
- **뉴질랜드와의 SPS 협정에서 “이행약속(Implementing Arrangement)” 을 통해 동식물 유병의 지역화 개념 도입에 노력할 것을 명시**
 - 동식물 유병의 지역주의를 배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FTA 협상시 지역화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자료 축적 필요

한·중 FTA의 영향과 대응방안

-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농업생산구조가 유사하며 광대한 국토와 다양한 기후대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FTA 체결로 관세 철폐시 농산물 수입급증 예상. 축산물 위주의 한·EU FTA나 육류 및 과일류 위주의 한·미 FTA보다 광범위한 피해 우려
 -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도 우리나라에 수요가 있는 한 생산, 수출 가능.
 - 국내 농업기술자나 수입상들이 중국내 최적 지역에서 한국 소비자 선호 품종과 품질, 규격을 갖춘 농산물을 생산, 수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고품질 농축산물의 중국시장 수출 위한 공세적 입장도 검토할 필요 있음.

한·중 FTA의 영향과 대응방안

- 현재 신선 육류와 과일류는 동식물 방역법상 수입규제
- 단기적으로는 채소류와 특작류, 곡물류 수입 증가 전망
- 중국내 생산이 없거나 공급 부족한 품목도 단기간내 생산, 수출 가능
 - 중국은 연간 4천만톤 이상의 대두를 수입하면서도 우리나라로 매년 20만톤 이상을 수출
 - 현재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장기적으로 검역상 수입규제가 풀릴 경우 수출단지 조성 등을 통한 수출 가능성

한·중 FTA의 영향과 대응방안

-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NTC; non-tradable concerns)과 환경보전 등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을 고려한 양국 농업의 지속가능 방안 제시
 - 중국도 주곡 등 식량안보를 위해 수출규제 등 국가적 동원 체계 가동
 - 특정 품목의 국내 생산 부족으로 수입 증가시 국제시장 가격 급등 초래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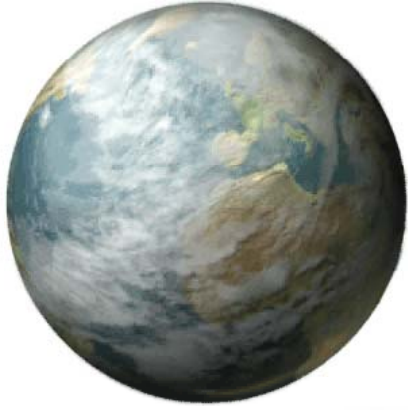
한·중 FTA의 영향과 대응방안

- 한국은 중국의 제3위 수출시장으로서 중국의 FTA 대상국 가운데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성장가능성도 높아 시장개방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FTA 협상에 적극적, 공세적 입장 선회 가능성
 - 동식물 검역상 수입이 규제된 중국산 과일과 육류는 민감품목 선정과 양허제외, 중간심사제도 도입 등 검토 필요.
 - 우리나라 과일류와 육류의 식품안전성 제고 등 품질고급화로 중국내 고소득층 대상 마케팅 전략 마련.

한·중 FTA의 영향과 대응방안

- 한·중 FTA 추진 방식은 '낮은 수준의 FTA' 로 시작;
민감한 분야는 양국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세 철폐가 가능한 분야부터 양허하되 협상 발효 이후 양국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허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일본은 이러한 방식으로 FTA와 EPA를 체결하고 있음.
 - 지속적인 협의 통해 중국의 고소득층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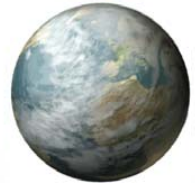
한중 FTA 수산분야 추진방향

2012. 01. 31(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미래연구본부 글로벌수산연구실
장용석 책임연구원

1

오늘의 발표 내용



수산분야 현황

- 거대한 움직임의 시작
- 위기에 봉착한 우리 수산업
-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

주요 쟁점

- 상품분야
- 원산지 규정
- 글로벌 수산분야에서의 접근

대응방안

- 수산분야의 FTA 정책 한계
- FTA를 활용한 진출 전략 필요
- 보다 큰 맥락에서의 FTA 활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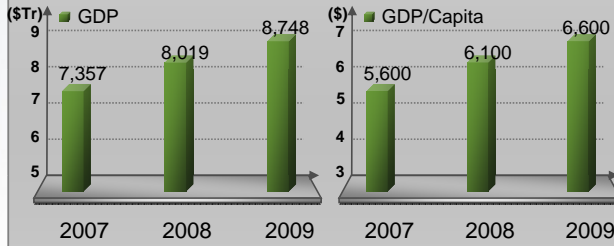
수산분야 현황



1 거대한 움직임의 시작

중국의 일반 경제 지표

- 육지면적 : 960만 km²(남한의 44배)
- 사람 수 : 13억 2,802만 명(남한의 28배)
- GDP(국내총생산, PPP 기준, 연평균 9.0% 성장)



산업 비중

- 2차 산업(49.8%) > 3차 산업(42.6%) > 1차 산업(10.6%) : GDP
- 1차 산업(39.5%) > 3차 산업(33.2%) > 2차 산업(27.2%) : 인력

교역 실적 규모(2009) : \$2,158tr, 흑자 \$250tr

- 수출 : \$1,204tr, 전기기계·철강, 미국(20%), 홍콩(12%), 한국(5%)
- 수입 : \$954tr, 전기기계·석유, 일본(12%), 홍콩(11%), 한국(9%)

중국을 둘러싼 굉장한 소문들

• 세계 굴삭기의 절반이 중국에 있다!!

- 도시화율: 45.6%(08) → 50.0%(15) → 60.3%(20)
- 도시인구: 1억 9,404만 명 증가(남한의 4.3배)
- 선진국 도시화율: 약 80% 수준

• 명동 거리에 온통 중국인이다!!

- 중국 관광객 해외소비 : 세계 4위
- 명품소비 : 세계 2위(일본 1위)
- 자동차 보급 : 1,000명 당 50대
- 자동차 판매 : 세계 1위(09년)

• 중국 부자 인구가 남한 인구 정도?

- 총인구 : 13억 2,802명(세계 1위)
- 도시인구 : 6억 6,600만 명
- 3대 성장지구 : 4억 8,700만 명
- 부유층 : 480만 명(연평균 5천만 원 이상)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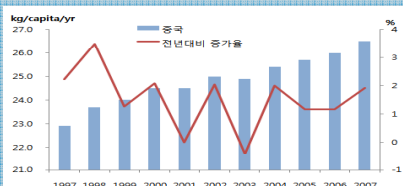
수산분야 현황



2 위기에 봉착한 우리 수산업

한-중 수산업 비교

- 엄청난 생산능력 차이 : 17.2배(5,738/335)
 - 잡는 어업 : 7.8배
 - 양식 어업 : 30.3배
- 전통의 수산물 교역국(97년 이후)
 - 같은 어장 같은 어종
 - 겹치는 어종(10대 어종: 오징어, 갈치, 고등어, 조기, 꽃게 등)
 - 교역 구조화 및 발달한 물류(인접국)
 - : 활어, 신선, 냉동, 가공품 다양화
- 수산물을 먹기 시작하다(1kg ↑, 140만톤 필요)
 - 중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23kg(97) → 27kg(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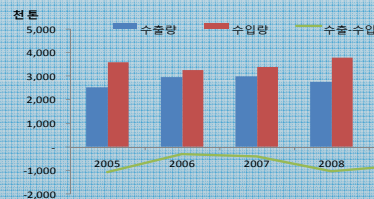


한-중 수산물 교역-중국기준

• 중국의 대세계 수산물 교역(금액, 09년)

- 수출 : \$103.6억(7.9%씩 상승, 05부터)
- 수입 : \$ 50.5억(5.9%씩 상승, 05부터)
- 교역 수지 : \$53.4억(10.0%씩 상승)

• 중국의 대세계 수산물 교역(수량, 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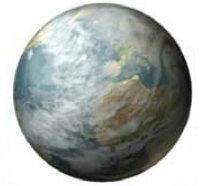


• 중국의 수산물 수출 상대국 : 한국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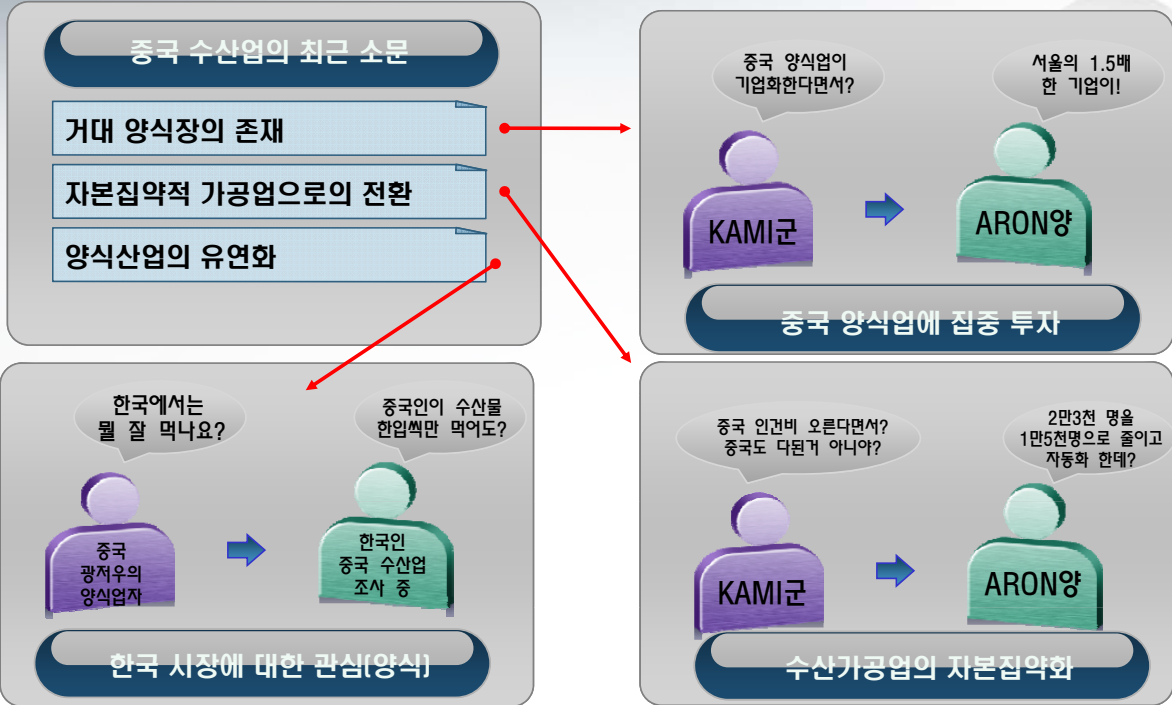
• 중국의 수산물 수입 상대국 : 한국 9위

4

수산분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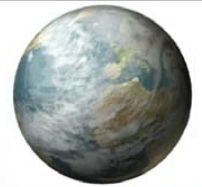


2 위기에 봉착한 우리 수산업 : 우리에게 경쟁력은 있는가?



5

수산분야 현황



2 위기에 봉착한 우리 수산업 : 우리의 대책은? 보상.보전.구조조정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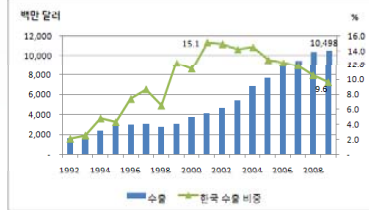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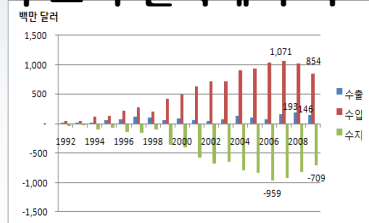
수산분야 현황



3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 : 교역 구조와 중국 소비 변화에 주목

한-중 수산물 교역-한국 기준

- 교역적자 : \$7억 900만**
 - 수출금액 : \$1억 4,600만
 - 수입금액 : \$8억 5,400만
 - 교역적자는 감소 중 : \$9억 5,900만(06년)
- 수입수산물 시장 : 점유율 감소 중**
 - 중국산 수산물 : 40.2%(04)→29.5%(09)
 - 중국의 대한국 수산물 수출 비중 : 15.1%(01)→9.6%(09)
- 한국의 대중국 주요 교역품목**
 - 대중국 수출 : 오징어, 다랑어
 - 대중국 수입 : 기타어류, 기타 활어, 게, 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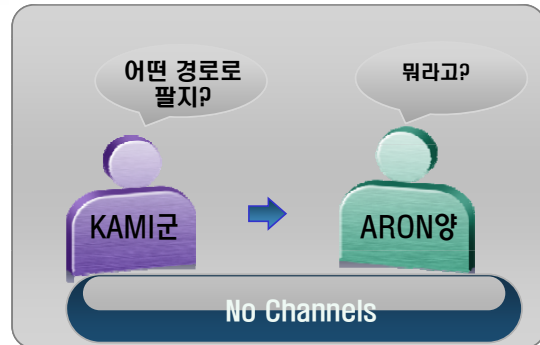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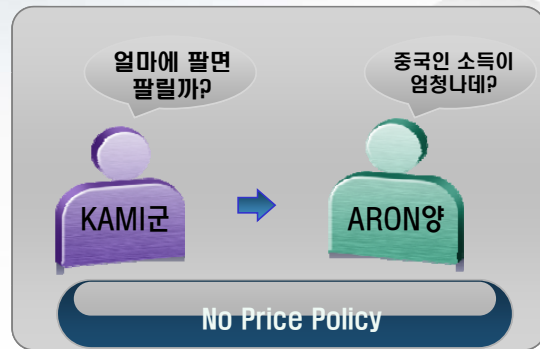
- 한국의 수산물 수출 유형**
 - 수동적 : 무전략, 바이어 의존형, 자원 수출형
- 중국의 수산물 수출 유형**
 - 대세계 : 가공중계무역, 전략적, 기업적
 - 대한국 : 원어 형태, 다양한 수산물(전처리형)

7

수산분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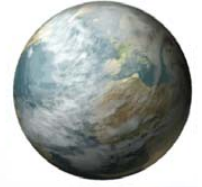


3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국내 대책 외의 시각)



8

수산물 분야 현황



3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수산물 수출전략의 필요성

25억 불 수출목표

- 효자종목 : 원료형(다량어, 오징어 등) : 상품형(김, 넙치, 전복 등)
- 일본 수산물 수출의 성숙시 후반?
- 미국 수출은 제한적



중국 시장의 중요성

- 중국 시장 없이 수출 증가 어렵다.
- 값싼 원료 수출은 이제 그만
- 일본 수출은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 미국/EU 시장도 쉽지 않습니다.

상품 만들기(전략품목화)

- 공급력 확대 : 생산량 증대 혹은 중계무역
- 공급 안정성 확보 : 연중 지속 가능한 공급
- 중국에서 잘 팔리는 품목 : 다량어, 오징어, 전복, 해삼

가격은 적당한가(가격정책)

- 중국을 겨냥한 비용 구조화 : 저비용 구조 전환(규모화)
- 수출시장 우선 : 수출전략단지의 형성
- 수출전략단지 참여 기업 : 비용 심사, 사업 계획서

누구에게 팔 것인가(판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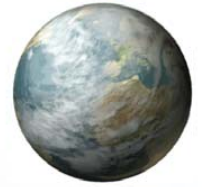
- 중국 시장 조사 : 지속적인 중국 시장 조사
- 판촉 전략 : 명품 마케팅, 한류/한식 세계화
- 수출전략단지 참여 기업 : 비용 심사, 사업 계획서

경로 선택은? (채널 전략)

- 중국 현지 파트너와 연계 : 수출 창구의 단일화
- 국내기업의 직접 진출 : 대기업과의 연계/육성 필요성

9

상품분야



1 상품분야 : 절대적 경쟁 우위의 중국 수산물

MCA 지수(시장별 비교우위)

HS코드	품목명	한국시장(중국산)		중국시장(한국산)	
		04년	08년	04년	08년
0301	활어	4.82	3.05	0.03	0.01
0302	신선·냉장 어류	3.05	0.62	0.00	0.00
0303	냉동 어류	2.21	1.71	0.50	0.46
0304	어류 피레트와 기타 어육	1.32	0.80	0.40	0.31
0305	건조·염장·염수장·훈제 어류	3.67	2.42	0.07	0.08
0306	갑각류	2.95	0.96	0.06	0.15
0307	연체동물	3.16	1.86	1.72	1.59
1212	해조류	2.05	1.80	1.48	1.32
1604	조제·저장처리 어류	3.39	2.89	1.18	1.41
1605	기타 조제·저장처리 수산동물	3.56	2.79	0.10	0.28
2301	어분	0.05	0.00	0.00	0.01

● 우리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경쟁력 감소

- HS 4단위 기준 : 대부분의 품목 중국산 감소 중
- 특히, 신선 중국산 경쟁력 약화(위생, 검역, 물류비용 등)
- 중국산의 전체적인 경쟁력 약화 : 수입산간 경쟁 대체

● 일부 품목 중 국산의 중국시장 경쟁력 강화

- 신선, 단순가공, 갑각류, 가공품, 어분 경쟁력 상승
-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 : 신선, 가공품
- 중국의 양식수산물 확대 : 어분
- 지수에서 나타내지 않았지만 주요 원료(다량어, 오징어)

● 그러나 여전히 중국산 경쟁력 우위

- 중국 시장에서의 우리 수산물 : 대부분이 1 이하
- 우리 시장에서의 중국 수산물 : 대부분이 1 이상

10

원산지 규정



2 원산지 규정 : 불법어획물에 대한 원산지 규정

불법어업=불법어획물

연도	총 나포수	EEZ	NNL	기타(훈방)
2004	443	-	-	-
2005	584	-	-	-
2006	534	459	50	25
2007	508	438	56	14
2008	446	391	41	14
2009	508	438	56	14
평균	504	432	51	17

구분	규제 항목	CCSBT	IATTC	ICCAT	IOTC	WCPFC
어획 규제	TAC 및 쿼터 설정	○	○	○	○	○
	어선등록제 선박허가제 금어기/금어구	○ ○ ×	○ ○ ○	○ ○ ○	○ ○ ○	○ ○ ○
간접 규제 체계 (MSC)	VMS 정착	○	○	○	○	○
	조업서	○	○	○	○	○
	중시비 프로그램	○	○	○	○	○
	부역종계 시스템 도입	○	○	○	○	○
무역규제 관련	어획증명제	○	○	○	○	○
	IUU 어선	○	○	○	○	○
	항구검색	○	○	○	○	○

11

불법어업의 동기

- 중국 양에 자원 고갈 : 어획 비용의 증가(탐색 비용 등)
- 고가의 한국 시장 존재
- "걸리면 제수 없다" : 대부분 잡히지 않는다?

불법어획물의 폐단 = 시장 왜곡

- 저비용 어획=저가격 전략 가능
- 우리 수입수산물 시장에서 중국산 가격 하락
- 자원감소로 우리 수산물 어획비용 구조 상승
- 시장 왜곡 현상으로 우리 생산자 소득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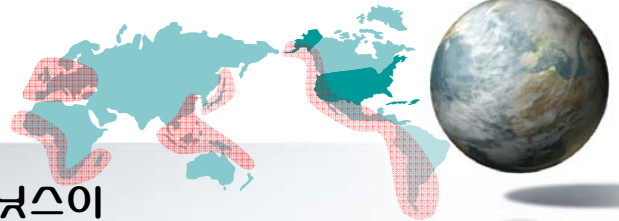
IUU에 대한 국제 동향

- 강력한 제재 조치 일반
- 다양한 조치 마련 : 최종적 조치는 시장유동 금지

불법어획물은 FTA 원산지 규정 위반

- FTA 관세 인하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분

세계 빅3 중국 겨냥



글로벌 수산물 공급 체인망 확보의 낚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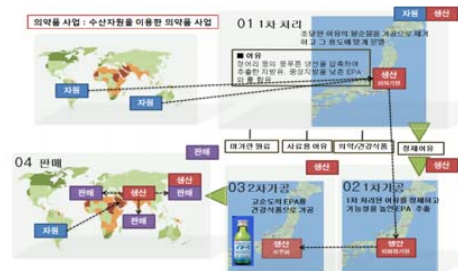
낚시

자본 규모 : 4~5조(매출 6~7조)

신TGL 전략 : 합병→합작→자본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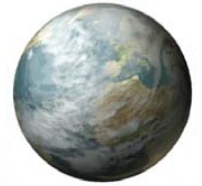
권역별 특성 살린 Link

매출 6~7조 = 한국어업생산총액



12

세계 빅3 중국 겨냥



마린하베스트

자본 규모 : 4~5조(매출 2~3조)

Marine Harvest world Wide(MHWW)

글로벌 연어 SCM, 대구 해리벗·성분 산업

최근, 판매물류거점 확대(한,일,동남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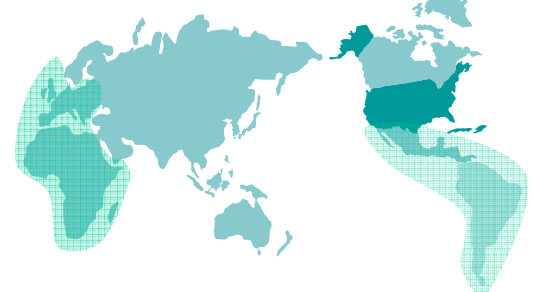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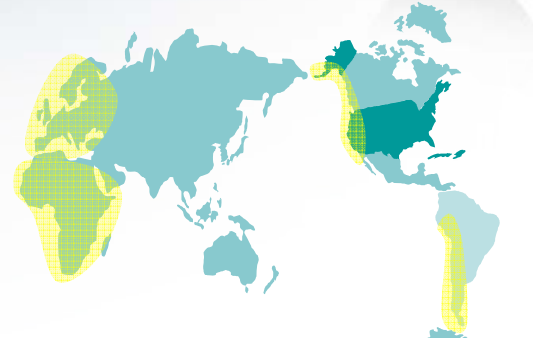
PESCANOVA

스페인계 수산기업

과거 식민지 국가와의 계열화(정치영향력)

아프리카(HAKE), 남미(오징어) 반가공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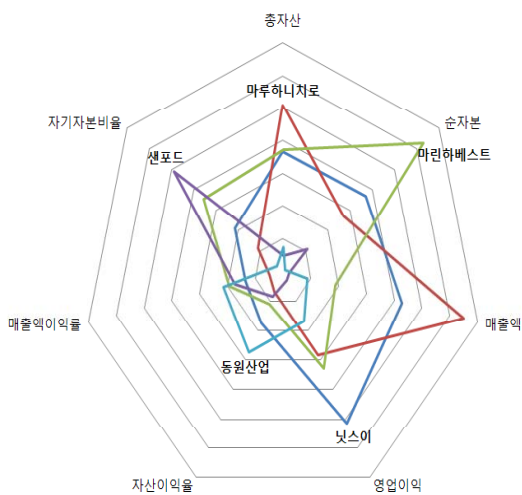
유럽에 판매



세계의 빅 3와 우리



2 세계 속의 우리



- 규모(자산 기준) : 동원산업의 10배
- 영업력(매출기준) : 동원산업의 10~12배
- 안정성(자기자본비율) : 상대적 안정화
- 수익성(매출/자산이익률) : 상대적 하향

글로벌 수산기업의 성장



3 해외진출의 가능성 - 계약을 맺을 때, 비로소 가능성이 보인다.

시장 성장의 가능성 있는 품목을 만들자!

참다랑어 양식산업에
마루하니지르가 뛰어 들었다는군



KAMI군

참다랑어 양식은 아직 많았잖아~
양식적지도 없을텐데. 가능할까?



ARON군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중국사람들은 어떤 수산물을
먹을까?



KAMI군

연어, 다랑어, 전복, 해삼, 농성어,
동사리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ARON군

누가 팔아야 할까?

바이어가 와주지 않겠어?



KAMI군

대표품목이 활성화되어야 할텐데
대기업 육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ARON군

공급능력 증강과 안정공급

수출할 수산물도 없고, 공급도
안정적이지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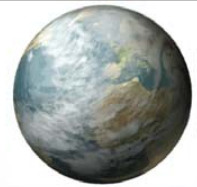
KAMI군

양식 수산물은 언제?
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도 필요해



ARON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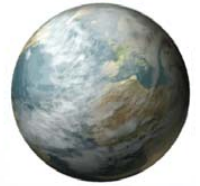
우리 수산분야의 글로벌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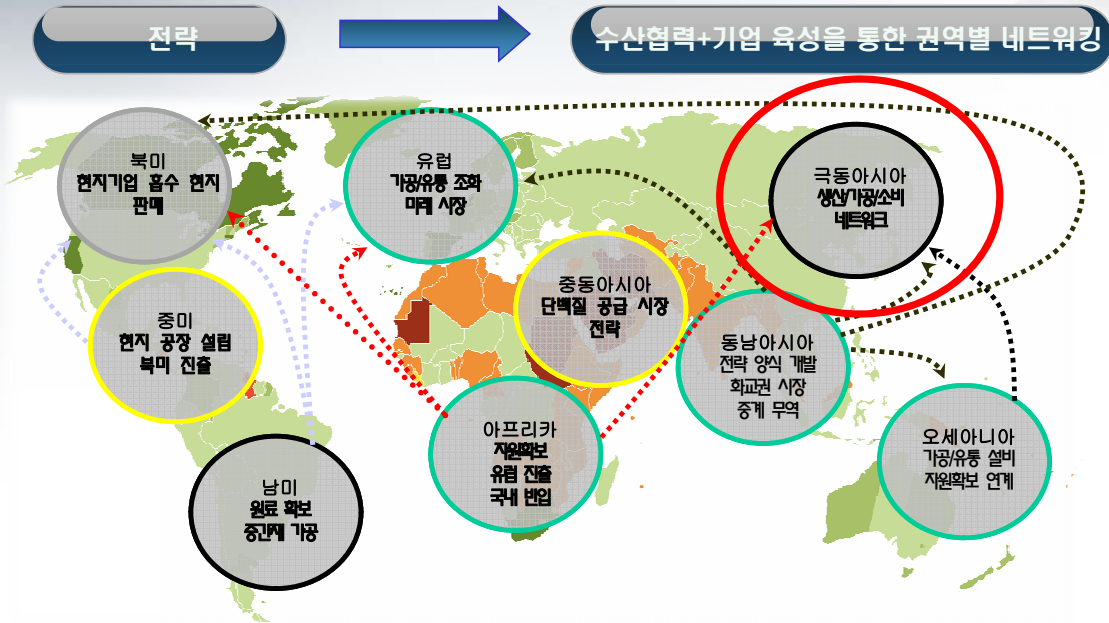
1 수산분야의 FTA 정책 단계 : 국내대책에 집중 = 활용도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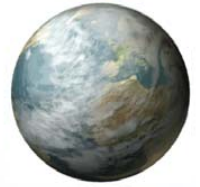
수산분야의 한중 FTA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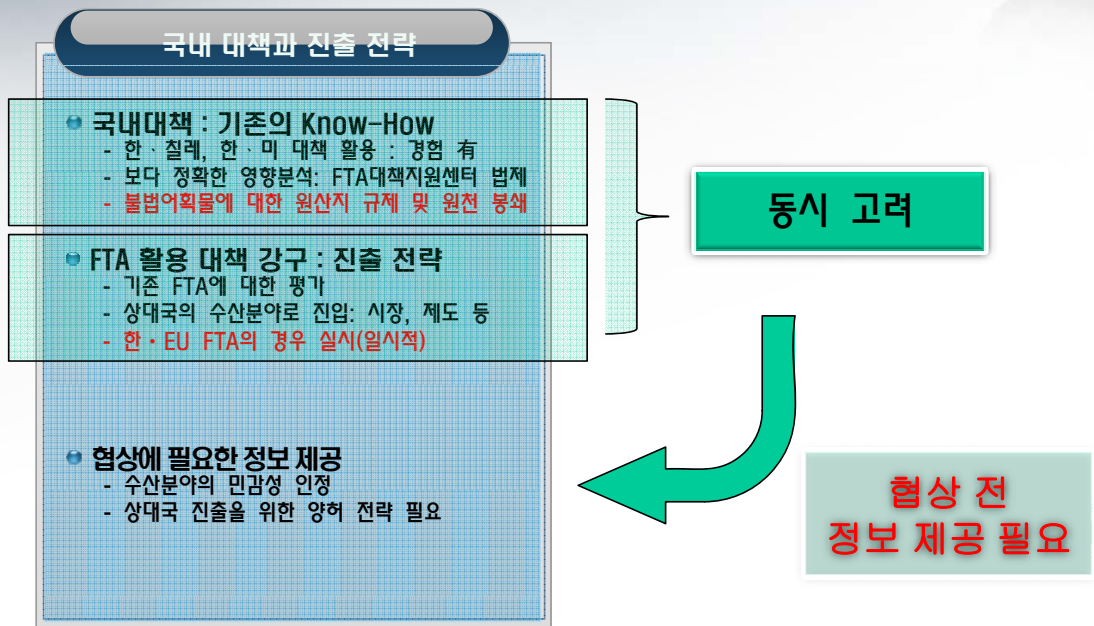
1 수산분야의 FTA 정책 연계 : 국내대책에 집중 = 활용도 저하



우리 수산분야의 글로벌 전략



2 FTA를 활용한 진출 전략 필요



우리 수산분야의 글로벌 전략



3 보다 큰 맥락에서의 FTA 활용

1 수산분야 해외진출의 교두보

- ▶ 상품 수출만이 FTA는 아니다.
- ▶ 우리 수산기업의 진출 교두보 마련
- ▶ **급부상하는 수산협력 : 경험의 중요성**
- 한페루 FTA 경우

2 적극적인 대중국 진출 필요합니다.

- ▶ 중국의 성 하나 = 국가 수준
- ▶ 국내대책과 진출전략 동시 고려(FTA)
- ▶ 상품 수출(품목전략+수출단지화)
- ▶ 거대식품기업 라인에 승차
- ▶ 해외수산자원 확보 = 원료 수출
- ▶ 중국의 고급수산물 시장 수출 : 해삼, 전복 등

3 불법어업 원천 봉쇄 필요

- ▶ 중국의 불법어획물 : 원산지 규정에 근거 혜택 불어
- ▶ 불법어획물 : 시장 왜곡 현상(저가격으로 생산자 소득 ↓)
- ▶ IUU 제제는 국제적인 흐름 : 시장유통금지로 대응
- ▶ 따라서, 협상 전 민감품목 협의 등에 불법어업 포함
- ▶ 국내대책에 불법어업에 대한 규제, 대책, 예산 확대 포함

4 기업 육성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 ▶ 수산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펀드) 마련 필요





Session 2

KIEP

2012 KIEP 주최 한·중 FTA 토론회

한·중 FTA 서비스부문의 주요 쟁점

이 시욱 (명지대학교)

Table of Contents

1. 문제의 제기
2. 한중 FTA 서비스 협상의 의의
3. 우리나라 서비스업 현황
4. 한중 FTA 서비스 분야 주요 예상 쟁점
5. 협상 전략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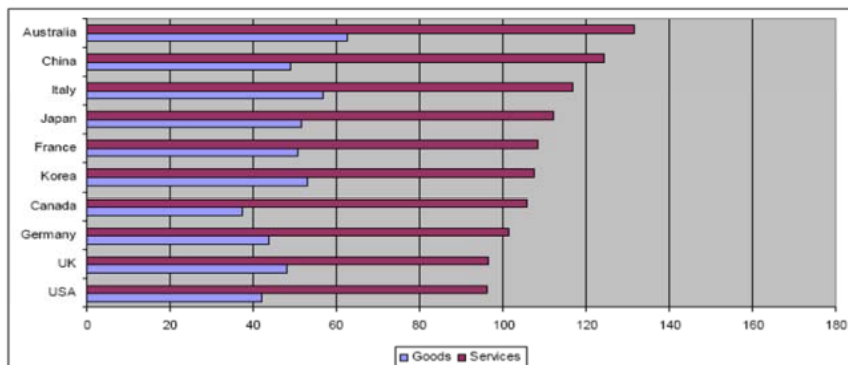
Part 01: 문제의 제기

● 문제의 제기

서비스부문 자유화는 원칙적으로 상품부문 무역자유화에 비해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큰 것으로 평가

- 시장장벽으로 인한 서비스 교역비용은 국제적으로 재화교역에 비해 2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
- 최근 서비스의 국제 간 거래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부문 자유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추세

교역 비용 비교 : 상품 vs 서비스 (2005년)



● 문제의 제기

중국은 주요 교역대상국 중 서비스부문 시장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 이에 한·중 FTA는 원칙적으로 시장 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대중국 서비스 진출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 주요한 기회로 활용 가능

다만, 중국의 WTO 및 기체결 FTA 양허안을 고려해 보건대, 중국은 한·중 FTA 협상에서 자국의 서비스부문 시장개방에 대해 소극적일 가능성

- 중국은 자체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정권 안보의 차원에서 국내 관련 규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

아울러, 서비스교역은 상품교역에 비해 교역 상의 제반 장벽을 식별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지님.

따라서, 한·중 FTA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치밀한 협상전략 수립 및 논거 마련이 필요

Part 02: 한중 FTA 서비스 협상의 의의

● 국제 서비스 거래의 규모

서비스부문 국제 간 거래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동 부문 자유화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는 추세

- 현재 전세계 서비스 수출은 총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의 약 20% 수준
- 그러나, 상품교역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서비스 활동의 총 부가가치를 포함할 경우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의 50% 수준(Escaith, 2008)

서비스의 경우 상품무역과는 달리 무형성, 저장 불가능성, 생산·소비 동시성 등의 특성으로 국경 간 교역 보다는 인력이동이 직접 수반되는 거래가 주류

- 따라서, 투자 및 자연인 이동 등도 무역의 개념에 포함시킬 필요

이와 같은 거래 유형을 포함시킬 경우 2020년경에는 서비스교역의 규모가 상품교역의 규모 수준에 도달할 전망 (Hufbauer and Stephenson, 2007)

- 2050년에는 Mode 3 하의 서비스 거래액이 상품무역량과 대등한 수준

<참고: 서비스 거래 형태>

- 금융, 오락, 정보통신 등은 전자거래 형태 혹은 디스크나 CD 등에 저장하여 거래 가능하며 동 유형은 상품교역과 비슷한 특성을 지님.
- 반면, 건축, 관광, 의료, 전문직 서비스 등 상당 부문의 서비스는 소비자나 공급자의 국경 간 이동이 전제되는 것이 일반적

● 서비스 자유화의 효과

FTA, 다자간 협상 등을 통한 서비스부문 자유화는 상품부문 무역자유화에 비해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큰 것으로 평가

- Robinson et al. (1999) 등의 추정에 따르면, 서비스 부문 교역장벽의 50%를 축소할 경우 발생하는 후생 증가는 비서비스 부문 자유화에 비해 5배 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서비스 자유화 없이 추진되는 무역자유화는 중간재 투입의 비효율성 지속으로 상품교역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서비스교역은 상품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외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이 결과 서비스부문 자유화는 **국내와 해외 공급자 간의 "비차별성" 원칙에 근거한 규제개혁**을 동반

- 관세장벽에 의존하는 상품교역과는 달리 서비스교역은 시장실패(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성 등)를 교정하거나 해외공급자와의 경쟁에서 국내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국내규제에 의해 제한
- 이에 따라 서비스교역은 상품교역에 비해 교역 상의 제반 장벽을 식별하기가 어려운 특성

FTA 서비스 협상의 의의

자유화 방식에 관련하여 FTA와 같은 특혜 자유화가 MFN방식의 다자 간 자유화와 비교하여 정태적 후생 증가효과가 큰가의 여부는 불명확

- 다자 간 MFN 자유화가 원론적으로 FTA와 같은 특혜 자유화에 비해 보다 큰 후생증대효과를 지님.

다만, 국제 무역협상의 진전은 협상국의 수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FTA 무역협정은 다자간 협정에 비해 rule-making이나 시장개방에 있어 보다 진전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 (Mattoo and Fink, 2002)

- 실제로 FTA 등을 통한 서비스자유화가 GATS 하의 다자간 협상에 비해 보다 빠른 속도로 진전 중등

FTA를 통한 서비스 자유화가 다자 간 자유화에 비해 규율 조화가 용이

- 가령, 서비스에는 정보통신, 금융 등 상대적으로 다자 간 협상을 통한 국제 규율이 용이한 부문이 있는 반면, 건축/엔지니어링, 기타 전문직 서비스 등과 같이 조화된 규제 규율이 어려운 부문
- FTA는 후자와 관련하여 특히 유용

FTA 서비스 협상의 의의

FTA를 통한 자유화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님.

- 서비스의 경우 국경 간 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및 이를 통한 재정수입 획득 기회가 부재하므로 서비스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은 **상품 부문에 비해 보다 명확한 정태적 후생증대 효과**를 지님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후생 감소가 발생하지 않음).
- 특혜 자유화는 국내 서비스 공급자가 글로벌 경쟁에 완전히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을 통한 일종의 **학습효과(Learning-by-doing)를 안정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
- 지역 특정한 매물 비용 및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한다면, 특혜 자유화를 통한 먼저 특정국가에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기업(first mover)은 **MFN 자유화가 성취되더라도 비FTA 회원국 기업에 비해 경쟁우위가 존재**할 가능성

서비스업 시장개방의 경제효과 파급 경로

- 서비스업 개방은 잠재적 해외수요 발굴에 기여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대외 서비스 수출 및 투자를 촉진
- 서비스업 개방은 규제완화 등 국내 서비스관련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경쟁 촉진을 통해 전반적인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
- 서비스 자유화는 보다 양질의 서비스 중간재를 관련 제조업체에 공급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
 - Francois and Woerz (2008)가 제시한 바와 같이 서비스부문 수입침투율이 높을수록 수출품에 체화된 기술적 구성이 향상
 - 다만, 서비스 시장개방도가 클수록 기술집약적 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

서비스 측면에서 본 한중 FTA의 의의

중국의 내수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한중 FTA는 직접투자를 매개로 한 서비스 기업내 수출 확대 등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증대에 획기적인 기회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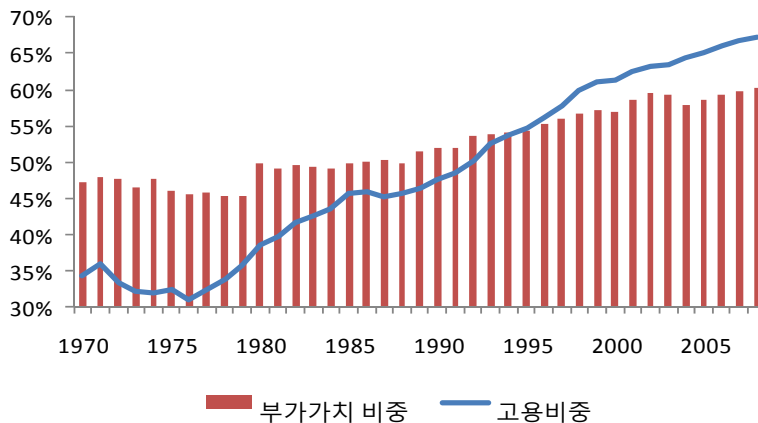
- 아울러,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서 제조업 수출에 연관된 국내 생산자서비스의 시장 확대에 기여 가능성
 - FTA 체결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 국제분업구조의 진전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식기반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 진전 예상
- 미국, EU 등 서비스 강국들과의 FTA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제고를 달성하는 반면, 한중 FTA는 국내외 서비스시장 확대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함이 타당

Part 03: 우리나라 서비스업 현황

●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현주소

- 우리 경제는 GDP와 고용에서의 서비스업 비중이 '09년 기준으로 각각 61%와 69% 수준에 도달하는 등 경제의 서비스화(tertiarization)가 빠르게 진전
- 향후에도 고령화 및 여성 경제활동인구 확대, 세계화 진전, 소득 증가 등에 따라 서비스화는 더욱 진전될 전망

우리나라 서비스업 GDP 및 고용비중 변화 추이



●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현주소

- OECD 국가들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소득수준대비 고용비중은 비교적 적정하나, 부가가치(GDP) 비중은 5~10%p 정도 낮은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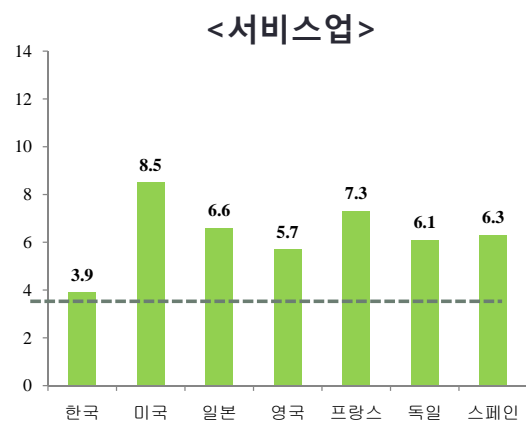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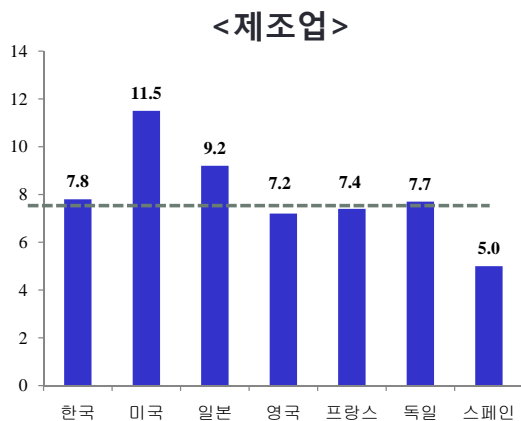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유사한 고용 비중 시 부가가치 비중 국제 비교

국가명	연도	고용비중	부가가치 비중
한 국	2008	67.3%	60.3%
미 국	1970	67.6%	65.6%
캐나다	1980	67.3%	59.4%
영 국	1984	67.6%	59.4%
프랑스	1990	67.4%	68.7%
독 일	1998	67.1%	67.8%
일 본	2004	67.6%	69.1%

●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현주소

-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 반면,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이 2007년 현재 7만 8천불(구매력 평가 기준)로서 미국과 일본보다는 낮으나 영국, 독일, 프랑스 등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

노동 생산성 국제비교 (2007년 현재, 구매력평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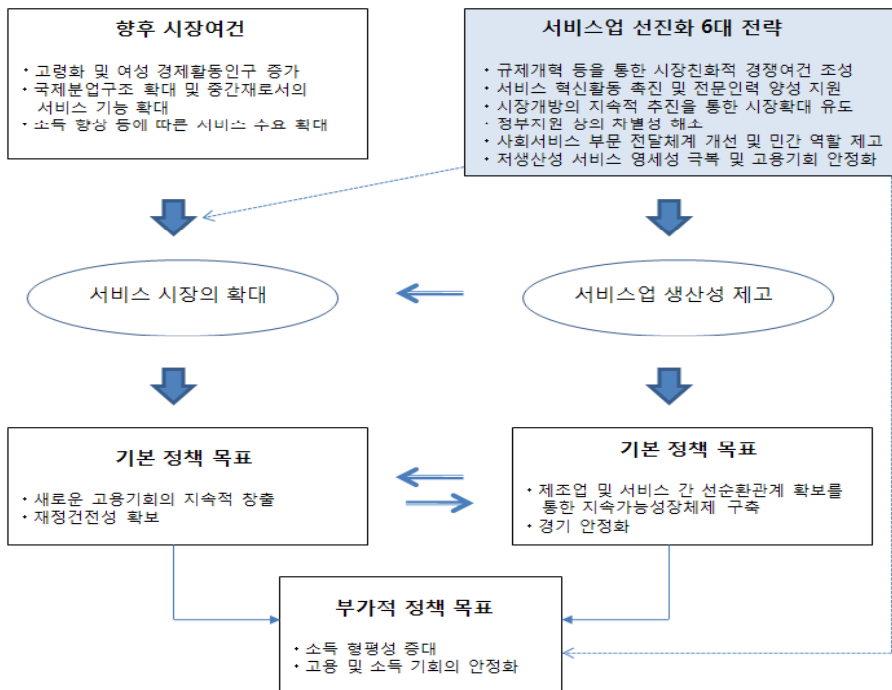


OECD 국가의 서비스부문 노동 생산성 순위(2007년 현재, 구매력평가 기준)

	서비스업 전체		음식/숙박 도소매		운수/창고 /통신		금융/부동산 /사업서비스		개인 및 사회서비스	
	생산성	순위	생산성	순위	생산성	순위	생산성	순위	생산성	순위
룩셈부르크	117.8	1	67.2	1	116.9	1	186.1	1	72.8	1
미국	84.5	2	59.3	3	113.3	2	153.3	3	59.7	2
프랑스	73.0	4	52.3	7	75.9	10	129.2	4	51.7	6
독일	61.3	13	38.8	18	65.8	22	110.1	13	47.1	13
영국	56.8	19	38.6	19	70.7	18	91.7	22	43.9	17
일본	66.1	8	44.5	15	72.6	16	121.3	9	53.4	5
스페인	62.5	12	48.9	13	73.0	15	117.1	12	47.6	11
포르투갈	46.9	23	28.2	27	69.1	19	105.3	18	42.2	21
체코	43.2	25	33.8	24	65.8	21	59.3	28	34.2	25
폴란드	42.0	27	41.5	17	39.8	28	78.7	25	29.1	28
한국	38.9	28	17.9	28	50.6	26	72.4	27	38.5	23
OECD	61.4		44.4		75.1		110.6		45.7	

주: OECD 28개국 대비 순위임/노동생산성은 미화 1천불 기준(PPP 적용)

서비스업 증장기 발전전략 방향



Part 04: 한중 FTA 서비스 부문 주요 쟁점

● 서비스 개방에 대한 양국 측 입장

기 체결된 중국의 FTA 등의 내용을 고려해 보건대, 중국은 자국의 서비스부문 시장개방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

- 중국은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뒤처지고 정권 안보의 차원에서 국내 규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인 바, 동 부문의 개방에 매우 소극적
- 중국은 WTO 가입 시 경제발전단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서비스 시장을 충분히 개방하였다는 입장이며, 이에 FTA에서도 DDA 수준의 개방을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일 것으로 예상
- 예를 들어, 중국이 선진국과 맺은 유일한 FTA인 중·뉴질랜드 FTA의 경우 교통, 통신, 보관 및 저장, 정부관련 서비스, 사업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을 대폭 유보한 경험

반면, 우리나라는 미래자유화 보장, 협정의 투명성, 합리적인 국내규제, 상호인정 등을 모두 포함하여 GATS plus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희망

- 우리나라는 중국 기체결 양자협정 중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높은 중·홍콩 및 중·마카오 CEPA나 중·대만 ECFA를 근거로 중국 측에 이와 유사한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으나, 중국 측은 이에 소극적일 가능성

WTO 양허안 비교: 우리나라 개방도가 중국에 비해 높은 분야

	비교
방송·통신	-중국의 경우 비디오·음반 유통, 극장서비스를 개방했으나, 지분 및 수량제한 존재 -한국의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영화, 비디오제작 및 배급, 음반녹음 개방 -통신 및 부가통신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포괄적으로 개방한 가운데, 통신시장은 양국 모두 지분제한 존재
금융	-한국은 1990년대 OECD 가입,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상 전면개방 -중국은 지분 및 설립요건 제한 다수 (mode 3)
과학기술	-한국의 양허폭과 수준이 중국(자격요건, 설립요건 등)보다 대체로 높음. (mode 3, 4)
해운	-한국은 연안해운 제외하고 대부분 개방 -중국은 외국인 지분제한(49%), 고용제한(85% 이상 내국인), 지분 제한(mode 3), 경영자 및 선원에 대한 국적 제한(mode 4) 등 존재
건설	-한국은 공동계약의무만 있으나 중국은 합작의무, 지분제한(25%), 거주 및 자격요건 등 있음. (mode 1, 3, 4)

WTO 양허안 비교: 양국 개방 수준이 비슷한 분야

	비교
문화관광	- 시청각, 문화 관련 사업서비스에서 한국 양허 수준이 높고 제한 없으나 중국은 합작, 지분제한 등 존재 (mode 3) - 단, 레크리에이션·문화 스포츠 서비스에서는 양국 모두 대부분 미양허. - 관광부문을 한국이 호텔 및 레스토랑 분야(한국 mode 1 미양허)를 제외하고 중국보다 양허수준 높음.(중국 mode 3, 4에 제한 있음)
환경	- 중국의 개방수준이 한국보다 다소 높음(한국은 하수 및 폐기물처리 일부 양허) - 단, 개방서비스 중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큰 차이는 없음.
육상·항공운송	- 한국은 화물운송(도로) 여객 양허, 화물운송업에 대한 mode 3(철도)를 ENT 통해 양허함. 항공운송에서는 CRS 및 마케팅 서비스, 항공기 관리 및 수리서비스 (mode 2,3) 양허. - 중국은 도로화물 양허, 철도화물 및 여객운송(49% 지분제한)은 합자 가능함. (mode 3) 항공운송업은 CRS서비스 ENT 하에서 합자 양허(mode 3), 항공기 관리 및 수리서비스 합작회사의 설립(mode 3)

WTO 양허안 비교: 우리나라 개방도가 중국에 비해 다소 낮은 분야

	비교
교육	-중국양허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한국보다 높음.(mode 2, 3 등) 단, 중앙보다 지방 행정기관의 법·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법률	-한국과 중국의 양허안은 유사하고(mode 1, 2, 4), 서비스 공급자의 법적 형태에 제한 있음(mode 3). 단, 중국은 지역제한 있음.
보건의료	-한국은 미양허이나 중국은 선진기술도입과 중의학 해외진출을 위해 대폭 양허 (mode 1, 2 양허, mode 3 조건부 양허, mode 4에서 외국인 의사단기면허 6개월 인정(1년까지 연장 가능))

기체결 FTA에서 나타난 중국측 입장

중국은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서 자국의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며, 기체결 FTA에서도 WTO 양허안에 비해 서비스분야에서 실질적인 큰 폭의 개방이 진전되지 못함.

- Early Harvest Program 채택 등을 통해 정치적인 고려, 상품 분야의 FTA 협상의 성과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금융, 방송통신, 유통 등에 대해서는 WTO plus 수준 양허한 FTA가 없는 상황
- 다만, 중국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환경 서비스, 오락·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기체결한 FTA들에서 개방수준 다소 확대

기체결 FTA에서 나타난 중국측 입장

중국이 선진국과 맺은 유일한 FTA로서 상대적으로 서비스 개방 폭이 크다는 중·뉴질랜드 FTA에서도 교통, 통신, 보관 및 저장, 정부 관련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 대폭 유보

- 환경,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 농·임업 및 관광·여행 관련 서비스 등 7개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만 부속서에 명기하는 방식으로 제한적 미래 MFN을 인정
- 인력이동 관련 FTA 협상에서 일반적으로 배제되던 준노무인력 분야(간호사, 요리사, 중국어 강사 등)를 일시고용입국이란 범주 하에 포함시켰으며, 인력이동을 별도 챕터로 규정

기체결 FTA에서 나타난 중국측 입장

중·홍콩/마카오 CEPA, 중·대만 ECFA 등에서는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WTO plus 수준으로 서비스부문을 개방

- WTO 및 기체결 FTA 서비스 양허에서 한 번도 기재한 적 없는 공공 설비 서비스, 개인 자영업 서비스, 고령자·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물류 서비스를 최초로 개방
- 법률, 건설, 시청각 분야, 관광 및 여행 서비스 등에서 폭 넓은 개방 허용
- 개방에 매우 소극적인 금융, 방송통신, 유통, 운송 서비스 등에서도 기업 설립 요건이나 사업범위 등에서 개방 진전

중·대만 ECFA에서는 아래 11개 서비스 분야를 조기수확 대상으로 명시

- 보험업, 은행업, 증권선물업, 회계감사부기 서비스업,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자연과학·공학 연구개발, 회의(convention) 서비스, 전문설계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대만영화 수입배정 제한 철폐), 병원 서비스, 항공기 수리정비업 등
- 특히, 이 중 회계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자연과학·공학 연구개발, 회의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등 5개 분야는 기 개방(10.10.28)

양국 기체결 FTA 추가 개방 사례 I

	한국	중국
방송·통신	-한·미, 한·EU FTA에서 시청각서비스 (외국인 간접투자100%허용, 의무편성비율 축소)와 기본통신서비스(간접투자 100% 허용)	-홍콩/마카오와의 CEPA협정의 경우 시청각 및 부가통신서비스 추가개방
금융	-	-WTO 수준에서 추가개방을 고려하지 않는 입장
과학기술	-미국, 싱가포르 FTA를 통해 거주요건 명시 -EU, 인도 FTA를 통해 일부 서비스 추가 양허(mode 3)	-칠레, 파키스탄 FTA에서 탐사서비스 일부 양허(mode 3), -뉴질랜드, 싱가포르 FTA에서 자연인 거주조건 완화(mode 4)
해운		-중·뉴질랜드 FTA에서 국제해운, 해운보조 서비스 합작투자허용
건설		-중·홍콩 CEPA에서 거주요건, 지분제한 등 양허 -중·뉴질랜드 FTA는 자격요건 챕터 포함.

양국 기체결 FTA 추가 개방 사례 II

	한국	중국
문화관광	-한·미 FTA에서 방송서비스 추가양허 -한·EU FTA에서 문화협정의정서 적용	-칠레, 파키스탄, 페루, 코스타리카 FTA등에서 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분야에서는 추가 양허(mode 1, 2 양허, mode 3에서 ENT 삭제), 여행알선업 시장접근 양허(mode 3) -홍콩 CEPA에서 시청각, 엔터테인먼트, 여행알선업, 여행안내업에서 전면적 추가양허(mode 3, 4) -중·대만 ECFA에서 수입쿼터조건 완화
환경		-중·뉴질랜드 FTA에 지분제한, BV 체류기간, 미래최혜국 대우 등 추가 양허
육상·항공운송	-한·미FTA에서 도로여객운송 사무소 설치의무 제한	-중·홍콩 CEPA에서 도로여객, 철도여객(mode 3) 추가개방함.
인력이동	-인도, 페루 FTA에서 CCS(mode 3와 비연계), IP 양허	-뉴질랜드(I/S 양허), 싱가포르(CSS 양허), 페루 FTA에서 BV(6개월) 양허

● 양국 기체결 FTA 추가 개방 사례 III

	한국	중국
교육	-	-중·뉴질랜드 FTA에서 중국측 양허안에 학위 및 자격증에 관한 평가 작업에 공동으로 착수 등이 포함됨. 단, 뉴질랜드의 개방수준은 매우 높음.
법률	-한·미, 한·EU FTA에 5년내 3단계 개방	-홍콩 CEPA에서 설립 형태, 지역 요건, 거주 요건 완화
보건의료	-한·페루 FTA에서 조리사부문에 대한 양허	-중·홍콩 CEPA 및 중·대만 ECFA에서 지역을 한정된 독자 투자 양허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자연인(중의사, 간호사, 조리사 등)의 일시고용입국에 대해 양허

Part 05: 한중 FTA 서비스 협상 기본전략 방향

● 협상 기본전략 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 FTA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체계적인 협상전략 수립 및 논거 마련이 필요

- 중국은 한·중 FTA 협상에서 준노무인력에 대한 일시고용입국 허가 등 인력이동 부문 등에 일부 부문에 한정된 매우 제한적인 협상기조를 유지할 가능성

부문별로 WTO/DDA 수준, 기체결 FTA 수준, CEPA/ECFA 수준, 기타 WTO-plus 수준 등을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여 시나리오별 협상 의제 발굴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상호 민감한 분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유망한 분야를 개방해 나간다면 서비스 분야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상호보완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

● 협상 기본전략 방향

서비스업 개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로 중국 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

- 첫째, 서비스 개방에 대한 중국 측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이나, 서비스 국제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방 논의를 배제하면 FTA 체결의 혜택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음
- 둘째,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개방은 WTO 등 다자간 협상을 통한 개방에 비해 국내 서비스산업 육성에 보다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음을 강조
- 셋째, 서비스 자유화 없이 추진되는 상품자유화는 중간재로 투입되는 서비스 부문의 비효율성 지속으로 인해 상품교역이 저해될 수 있음을 설득
- 넷째, 우리 서비스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점을 이해시키면서 호혜적 이익추구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방 및 협력 확대를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
- 다섯째,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한·중 FTA를 통한 전반적인 혜택은 적은 반면, 농업개방, 인력이동 확대 등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강조



협상 기본전략 방향

금번 한·중 FTA 협상을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전 분야를 동시에 협상하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서비스업에서의 중국의 양보를 통해 양국 간 이익균형 추구 및 개방효과 제고를 도모할 필요

중국시장에의 장기적인 진출기반 확보 차원에서 우리 관심분야에 대한 중국 측의 전향적인 양보를 요구한다는 협상의 기본입장을 유지할 필요

양국의 시장수요 규모 및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상호 개방 시 경제적 편익이 클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Mode별 협상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을 발굴·협약하는 전략 추진

- 특히, 중국 측의 보이지 않는 규제 및 자의적 관행 해소에 주력
-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애로요인 제거에 초점



한·중 FTA관련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대응방안

2012. 01. 31.

발표순서

- 한·중 문화·관광분야 교류현황 및 전망
- 한·중 문화·관광산업 대외개방 현황
- 한·중 FTA 협상 문화·관광분야 예상쟁점
- 한·중 FTA 문화·관광분야 대응방안 및 기대효과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Chapter 01

한·중 문화·관광분야 교류현황 및 전망

한국의 대 중국(홍콩) 문화산업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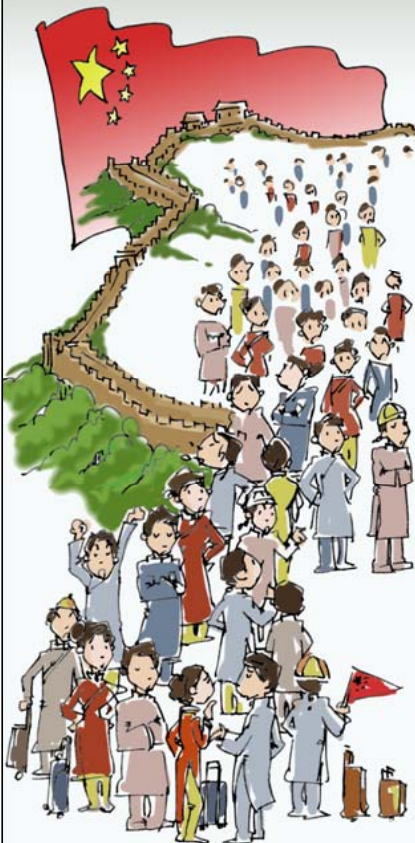
단위: 1,000달러

산업	항목	2005	2006	2007	2008	2009
출판	수출	-	15,500	22,489	19,737	37,356
	수입	-	38,342	45,308	50,360	46,001
만화	수출	290	388	392	421	432
	수입	-	159	121	109	97
음악	수출	555	850	1,665	1,844	2,369
	수입	118	134	103	99	98
게임	수출	117,449	158,591	241,330	292,062	433,059
	수입	-	-	-	-	-
영화	수출	1,675	1,144	824	1,305	1,578
	수입	3,473	3,672	1,816	1,305	3,534
애니메이션	수출	471	164	127	1,136	1,356
	수입	0	40	31	16	10
방송	수출	7,530	12,442	8,328	8,097	10,822
	수입	-	5,724	532	2,181	110,260
캐릭터	수출	60,094	43,968	31,396	38,346	43,593
	수입	55,123	84,177	85,369	75,697	81,368
에듀테인먼트	수출	191	192	203	211	-
	수입	-	-	-	-	-

중국 문화산업
급속성장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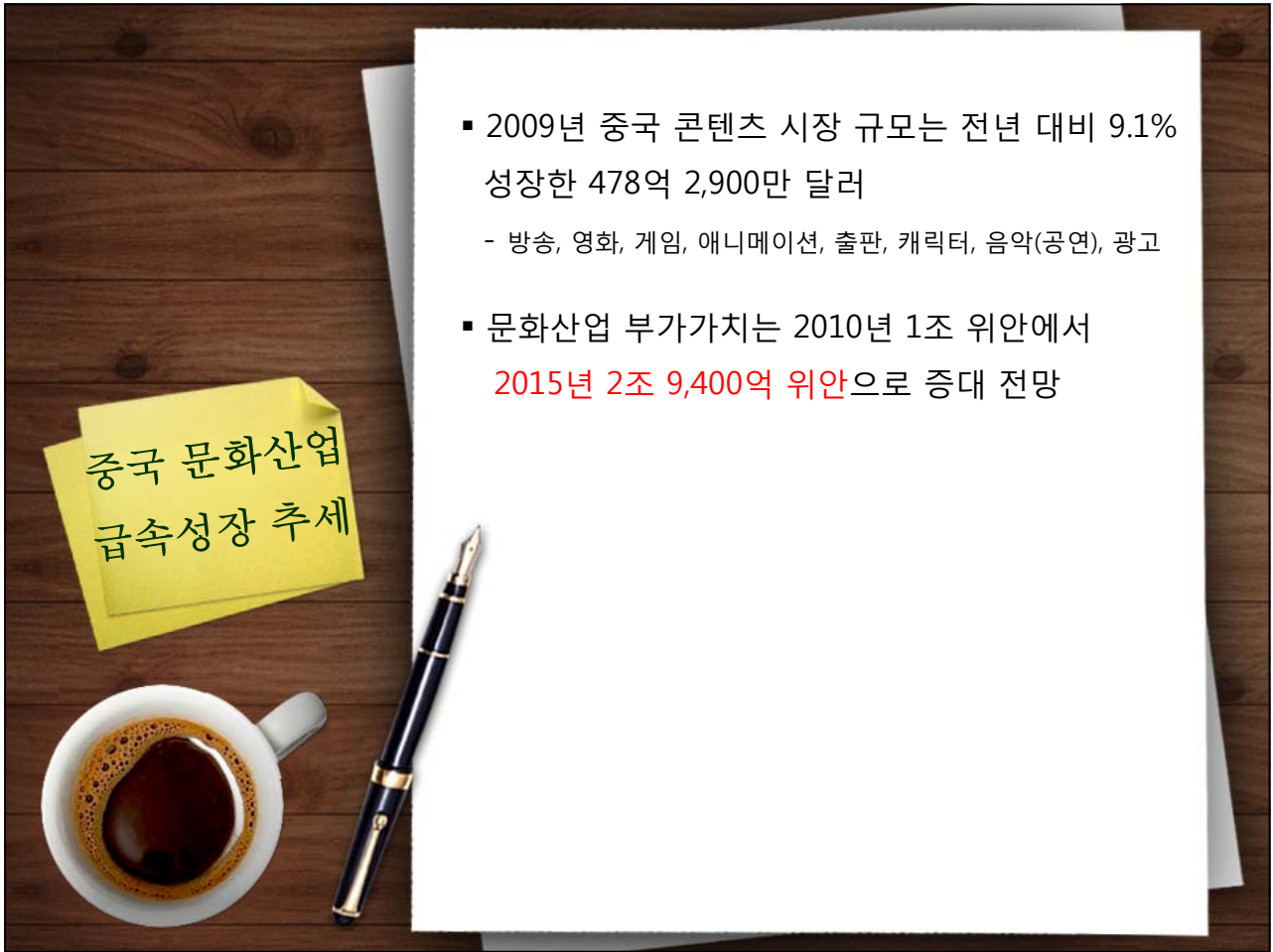


- 한국의 대 중국 문화산업 수출액은 **2009년 기준 5억 7,969만** 달러로 총 수출비중의 23.9% 차지
- 중국 경제성장과 콘텐츠 산업 발전에 따라 한국의 대 중국 수출비중도 증대될 전망
- 2009년 **중국의 온라인게임** 세계시장 점유율은 31.3%(한국은 23.0%)이며, 2008년에 **세계 온라인 게임시장 1위**를 차지



중국 문화산업진흥 계획

-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2011)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문화산업 발전을 제시
 - '15년 말까지 문화산업 부가가치액을 '07년의 4배로.
 - 집중투자를 통해 **문화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육성**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강요" 제10편(문화발전과 번영촉진) 수록
- '09년 9월 국무원 문화산업 진흥계획 발표
 - 중국 최초 문화산업 관련 전문적 강령
 - 영상제작, 출판, 인쇄, 광고, 엔터테인먼트, 전시업의 중점적 발전을 추진
 - **외국투자기업**이 독자, 합자, 합작 등의 형태로 진입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춤**



- 2009년 중국 콘텐츠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9.1% 성장한 478억 2,900만 달러
 - 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출판, 캐릭터, 음악(공연), 광고
- 문화산업 부가가치는 2010년 1조 위안에서 **2015년 2조 9,400억 위안**으로 증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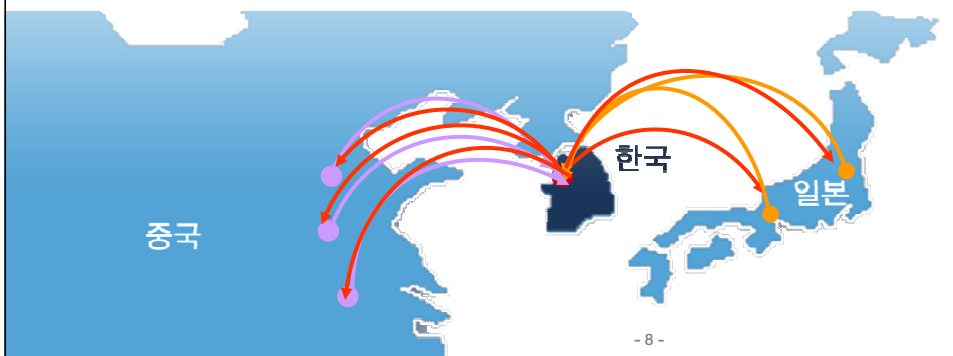
한·중 관광교류 현황

- 한국 및 중국은 상대국에 대해 각각 제 1 및 제2 인바운드 시장
 - 방한 총 외래객수 중 중국인은 20%를 차지(일본인은 30%)

2011년 양국간 상호 여행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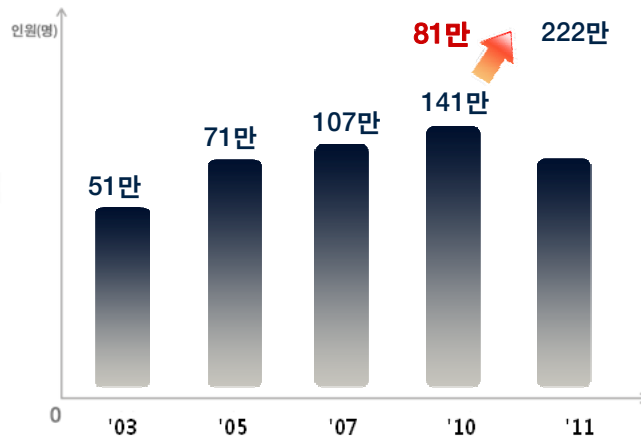
한국→중국 : 420만 명

중국→한국 : 222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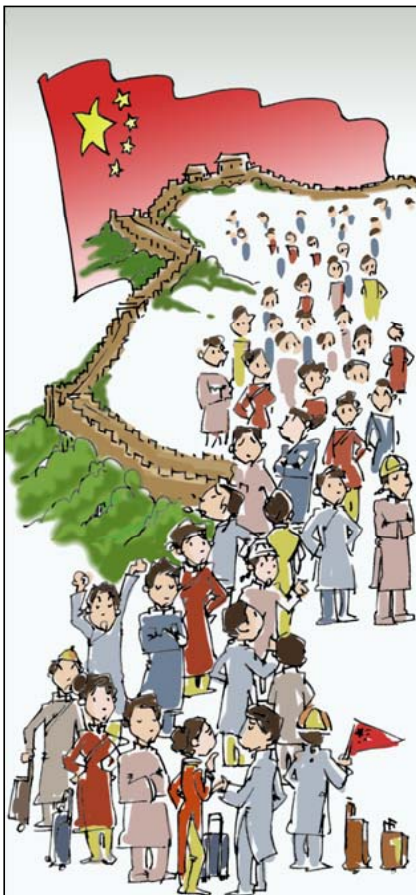


방한 중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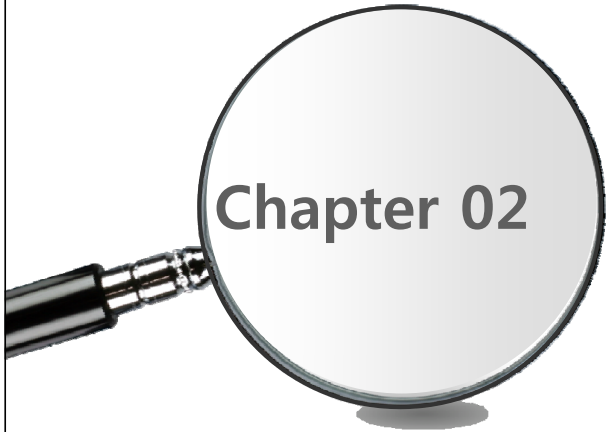
- 중국 경기회복 및 위안화 강세 영향으로 중국의 연간 해외여행객이 5,000만 명~6,0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므로 **방한 여행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1년간
중국인 관광객
81만명 늘었다



- 방한 중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558달러
 - 1인당 평균 쇼핑비용: 778달러(방한 외래객 평균 444달러)
 - 주요 쇼핑품목: 향수, 화장품, 의류(일본인은 식료품 선호)



한·중 문화·관광산업 대외개방 현황

문화관광 서비스의 포괄범위(W/120)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사업서비스	F. 기타사업서비스	a. 광고서비스(CPC871)
		p. 사진서비스(CPC875)
		r. 인쇄 및 출판(CPC88442)
		s. 컨벤션 서비스(Convention Services, CPC87909)
		t. 기타 사업서비스의 기타 중 일부 - 복제서비스(CPC87904) - 통번역 서비스(CPC87905) - 전문디자인서비스(CPC87907) - 개인연주가 대리 에이전시 서비스(CPC87909 일부)
2. 커뮤니케이션서비스	D. 시청각서비스	a.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유통서비스(CPC9611)
		b. 영화상영 서비스(CPC9612)
		c.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CPC9613)
		d.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전송서비스(CPC7524)
		e. 사운드 레코딩(CPC n.a.)
		f. 기타
9. 관광서비스	A. 호텔 및 레스토랑(CPC641~643)	
	B. 여행알선대행업 및 투어 오퍼레이터(CPC7471)	
	C. 관광안내서비스(CPC7472)	
	D. 기타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스포츠서비스	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극장, 라이브밴드, 서커스 서비스포함)(CPC9619)	
	B. 뉴스 제공업(CPC962)	
	C. 도서관, 박물관 및 기타 문화적 서비스(CPC963)	
	D. 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CPC964)	
	E. 기타	

중국의 WTO가입 양허안(2001년): 시청각 서비스



분야	시장접근(MA) 제한사항	내국민대우(NT)제한 사항	추가 기재사항
2.D. 시청각 서비스 - 비디오 배급(유통) 서비스(오락 소프트 웨어 포함, 비디오 렌탈 서비스 CPC83202) - 음반(Sound recording) 배급(유통)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인 파트너와 계약합작을 통해 시청각 상품(영화 제외)을 배급할 수 있음. 단 중국정부는 시청각 상품의 내용을 조사할 권리를 보유함 4) 수평적 양허 기재사항 외에 약속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기재사항 외에 약속 없음	영화에 대한 중국정부의 행정규제 조건으로, 중국 정부는 극장상영을 위한 배급은 이익의 공유, 즉 분장제 를 조건으로 매년 20편의 한도 내에서 수입을 허용함
2. 커뮤니케이션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영화관 설립/개보수 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인 지분율은 49%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기재사항 외에 약속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기재사항 외에 약속 없음	


1)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mode 1), 2)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mode 2), 3)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mode 3), 4)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 mode 4)

- 2004년 11월부터는 분장제 영화수입 외에도 매단체 방식으로 매년 30~50편의 영화 수입을 허가
- WTO DDA 수정 양허안에 포함되지 않은 자발적 자유화 내용이므로 향후 철회 가능

중국의 WTO가입 양허안(2001년): 문화관련 사업서비스




분야	시장접근(MA) 제한사항	내국민대우(NT)제한 사항	추가 기재사항
1.F.a. 광고서비스(CPC871)	1) 외국 광고 공급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인 파트너와 계약합작을 통해 시청각 상품(영화 제외)을 배급할 수 있음. 단 중국정부는 시청각 상품의 내용을 조사할 권리를 보유함 4) 수평적 양허 기재사항 외에 약속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기재사항 외에 약속 없음	
1.F.p. 사진서비스(CPC87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외국인 다수 지분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기재사항 외에 약속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기재사항 외에 약속 없음	
1.F.r. 인쇄 및 출판(CPC88442) * DDA수정 양허안에서 포장물의 인쇄 분야만 양허, 출판분야는 양허 제외	양허 제외 *DDA수정 양허안 내용 1) 약속 없음 2) 약속 없음 3) 외국인 완전(100%) 지분이 허용되나, ENT요건이 부과됨 4) 수평적 양허 기재사항 외에 약속 없음	양허 제외 *DDA수정 양허안 내용 1) 약속 없음 2) 약속 없음 3) 약속 없음 4) 수평적 양허 기재사항 외에 약속 없음	양허제외
1.F.s. 컨벤션 서비스(CPC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이 부과되며, 외국인 다수 지분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기재사항 외에 약속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기재사항 외에 약속 없음	
1.F.t. 기타 사업서비스의 기타 - 통번역 서비스(CPC87905)만 양허 - 그 외에 문화서비스 관련 분야는 양허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이 부과되며, 외국인 다수 지분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기재사항 외에 약속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다음의 자격요건 부과: 통번역 분야에서 3년 업무 경험과 해당 언어 분야에서 우수한 언어 구사력	

중국의 WTO가입 양허안(2001년): 레크리에이션, 문화, 스포츠 서비스 

분야	시장접근(MA) 제한사항	내국민대우(NT)제한 사항	추가 기재사항
10.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극장, 라이브밴드, 서커스 서비스 포함)(CPC9619)	양허 제외	양허 제외	양허 제외
10.B. 뉴스 제공업(CPC962)	양허 제외	양허 제외	양허 제외
10.C. 도서관, 박물관 및 기타 문화적 서비스 (CPC963)	양허 제외	양허 제외	양허 제외
10.D. 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CPC964)	양허 제외	양허 제외	양허 제외
10.E. 기타	양허 제외	양허 제외	양허 제외

- 2005년 중국이 WTO에 제출한 수정양허안에서는 10.D. 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CPC96411, 96412, 96413분야, 단 골프 제외)에 대한 양허 내용을 기재함
 - 시장접근 상 mode1, mode2는 약속 없음(unbound), mode3은 ENT를 요건으로 완전 외국인 보유기업 설립을 허용. 내국민대우상 mode1, mode2, mode3에 대해서는 약속 없음

중국의 WTO가입 양허안(2001년): 관광서비스 

분야	시장접근(MA) 제한사항	내국민대우(NT)제한 사항	추가 기재사항
9.A. 호텔(아파트건물 포함) 및 레스토랑(CPC641-6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합작투자 형태로 중국에서 호텔 및 레스토랑의 설립, 개보수(RENOVATE)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외국인 다수 지분이 허용됨. WTO가입 4년(2005년 12월) 이내에 외국인 완전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기재사항과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약속 없음. 중국에 있는 합작호텔 및 레스토랑과 계약을 체결한 요리사와 중역을 포함한 외국인 관리자, 전문가가 중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기재사항 외에 약속 없음	
9.B. 여행알선대행업(CPC74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여행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행알선대행업자이면서, b) 연간 대 세계 매출액이 4천만 달러를 넘는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 정부가 지정하는 휴양지와 북경, 상해, 광주, 시안에 합작여행알선대행업의 형태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 합작여행알선대행업자의 등록출자액은 4백만 위안 이상이어야 함. 중국의 WTO가입 3년(2004년 12월) 이내에 등록출자액은 2.5백만 위안으로 낮추어짐 - 중국의 WTO가입 3년 이내에 외국인 다수 지분이 허용됨. 중국의 WTO가입 6년(2007년 12월) 이내에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되며, 지리적 제한도 철폐됨 - 여행알선대행업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음 a) 중국 내의 교통숙박업자와 직접 연결하여 행해지는 외국여행객을 위한 여행 및 숙박서비스 b) 중국 내의 교통숙박업자와 직접 연결하여 행해지는 국내여행객을 위한 여행 및 숙박서비스 c) 국내외 여행객을 위한 중국 내의 여행업 서비스 d) 중국 내의 여행자 수표 현금화 서비스 4) 수평적 양허 기재사항 외에 약속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또는 완전 외국인 소유 알선대행업체는 중국인의 해외여행과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의 관광을 취급할 수 없음 4) 수평적 양허 기재사항 외에 약속 없음	

중국의 WTO가입 양허안(2001년): 관광서비스



분야	시장접근(MA) 제한사항	내국민대우(NT)제한 사항	추가 기재사항
9.C. 여행안내업(CPC7472)	양허 제외	양허 제외	양허 제외
10.E. 기타	양허 제외	양허 제외	양허 제외

한국 국적 여행사 중국 진출 현황

- 2011년 9월 기준, 중국 내 상업적 주재 중인 한국 국적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한진관광 4개 업체임

 - 하나투어 및 모두투어는 독립법인으로 진출해있으며, 롯데관광 및 한진관광은 중국여행사와 합자형태
 - 하나투어 차이나는 2005년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베이징 외 상하이 및 홍콩에도 진출
 - 모두투어는 2011년 4월에 베이징에 진출
 - 자유투어는 3년 이내 중국 진출을 목표로 준비 중
- 중국 주재 중인 국적여행사의 주요 업무는 한국인 중국여행, 유학생 및 기업행사, 교민대상 북경 및 장가계 Day Tour 등임

 - 중국인의 해외 여행 업무는 금지



한·중 WTO가입 양허안 비교(MA중심): 문화서비스부문



분야	한국	중국	비교	
2D. 시청각서비스	a.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유통서비스 (CPC9611)	-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서비스 (CPC96112)와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배급 서비스, 단 케이블TV방송에 대한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및 배급서비스는 제외 - 1), 2), 3) O, 4) △	- 비디오배급(유통) 서비스(오락 소프트웨어 포함), 비디오 렌탈 서비스(CPC83202), 영화의 제작 및 배급, 비디오 제작은 제외 - 1), 2) O, 3), 4) △ - 3) 제한사항: 영화를 제외한 시청각 상품 배급은 합작회사 요건 부과, 단 중국정부가 시청각 제품의 내용을 조사할 권리를 보유 ※ 극장상영을 위한 영화배급은 분장제를 조건으로 매년 20편 한도 내에서 수입 허용	
	b. 영화 상영 서비스 (CPC9612)	양허 제외	- 영화관 서비스 양허 - 1), 2) O, 3), 4) △ - 3) 제한사항: 영화관 설립 및 운영 외국인 지분 상한(49%)	
	c.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CPC9613)	양허 제외	양허 제외	
	d.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전송 서비스(CPC7524)	양허 제외	양허 제외	
	e. 사운드 레코딩(CPC n.a.)	- 음반제작 및 유통 모두 양허 - 1), 2), 3) O, 4) △	- 음반 배급(제작 제외) - 1), 2), 3) O, 4) △	
	f. 기타	양허 제외	양허 제외	

O: 제한 없음(none), △: 제한을 두어 부분 양허, X: 양허하지 않음(unbound)

한·중 WTO가입 양허안 비교(MA중심): 문화서비스부문



분야	한국	중국	비교	
1F. 기타 문화관련 사업서비스	a. 광고서비스	- 1), 2), 3) O, 4) △	- 1), 2), 4) △, 3) O - 1), 2) 외국광고 공급권리를 보유한 중국 등록광고 대행업체를 통해 광고해야 함	1), 2) 부문
	p. 사진서비스	- 1), 2) X, 3) O, 4) △	- 1), 2) O, 3), 4) △ - 3) 제한사항: 합작투자 요건(외국인 다수 지분 허용)	1), 2) 부문 3) 부문
	r. 인쇄 및 출판	- 인쇄: 1), 2), 3) O, 4) △ - 출판: 1), 2), 3) O, 4) △(DDA2nd) ※출판에서 신문 및 정기간행물 출판 제외	- 인쇄: 1), 2) O, 3), 4) △ - 3) 제한사항: ENT 출판부문 미양허	
	s. 컨벤션 서비스	-1), 2), 3) O, 4) △	-1), 2) O, 3), 4) △ -3) 제한사항: 합작투자, 외국인 다수지분 허용	
	t. 기타 사업서비스의 기타	-통번역 서비스, 전문디자인 서비스 양허 - 1), 2), 3) O, 4) △	-통번역 서비스만 양허 -1), 2) O, 3), 4) △ -3) 제한사항: 합작투자, 외국인 다수지분 허용	

O: 제한 없음(none), △: 제한을 두어 부분 양허, X: 양허하지 않음(unbound)

한·중 WTO가입 양허안 비교(MA중심): 문화서비스부문



분야	한국	중국	비교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스포츠 서비스	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뮤지컬, 연극, 라이브밴드, 오페라 등 개인/그룹에 의해 제공되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양허(DDA 2 nd) -1) X, 2), 3) O, 4) △	- 1), 2), 4) △, 3) O - 1), 2) 외국광고 공급권리를 보유한 중국 등록광고 대행업체를 통해 광고해야 함	
	B. 뉴스제공업	양허 제외	양허 제외	
	C. 도서관 박물관 및 기타 문화적 서비스	양허 제외	양허 제외	
	D. 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양허 제외	-골프 제외, 스포츠 및 기타 서비스 양허(DDA 2 nd) -1), 2) X, 3), 4) △ -3) 제한사항: ENT, 완전 외국인 보유 허용	
	E. 기타	양허 제외	양허 제외	

O: 제한 없음(none), △: 제한을 두어 부분 양허, X: 양허하지 않음(unbound)

한·중 WTO가입 양허안 비교(MA중심): 관광서비스부문



분야	한국	중국	비교
9.A. 호텔 및 레스토랑(CPC641~643)	-1) X, 2), 3) O, 4) △ -(단, 철도, 항공운송 관련 부대시설(CPC6431)제외)	-1), 2), 3) O, 4) △	
9.B. 여행알선대행업(CPC7471)	-1), 2), 3) O, 4) △ ※ 단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지 사무실 개설을 의무화 함	-1), 2) O, 3), 4) △ -3) 제한사항: 연간 대 세계 매출액 4천만 달러 이상, 등록출자액 25백만 위안, 단 2011년 현재 지리적 제한 및 외국인 자본보유 제한은 철폐 ※업무범위에 있어 중국인의 해외여행 업무는 불허	 중국은 3)에 있어 다소 부당한 제한사항을 두고 있음
9.C. 여행안내업(CPC7472)	-1), 2), 3) O, 4) △ ※ 3)의 경우 WTO여행사만이 여행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었으나, DDA 2 nd 에서는 제한없이 양허됨 ※ 여행안내서비스의 경우 국내법에 의거 가이드 자격증이 요구됨	양허 제외 ※ 여행안내서비스에서 가이드 자격증 응시자격에 국적요건(중국인)을 두고 있음	
9.D. 기타	양허 제외	양허 제외	

O: 제한 없음(none), △: 제한을 두어 부분 양허, X: 양허하지 않음(unbound)

중국의 기체결 RTA 비교: 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부문	분야	중-칠레	중-아세안	중-뉴질랜드	중-싱가포르	중-파키스탄	중-페루	중-코스타리카
문화 산업 부문	2.D.a. 중 일부 -비디오 배급 (유통) 서비스(오락소프트웨어 포함, 비디오렌탈 서비스)	DDA	DDA	DDA	DDA	DDA	DDA	DDA
	2.D.b. 중 일부 -영화관 서비스	DDA	DDA	DDA	DDA	DDA	DDA	DDA
	2.D.e. 중 일부 -음반 배급(유통) 서비스	DDA	DDA	DDA	DDA	DDA	DDA	DDA
	1.F.a. 광고서비스	DDA	DDA	DDA	DDA	DDA	DDA	DDA
	1.F.p. 사진서비스	DDA	DDA	DDA	DDA	DDA	DDA	DDA
	1.F.r. 인쇄 및 출판 *DDA수정 양허안에 포장물의 인쇄 양허(출판제외)	WTO(미양허)	DDA (인쇄분야만 양허)	WTO(미양허)	DDA (인쇄분야만 양허)	DDA (인쇄분야만 양허)	DDA (인쇄분야만 양허)	WTO(미양허)
	1.F.s. 컨벤션서비스	DDA	DDA	DDA	DDA	DDA	DDA	DDA
	1.F.t. 기타사업서비스의 기타 중 흥번역서비스	DDA	DDA	DDA	DDA	DDA	DDA	DDA
	10.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10.B. 뉴스제공업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10.C. 도서관, 박물관 및 기타 문화적 서비스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10.D. 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중 일부 -골프 제외 스포츠 및 기타 서비스	DDA+ 추가 양허 대상 동일 1),2),3) O (ENT없음)	WTO(미양허)	DDA 1),2) X, 3) △ (ENT요건)	DDA 1),2) X, 3) △ (ENT요건)	DDA+ 추가 양허 대상 동일 1),2),3) O (ENT없음)	DDA+ 추가 양허 대상 동일 1),2),3) O (ENT없음)	DDA+ 추가 양허 대상 동일 1),2),3) O (ENT없음)
	10.E. 기타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중국의 기체결 RTA 비교: 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부문	분야	중-칠레	중-아세안	중-뉴질랜드	중-싱가포르	중-파키스탄	중-페루	중-코스타리카
관광 산업 부문	9.A. 호텔(아파트 건물포함) 및 레스토랑	DDA	DDA	DDA	DDA	DDA	DDA	DDA
	9.B. 여행알선대행업	DDA	DDA	DDA	DDA	DDA+ MA 3)에 제한을 두지 않음. 다만 NT3)의 내용은 동일	DDA+ MA 3)에 제한을 두지 않음. 다만 NT3)의 내용은 동일	DDA+ MA 3)에 제한을 두지 않음. 다만 NT3)의 내용은 동일
	9.C. 여행안내업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9.D. 기타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WTO(미양허)

- "WTO"는 중국의 WTO가입 양허표(2001)를, "DDA"는 중국이 2005년에 WTO에 제출한 수정양허안을 의미함
- WTO가입 양허표의 양허 수준이 DDA 수정안과 동일한 경우 DDA로 명시함
- DDA+는 DDA수준보다 추가적으로 양허한 것을 의미함

중국의 기체결 FTA 비교: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RTA

부문	분야	중-홍콩	중-대만
문화 산업 부문	2.D.a. 중 일부 -비디오 배급 (유통)서비스(오락소프트웨어 포함, 비디오렌탈 서비스)	-영화관 서비스와 음반 배급 유통서비스는 DDA와 동일 -중-홍콩 CEPA에서는 수입영화(중국어 영화) 및 공동제작, TV드라마, 케이블 TV 네트워크 등을 추가 개방함 -중국어 영화: 홍콩에서 제작된 중국어 영화는 수입쿼터를 비적용, 단 홍콩 영화사가 영화저작권의 75%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영화의 전체 주요 인력의 50% 이상을 구성해야 함	-영화관 서비스와 음반 배급 유통서비스는 DDA와 동일 -중국어 영화수입에 대해 다음의 추가적인 양허를 함 -대만 관련법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영화의 저작권을 50% 이상 소유한 영화회사에 의해 만들어진 중국어로 된 영화는 중국의 관련 당국의 조사와 승인 후, 쿼터적용을 받지 않고 수입될 수 있음
	2.D.b. 중 일부 -영화관 서비스	-공동제작 영화: 홍콩 출신 주요 창작인력 비율에 제한은 없으나, 중국 출신 주연급 배우가 최소 1/3이상이어야 함. 스토리가 중국 배경일 필요는 없으나, 줄거리나 주요 인물은 중국과 관련되어야 하고, 공동제작 영화는 중국 국경 외에서 프로세싱 할 수 있음	해당 영화에 총주요 인력의 50% 이상은 대만인이어야 함
	2.D.e. 중 일부 -음반 배급(유통) 서비스	-공동제작TV드라마: 홍콩과 중국 합작의 TV프로그램은 중국 제작 TV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으로 방송, 유통을 허용함. 시놉시스 제한도 완화함 -케이블TV네트워크: 홍콩 케이블TV네트워크 사업자는 시범지역인 광저우에 전문기술 관련 서비스 제공 허용	
	1.F.a. 광고서비스	- CEPA I 에서 WTO(=DDA)수준으로 양허	DDA
	1.F.p. 사진서비스	- CEPA I 에서 WTO(=DDA)수준으로 양허	DDA
	1.F.r. 인쇄 및 출판 *DDA수정 양허안에 포함물의 인쇄 양허(출판 제외)	-DDA+ -포장물의 인쇄 외에도 출판물 및 기타 인쇄물의 인쇄, Pre-press서비스 양허(단, 출판물 자체는 영허 제외)	WTO
	1.F.s. 컨벤션서비스	-CEPA I 에서 WTO수준으로 양허 -이후 CEPAPI까지 양허내용을 수정하였으나, DDA+내용은 없음	DDA
문화 산업 부문	1.F.t. 기타사업서비스의 기타 중 통번역서비스	- CEPA V 에서 WTO수준으로 양허	DDA
	1.F.t.기타사업서비스의 기타 중 스페셜 디자인 서비스	-DDA+(WTO, DDA에서 미양허 분야) -1),2),3) O(주식 합작 및 계약합작 그리고 완전 외국인 소유기업 설립 허용)	-DDA+(WTO, DDA에서 미양허 분야) -1),2),3) O(주식 합작 및 계약합작 그리고 완전 외국인 소유기업 설립 허용)
	10.A. 엔터테인먼트서비스	-DDA+(WTO, DDA에서 미양허 분야) -CEPAII에서 문화서비스 양허 -합영, 합자, 독자형태로 중국 내 공연장 설립허용 -홍콩 공연예술자의 중국 내 지정설립 허용 -중국에 인터넷 문화사업 단위의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사업장 설립 허용(중국측 다수지분 요건) -합영, 합자, 독자형태로 중국에 아트갤러리, 아트숍, 예술전시 단위 설립 허용 -홍콩 서비스공급자에게 공연예술중개업 독자기업 설립 허용	WTO(미양허)

중국의 기체결 RTA 비교: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RTA

부문	분야	중-홍콩	중-대만
문화 산업 부문	10.B. 뉴스제공업	WTO(미양허)	WTO(미양허)
	10.C. 도서관, 박물관 및 기타 문화적 서비스	WTO(미양허)	WTO(미양허)
	10.D. 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중 일부 -골프 제외 스포츠 및 기타 서비스	- CEPA IV에서 DDA수준으로 양허	WTO
관광업 부문	10.E. 기타	WTO(미양허)	WTO(미양허)
	9.A. 호텔(아파트건물 포함) 및 레스토랑	DDA	DDA
	9.B. 여행알선대행업	-DDA+ -여행알선대행업을 하기 위한 각종 요건(연간 매출액 등) DDA보다 더 낮은 수준 -영업범위 제한 완화(중국민의 홍콩, 마카오 여행상품 취급 가능)	DDA
	9.C. 여행안내업	-DDA+ -중국 시민권을 가진 홍콩 영주권자에게 중국 관광가이드 자격 시험 응시 기회 부여	WTO(미양허)
9.D. 기타	WTO(미양허)	WTO(미양허)	



Chapter 03

한·중 FTA 협상 문화·관광분야 예상쟁점

한·중 FTA 문화·관광부문 예상쟁점

주요 쟁점항목 전망

- 양국의 WTO/DDA 양허안 중 상대국의 개방 미흡 분야
- WTO 양허안 중 미이행 항목
- 내·외국업체 혹은 국가간 차별 등 불공정거래 분야
- FTA 실효 제고를 위한 상대국 법규정 및 관습적 운영행태 개선 필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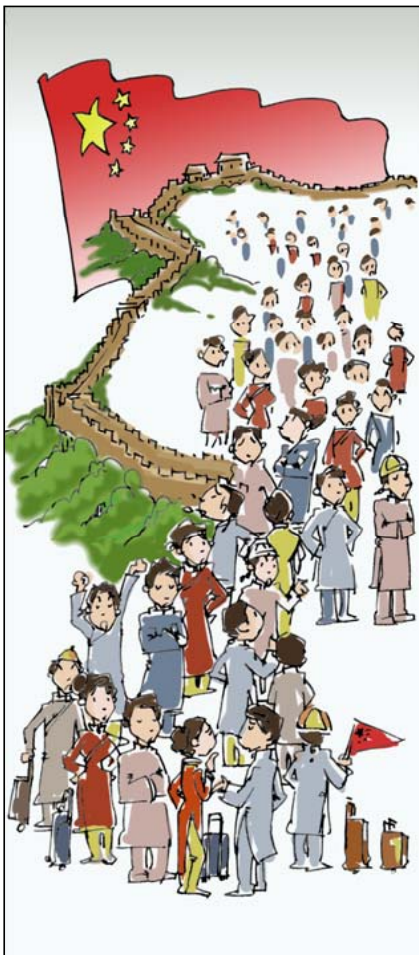
법령·규제 및
관습적 운영행태

FTA실의 및
국가간 형평성



온라인게임서비스부문 차별

- 중국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통해 게임제작업을 장려산업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중국 내 유통서비스**는 금지시켜 **외국자본의 진입을 차단**
 - 한국 온라인게임업체들은 중국 게임업체와의 퍼블리싱 계약에 의한 비즈니스만 가능하고 직접투자는 불가능한 상황



방송편성 쿼터

- 한국과 중국 공히 방송 편성 쿼터가 존재하나, **중국이 더 제한적임**
- 한국의 경우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해야 함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2항)
 - 영화는 당해 채널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20/100 이상 40/100이하
 - 애니메이션은 30/100 이상 50/100 이하
 - 대중음악은 50/100 이상 80/100 이하
- 중국은 매일 TV채널에서 방영되는 해외영상물과 당일 방송되는 영상물, 기타 해외TV프로그램 방송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광전중국 미허가 해외영상물은 방영 불가
 - 편성규제(외국 프로그램 편성비율) 드라마/영화 25% 이하, 애니메이션 30% 이하, 교육/과학/문화 등 15% 이하
 - 골드타임에 해외영상물 방영불가: 드라마/영화: 19:00~22:00, 애니메이션: 17:00~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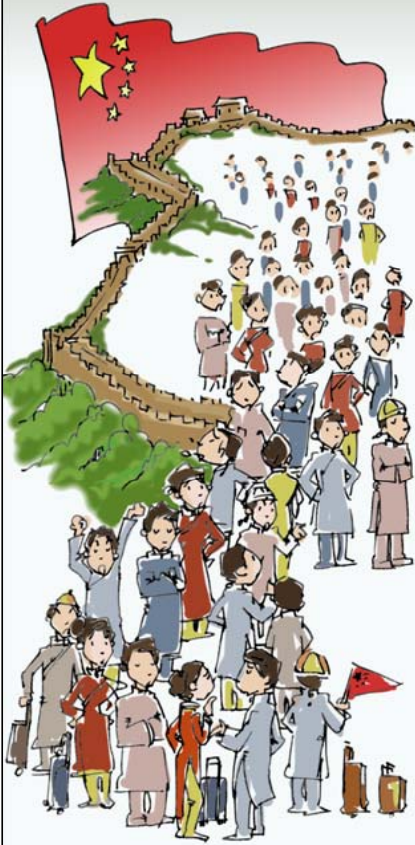
영화 수입쿼터

- 중국은 극장상영용 영화 중 수입영화 수의 상한은 연간 50편, 그 중 미국영화의 상한은 20편으로 제한
- 중국에서 외국영화 수입은 2개 사업자만 가능하며 외국 자본의 참여를 금지

중국-시청각 서비스 WTO 피소 사례

- 미국은 중국의 시청각 수입 및 유통 관련 법제도가 외국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
 - 중국 정부는 **중국 국영기업**에게만 **시청각 상품 수입권한을 부여**하여, 중국 내 일반기업 및 외국기업의 수입권을 침해
 - 외상투자기업은 수입 출판물의 중국 내 유통, 전자출판의 도소매가 금지
 - **수입된 출판물**은 중국 정부가 승인한 구독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유통** 가능
- 중국정부의 이행상황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출판관리조례, 시청각제품수입관리방법의 개정을 통해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조항 완화
 - 중외합작 시청각제품 유통기업의 시청각제품 수입업무중사 금지 조항 폐지
 - **외자기업의 영화 및 출판물 수입업무 참여금지 조항**은 WTO 위반 평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





중국의 외자 여행알선대행업 상업적 주재 요건의 불명확성

- 중국은 WTO가입 당시 외국인 투자 여행알선대행업의 상업적 주재 요건을 명시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는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만 달러 이상
 - 본국의 여행업 협회 회원
 - **양호한 국제적 신용 및 선진적인 여행사 관리 경험 보유**
- 외자유행사의 설립지역이 중국 국무원이 비준한 국가급 관광지역, 북경, 상해, 광주, 선전, 서안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은 2005년 2월에 폐지
- 최소 납임금 400만 위안의 규정은 250만 위안으로 변경

외자 여행알선대행업에 대한 차별

- 중국의 여행알선대행업은 선진국의 여행사와 비교하여 경영관리 및 여행상품개발 능력이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중국 여행사를 보호**하며 경영품질 개선을 촉진
 - <여행사관리조례(1996.10.15)>, <중외 합자여행사 시행판법(1998.10.29)>, <여행사국내관광서비스품질요구(1997.7.1)>에 근거
- **외자 여행사에 대해서는 중국인의 해외여행, 홍콩, 마카오, 대만 여행 업무를 금지**함. 단 중국 정부가 맺은 자유무역 협정과 중국·홍콩·마카오간 경제무역협정에 따라 예외가 발생 가능함을 명시
 - 외자 여행사에 대해 중국인의 해외여행 업무를 개방한다는 **WTO 양허안도 미이행**
 - 중국 국영기업과 합자상태에 있는 독일 TUI, 일본 JTB, 미국 AMEX 여행사에 대해서는 허용
- **하나의 법규정에 대해 공산당, 변호사, 세무사의 해석이 모두 상이**



한국에서는 프랜차이즈 여행사 활성화

7 제주도 서귀포

2 서울 송파

4 경기 남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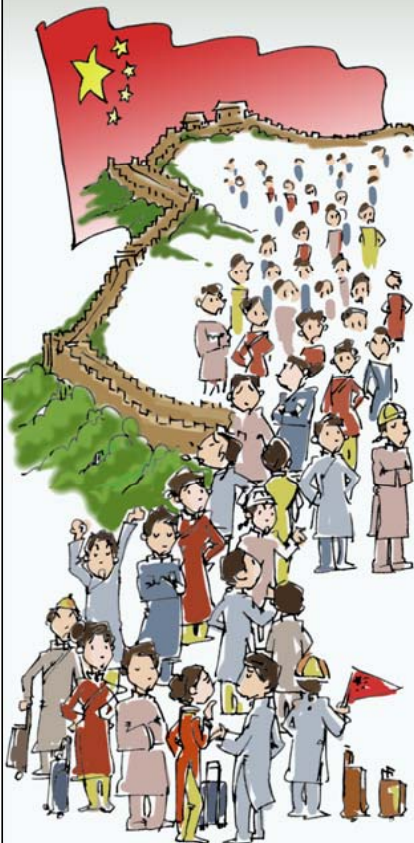
6 광주 금남로

3 부산 대연

5 충남 공주



- 본사
- 각 대리점 및 판매점은 본사와 무관한 **독립적 자본으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 하나투어 입간판을 설치하고 있지만 개별여행사 별로 경영
 - 본사는 저비용으로 고객모집이 용이하며, 프랜차이즈업체는 여행상품 조달이 용이



중국은 프랜차이즈 여행사 불허

- 중국에서는 여행알선대행업 **본사가 직영하는 지점만 인정**
 - 본사와 지점의 자본이 분리된 경우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
- 중국 여행알선대행업에 비해 직영점 개설에 시간적 및 금전적 한계가 존재하는 **한국 국적 여행사**를 비롯한 외자 여행사는 여행상품 판로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

중국은 여행사의 (옥외)광고를 금지

- 중국에서는 여행사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중국시장에 신규 진출한 **외자유행사의 중국 내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가 용이하지 않음**
 - 여행사 상호를 부착한 관광버스가 중국 시내 운행도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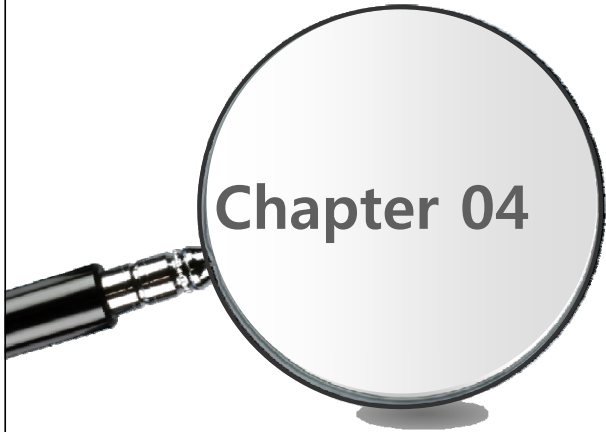
- 37 -



여행상품 판매방식 및 결제시스템의 차이

- 한국에서는 여행사가 항공, 숙박, 식사로 이루어진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성하여 판매하고 중간마진을 수입으로 취득하는 방식이며, 온라인 결제 활성화
- 중국에서는 여행사 온라인 결제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예약금을 여행사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고수.
 - 중국인 관광객은 호텔 숙박비용도 호텔에 직접 지불하는 것이 일반화**여행사의 수익창출이 용이하지 않은 시장구조**





한·중 FTA 문화·관광분야 대응방안 및 기대효과

한·중국 FTA 관련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대응방안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우나,
한국의 실익이
높은 분야

- 온라인게임 분야
 - 운영서비스 및 외국산 게임물에 대한 차별조치 폐지
- 여행알선대행업 분야
 - 외자유행사에 대한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 허용

한·중국 FTA 관련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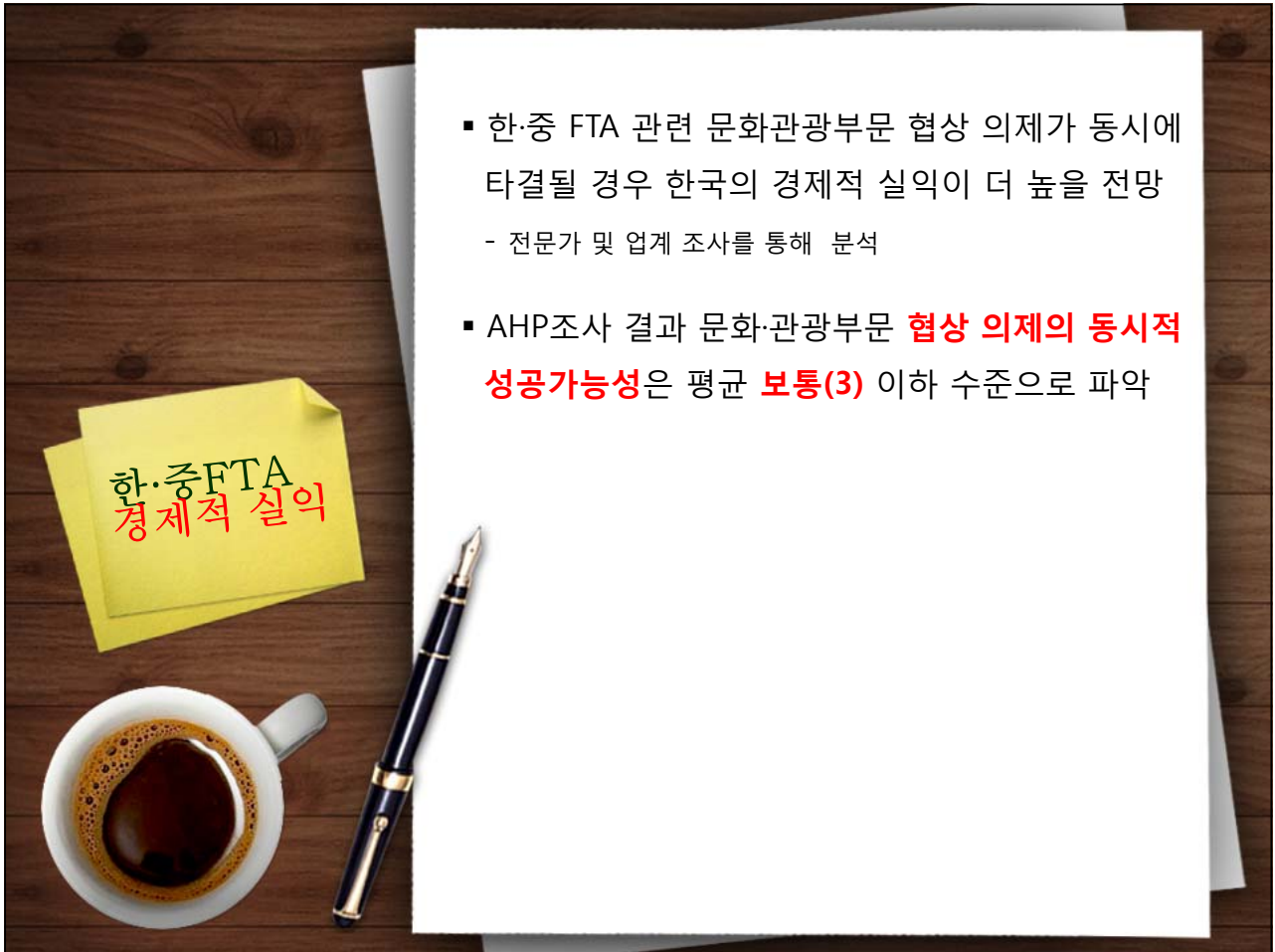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우나
중국의 실익이
높으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

-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인력이동
 - 중국은 다자 및 양자협상 차원에서 인력이동 양허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중 FTA 관련 산관학 연구 당시에도 적극적 관심 표명
- 골프 제외 스포츠 및 기타서비스분야 개방
 - 한국의 미양허 부문이므로 개방요구 가능성 존재

한·중국 FTA 관련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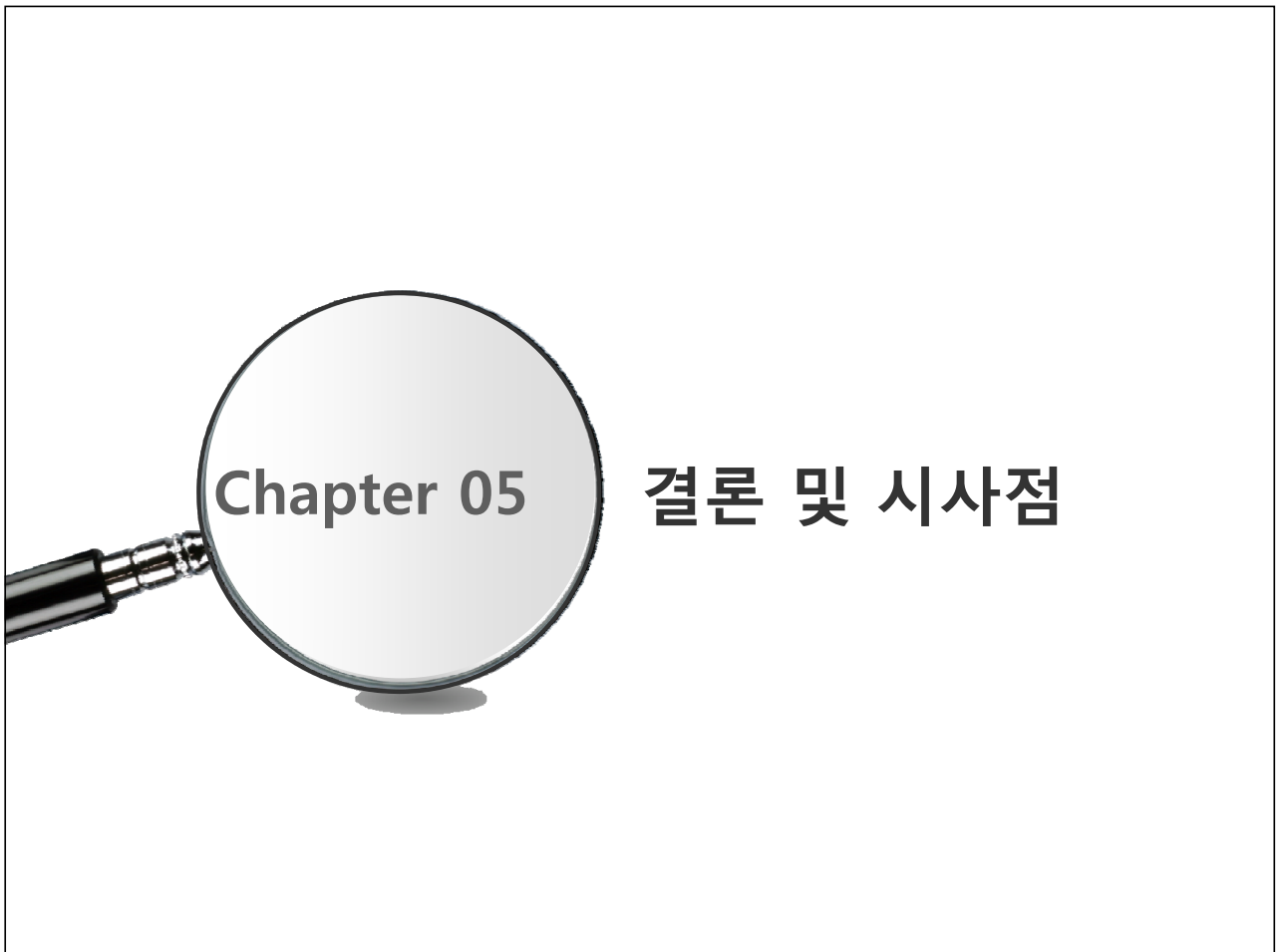
실익이 존재하며
실제협상 논의가
가능한 분야

- 한국은 중국시장 진출, 중국은 기술습득에 관심
 - 중국은 시청각물(특히 영화) 공동제작 방식과 인재육성에 대한 선진기술 획득에 관심
 - 한국 및 중국은 방송편성 및 스크린쿼터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동제작물은 적용받지 않음



한·중FTA
경제적 실익

- 한·중 FTA 관련 문화관광부문 협상 의제가 동시에 타결될 경우 한국의 경제적 실익이 더 높을 전망
 - 전문가 및 업계 조사를 통해 분석
- AHP조사 결과 문화·관광부문 **협상 의제의 동시적 성공가능성**은 평균 **보통(3)** 이하 수준으로 파악



Chapter 05

결론 및 시사점

- 중국의 문화·관광서비스 분야는 중국정부의 적극적 보호 및 지원정책으로 급성장 중이며 중국 국민의 소득증대로 인해 문화·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신규 시장이므로, 국내 업체의 진출의사가 높은 상황임
- 국적 기업의 중국 진출 시 높은 실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국 사회의 폐쇄성과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중국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이 가능한 방향으로 접근하며, 시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한국이 실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함
 - 중국 정부의 외국기업 간 차별은 형평성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해야 함



- 한편, 관광부문은 관광서비스분야 협상에 따른 직접적 효과 외에 기타 분야로부터의 간접적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양국간 국제교역이 증가하는 경우 상용목적의 방문객이 증가
 - 국내 관광업체의 물자조달 비용 하락에 의한 가격경쟁력 상승
 - 정보통신, 금융결제, 항공 등의 협상결과에 따라 관광산업 운영개선 및 여행상품 다양성 확대





감사합니다



교육서비스 분야 한중 FTA 쟁점과 대응방안

2012. 1.

박재윤(한국교육개발원)

· 이 자료는 박재윤, 최정운, 박영진, 이석희, 한지호 등의 '한중 FTA 대응을 위한 교육 서비스 분야 방안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11)의 내용을 발췌, 보완한 것임

목 차

- I. 배경
- II. 중국의 교육서비스 시장 현황 및 전망
- III. 교육서비스 부문 대응방안



I. 배경

배경

- 교육서비스 부문에서 한국과 중국은 서로 주요 교역대상국임
- 개방정책 아래에서 중국의 중외 교육협력 교역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대할 전망
- 한국과 중국은 교육서비스 부문의 교역을 증대하고 상호 호혜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중국의 교육현황과 개방정책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

II. 중국의 교육서비스 부문 시장현황 및 전망

j1

II. 중국의 교육서비스 부문 시장현황 및 전망

중국: 국가발전의 제1과제로 교육개혁 추진

단계적 교육관계 법, 제도 제정 및 보완

학위조례
의무교육법

교사법
미성년인 보호법

교육법
교사자격조례 등

각 법제는 교육
개혁의 근거

시기 사안별 교육개혁
▶ 사회발전과 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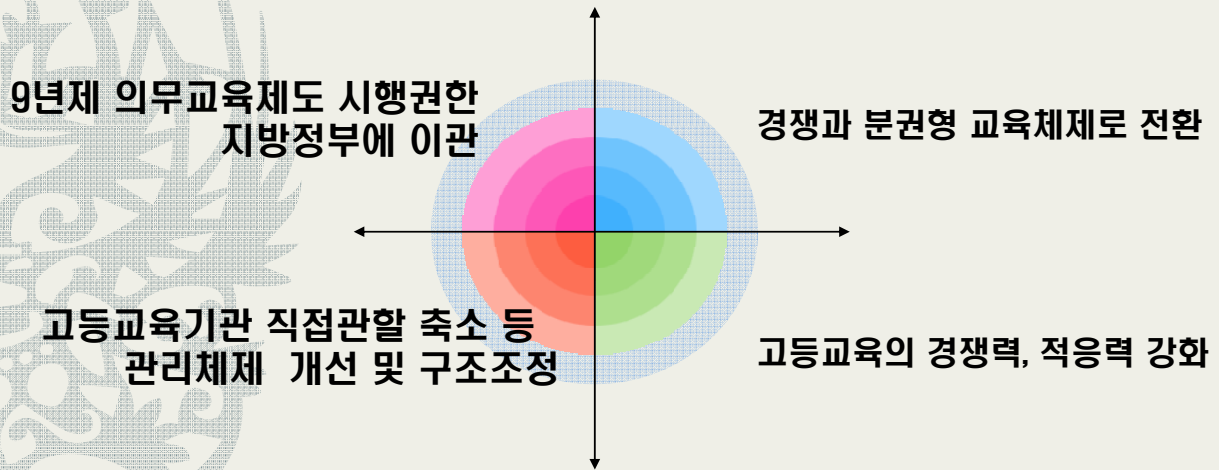
중앙정부 중심의
법, 제도 개혁

강력한 지도력 바탕
일괄 조치 가능

시사점 : 중국 중앙정부와 협정 중요

II. 중국의 교육서비스 부문 시장현황 및 전망

1978년 이후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변화



시사점 : 우리 교육체제의 경쟁력과 적응력 강화

II. 중국의 교육서비스 부문 시장현황 및 전망



시사점 : 우리 교육체제의 개방화, 다원화 가속

II. 중국의 교육서비스 부문 시장현황 및 전망

공립에서 사립으로 전환 방식

경영도급형 전환시험 방식: 학교운영을 민간위탁

명문사립화 : 공립학교들 중 브랜드가치를 활용, 사립화

우수공립학교의 민영체제 도입

공립학교의 재산권 양도: 공립학교를 매도하여 사립학교화

학교 안의 학교, 학교 안의 반(班): 위화감 조성이유로 금지

시사점 : 우리 공립학교의 경쟁력 강화

II. 중국의 교육서비스 부문 시장현황 및 전망

중국 교육서비스 시장 정책의 특징

내용

정책의 추상성
일관성 미흡

체계

합리적 정책
구조체계 미흡

실효

학교 현장에
적합한
실효성있는
방안 미흡

조화

기존 정책과
신규정책 간의
조화 미흡

시사점 : 중국측 교육서비스 시장 정책의 한계를 고려한 협상

II. 중국의 교육서비스 부문 시장현황 및 전망

○ 교육서비스 시장 관련 법제화

- 해외합작 학교운영 조례
- 해외합작 학교운영 조례 실시방법
- 고등학교 해외설립 임시관리방법
- 자비출국 유학생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 외국국적자녀 학교관리 방법

시사점 : '합작' 등 중국 교육서비스 시장 법제 고려 및 대응입법 검토

II. 중국의 교육서비스 부문 시장현황 및 전망

법령에 근거한 주요 정책 현황

해외 유학생
파견 강화

중국 방문
외국인유학생
업무 확대

해외 협력학교
운영 및 확대

대외한어
교수학습
강조

해외교육
관리감독
강화

II. 중국의 교육서비스 부문 시장현황 및 전망

1996-2008년 출국유학생 및 중국방문 유학생 현황 [단위 : 년, 만명]

분류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출국 유학생	2.09	2.24	1.76	2.37	3.90	8.40	12.50	11.73	11.40	11.85	13.40	14.45	17.98
중국방문 유학생	4.10	4.30	4.30	4.47	5.21	6.19	8.58	7.77	11.08	14.11	16.27	19.55	22.34

중국 내 외국인 유학생 증가 추이 : 1978년-2008년 [단위: 명, 개국]

시기	1978-2003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중국방문 유학생	620,000	78,000	110,000	140,000	162,695	195,503	223,500
외국유학생 국적수	-	175	180	184	184	188	189

II. 중국의 교육서비스 부문 시장현황 및 전망

중국의 해외 유학생 증가

2008년 20만명 돌파
전년대비 14.32% 증가

현재 189개국
22만3천여 유학생
592개 교육기관 재학 중

유학생 분포
1위 한국(66,806명)
2위 미국, 3위 일본

1978년의 180배
1988년의 38배
1998년의 5배

시사점 : 중국 유학생 유치 및 외국유학생 유치 노력 강화
(2025년 중국학생 해외유학 약 290만명 전망)

II. 중국의 교육서비스 부문 시장현황 및 전망

합작 학교 추진(학교 유입과 유출)



II. 중국의 교육서비스 부문 시장현황 및 전망

해외합작 학교운영기관 프로젝트 1,099개

◆ 진행 중인
합작협약: 154개

◆ 정부간 실시중인
합작 프로젝트:
77개

해외
합작

세계 34개 국가

- 상호 학력 인정
- 학위과정 협약
- 협력 교육과정

시사점: 중국의 다양한 형태의 합작제도에 대응한
유연한 협력체제 구축 : 교육선진화와 교육수출

Ⅲ. 중국의 교육서비스 부문 시장개방 추이

Ⅲ. 중국의 교육서비스 부문 시장개방 추이

시장개방 추이 및 특징

내수시장 확대에 따른
교육서비스시장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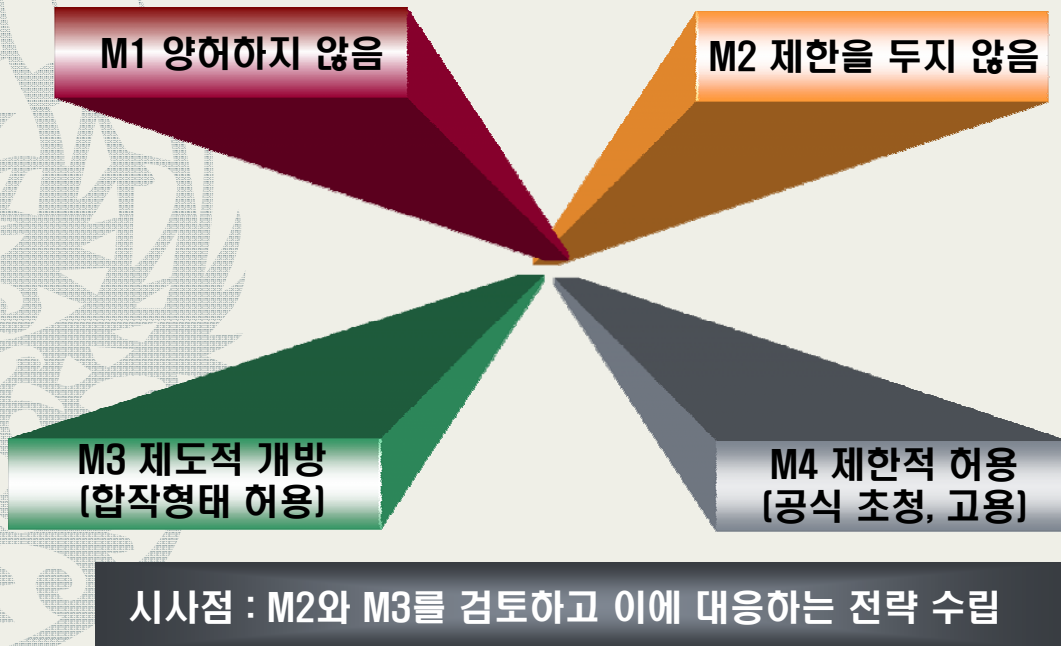


유아교육, 입시교육
어학교육 수요 증대

시사점 : '수요증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합작 추진'

Ⅲ. 중국의 교육서비스 부문 시장개방 추이

중국의 WTO 양허안



Ⅲ. 중국의 교육서비스 부문 시장개방 추이

중국의 WTO 양허안과 우리나라 비교

- M2와 M3의 일부 교육서비스 형태에
중국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
- 초.중등교육: 한국은 개방하지 않으나
중국은 제한을 두되 개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음
- 중국은 초.중등, 고등, 성인, 기타교육 부문에서
상당히 개방한 선진국 수준의 양허안 제시

Ⅲ. 중국의 교육서비스 부문 시장개방 추이

Mode 3 차이점

중국

- 시장접근을 허용
- 제한요건 제시 (중외합작 형태만 허용)

한국

고등교육, 학위과정 제한 (영리법인, 보건의료교원양성, 수도권 내 설립 등)

중국vs한국 Mode3

- 거시적: 중국이 한국보다 개방수준이 높아 보임
- 미시적: 실제 중국에 진입할 때 지방정부의 제한 예상

시사점: 교육기관, 프로그램 교역 형태의 다양화 전략 추진

Ⅳ. 대응방안

한중 FTA 대비 교육체제 개선

- 한중 교육서비스 교역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의 경쟁력과 적응력 제고
- 중국의 다양한 중외교육합작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교육이 교역을 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학교설립, 학생편입학제도 등)
- 중국의 해외 유학생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여 중국과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
- 유아교육 등 중국측 교육수요에 대응

FTA 협상 대응 방안

- 중국 중앙정부의 교육 서비스 부문 교역정책을 중점 고려하여 협상하되 지역, 지방 실정을 고려
- 중국의 교육서비스 교역 양허 중 초중등학교 학생의 해외 유학에 대한 제한없는 허용 정책에 대한 검토와 대응
- 중국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교역방법인 다양한 합작형태의 교역에 대응하는 우리의 교역방식의 다양화

한중 FTA 투자 이슈: 쟁점 및 대응방안

2012. 1. 31

고 준 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목차

- I. 한중 양국간 투자 추이 및 현황
- II. 중국에서의 투자관련 장벽 및 애로 현황
- III. 중국의 기타결 FTA 투자규정 현황 및 비교
평가
- IV. 한중FTA 투자분야 협상시 예상 쟁점 및 요
구사항(한국측 입장)
- V. 한중FTA 투자분야 협상시 예상 쟁점 및 요
구사항(중국측 입장)
- VI. 한중FTA 투자분야 협상목표 수준별 시나리
오에 기한 대응 필요

2

I. 한중 양국간 투자 추이 및 현황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의 2001년 WTO가입에 따른 기대감 증대와 투자환경 개선 등에 힘입어 2002년부터 급증, 2007년(55억불) 최대 투자액을 기록
- 세계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38억불) 대중 투자는 하향 추세로 반전된 후 2010년(31억불) 다시 회복세

3

I. 한중 양국간 투자 추이 및 현황

2. 한국의 대중국 및 성별 투자 현황

- 2011년 3월말 기준 한국의 대중국 투자 누적 금액은 323억불이며, 현지 신규 법인수는 21,214개에 달함.
- 대중 성별 투자 상위 10위의 투자 금액 및 신규법인 수를 살펴보면, 1위 산둥성(75억불, 7,238개), 2위 강소성(71억불, 1,869개), 3위 북경시(38억불, 1,703개), 4위 요녕성(28억불, 2,825개), 5위 천진시(27억불, 1,803개), 6위 상해시(20억불, 1,629개), 7위 광둥성(14억불, 767개), 8위 절강성(12억불, 718개), 9위 길림성(7억불, 1,062개), 10위 하북성(4억불, 421개) 순임.

4

I. 한중 양국간 투자 추이 및 현황

3. 중국의 대한 투자 비중 및 추이

-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비중을 보면, 중국의 전체 해외투자 대상국중 대략 14~15위 수준으로, 중국 대 세계 해외직접투자 총액중 1%에 크게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
- 중국의 대 한국 직접투자의 연도별 금액과 전체에서 비중을 살펴보면, 2005년 5.9억달러(4.8%), 2006년 0.3억달러(0.2%), 2007년 0.6억 달러(0.2%), 2008년 1억달러(0.2%), 2009년 2.7억달러(0.5%)로 상당히 미미
- 이에 비해 2009년 한국의 대 중국투자 규모는 27억 달러로서 6위에 해당

5

II. 중국에서의 투자관련 장벽 및 애로 현황

- 중국에서의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투자제도 관련 장벽 및 애로 현황에 대해 중국 소재 법률사무소, 일본무역투자비즈니스협회의, 현지 진출 기업인 및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파악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참고로 이들 중국의 투자장벽 및 애로 현황은 향후 한중FTA 투자분야 협상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6

II. 중국에서의 투자관련 장벽 및 애로 현황

1. 투자의 대우 및 보호 관련

○ 내국민대우 부여 요구

- 외투기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집행
- 설립전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

○ 이행요건의 부과 금지 요구

- 일정 요건 정보보안시스템 구매시 중국제품 구매 의무 부과
- 인력 채용시 FESCO, CIIC 등 중국 인력공급 회사 활용 의무

7

II. 중국에서의 투자관련 장벽 및 애로 현황

2. 투자의 진입 단계에서의 장벽 및 애로

○ 외자 진입 규제

- 외국투자가이드라인에 의한 금지 및 제한: 가령, 중국법규상 '제한류'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아, 외상투자기업의 진출 불가
- 서비스분야에의 외자 진출 제한 및 규제 과다
- 외자에 대한 투자성 회사의 경영 범위 규제
- 투자형태 관련 지점(branch) 형태의 진출 불허

8

II. 중국에서의 투자관련 장벽 및 애로 현황

○ 외자 진입 장애

- 외국투자자가 기술로 현물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요건을 까다롭게 요구
- 토지사용권 현물 출자시 외국투자자 불이익 직면 가능성
- 외상투자기업의 중국내 재투자 제한
- 법인 설립시 사전허가증, 설비 투자 요구

○ 투자 진출 지방(성) 정부의 약속 및 보증의 효력 문제

- 지방정부의 약속이 추후 중국법률법규 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 빈발

9

II. 중국에서의 투자관련 장벽 및 애로 현황

3. 중국에서의 투자 운영 단계에서의 장벽 및 애로

- 본국 법인의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시 중국내 투자자 명의 변경 까다로움
- 기업결합신고시 심사기간이 길고, 요구 서류 번잡
-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국내증시 상장 어려움
- 외상투자기업의 감자시 어려움
- 인민폐 환전시 어려움
- 현지 진출 기업인의 거류증 발급상 애로

10

II. 중국에서의 투자관련 장벽 및 애로 현황

4.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철수 단계에서의 장벽 및 애로
- 외국투자자의 지분 양도시 불합리한 절차 존재
 - 외자법인의 청산시 행정절차 까다롭고, 번잡
 - 청산시 토지사용권 처분 제약 및 청산대금 송금 규제

5. 지방 정부의 보호주의

- 중국 지방 정부의 경우 당해 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외자기업간의 합병을 불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거나 조세상 불이익 부과 사례
-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지점 설립이 아닌 현지법인 설립을 요구

11

II. 중국에서의 투자관련 장벽 및 애로 현황

6. 투명성 결여

- 관련 법규 질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 절차 전무
- 중국 투자당국의 법집행 투명성 결여

7. 부패관행

- 투자당국의 나쁜 관행 만연: 흥빠오 및 관시 등

12

III. 중국의 기타결 FTA 투자규정 현황 및 비교 평가

1. 중국의 기타결 FTA 투자규정 현황

- 중국이 체결한 FTA중 별도의 실체적 투자 규정이나 협정을 포함한 경우는 중-페루(2008), 중-뉴질랜드(2008) FTA 및 중-ASEAN FTA 투자협정(2009) 등 3건 임.
- 참고로 중-파키스탄(2006), 중-칠레 FTA(2006)에는 투자규정이 없고, 중-싱가포르 FTA(2008) 투자규정은 중-ASEAN FTA 투자협정을 준용, 중-코스타리카(2010) FTA는 중-코스타리카간 양자투자협정(2007)을 준용

2. 중국의 기타결 FTA 투자규정간 비교

규율대상	중-페루 (2008)	중-뉴질랜드 (2008)	중-ASEAN (2009)
내국민대우(설립전 단계 NT 포함)	o(x)	o(x)	o(x)
지방정부에 협정 준수 의무 명시	x	x	x
최혜국대우(설립 전단계 MFN 포함)	o(o)	o(o)	o(o)
공정 및 공평대우	o	o	o
이행요건 부과 금지	x	o(WTO/TRIMs준용)	x
비합치조치 (ratchet 규정 포함)	o(NT만 적용) (o)	o(NT만 적용) (o)	o(NT,MFN만 적용) (x)
송금 보장	o	o	o
고위경영진 국적요건 부과 금지	x	x	x
투자관련 인력의 일시적 입국, 체류 및 근로 허가	△(부속서 7)	O(기술인력, working holiday)	x
수용·보상(간접수용 판단기준 등 구체 명시)	o(o: 부속서 8)	o(o:부속서 13)	O(x)
대위변제	o	o	o
투명성(접촉처 포함)	x	o(o)	o(o)
투자자유화	x	x	x
투자협력(투자위원회 등)	△	o(o)	o(원스톱 투자센터)
기타	조세조치	-	국제수지 세이프가드

3. 중-뉴질랜드 FTA 및 한-미 FTA 투자규정과 한중 개정BIT(2007)간의 비교 평가

○ 비교 평가 대상 협정의 의의

- 중-뉴질랜드 FTA 투자규정은 중국의 기타결 FTA 중 투자(자) 보호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
- 한미 FTA 투자규정은 한국의 기타결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와 투자자유화(개방)를 포함한 것으로 평가
- 2007년 한중 개정 양자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BIT)은 1992년 한중BIT를 개정, 양국 투자(자) 보호를 보다 강화. 이는 향후 한중FTA 투자분야 협상시 출발점

3. 중-뉴질랜드 및 한-미 FTA 투자규정과 한중 개정BIT(2007)간의 비교 평가

규율대상	한-중BIT (2007)	중-뉴질랜드FTA (2008)	한미FTA (2007)
내국민대우(설립전 단계 NT 포함)	o(x)	o(x)	o(o)
지방정부에 협정 준수 의무 명시	O(10.4조)	x	o
최혜국대우(설립 전단계 MFN 포함)	o(o)	o(o)	o(o)
공정 및 공평대우	o	o	o
이행요건 부과 금지	△(2.4조)	o(WTO/TRIMs준용)	o
비합치조치 (ratchet 규정 포함)	o(NT,이행요건 등) (o: 3.2조)	o(NT만 적용) (o)	o(NT,MFN,이행요건,고위 경영진에 적용)(o)
송금 보장	o	o	o
고위경영진 국적요건 부과 금지	x	x	o
투자관련 인력의 일시적 입국, 체류 및 근로 허가	△(2.4조)	O(기술인력, working holiday)	x
수용·보상(간접수용 판단기준 등 구체 명시)	O(△)	o(o:부속서 13)	O(부속서)
대위변제	O	o	o
투명성(접촉처 포함)	O	o(o)	O(제21장)
투자자유화	x	x	o
투자협력(투자위원회 등)	△(협약)	o(o)	x
기타	-	-	투자환경, 임시세이프가드 ¹⁶

IV. 한중FTA 투자분야 협상시 예상 쟁점 및 요구사항(한국측 입장)

1. 투명성 확보 요구
 - 투자자의 질의에 대한 응답 절차 규정 및 관련 정보 제
공
 - 중국 정부 체결 국제협정과 국내법규의 제개정 내용 공
포
2. 설립전 단계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
3. 투자자유화 약속 요구
4.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협정 준수 보장을 위한 합리적 조
치의 확보

17

IV. 한중FTA 투자분야 협상시 예상 쟁점 및 요구사항(한국측 입장)

5. 투자활동에 따른 애로 해소를 위한 '투자위원회' 등의
설치
6. 현지 진출 기업인의 일시적 입국·체류·주재·근로허가
절차 완화
7. 투자관련 공무원의 부패관행 방지 노력
8. 내국민대우의 지방정부에의 확대 적용
9. 고위경영진·이사회의 국적요건 부과 금지

18

V. 한중FTA 투자분야 협상시 예상 쟁점 및 요구사항(중국측 입장)

- 중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 투자규정을 보면, 투자자 보호 수준이 높지 않아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왔음. 따라서 한중 FTA 투자협상에 있어 중국측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는 예상되지는 않음.
- 다만, 그간 중국이 체결한 일부 FTA(중-파키스탄, 중-페루)에서와 다수의 BIT에서 일시적 입국·체류·근로허가에 대한 호의적 고려를 규정한 조항을 포함시켜 온 점에 미루어 당해 조항을 협정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제안할 가능성

19

VI. 한중FTA 투자분야 협상목표 수준별 시나리오에 기한 대응 필요

- 한중 FTA 투자분야 협상 목표는 개정 한중BIT를 출발점으로 가장 높은 목표인 한미FTA 투자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협상 목표가 존재
- 따라서 협상 목표의 수준에 따라 우리의 협상 요구사항에 있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

20

한중 FTA 토론회

“지식재산 분야 협상 의의와 예상 쟁점”



2012년 1월 31일(목)

COEX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원오 교수

목차

<협상 총론>

1. 세계무역에서 지식재산 및 지재협상의 중요성
2. 양국의 지식재산 위상과 협상의 기본 접근 방향성

<협상 각론>

1. 특허, 영업비밀 관련 예상 쟁점
2. 상표, 지리적표시 관련 예상 쟁점
3. 저작권, 문화콘텐츠, 한류 관련 예상 쟁점
4. 집행(enforcement) 관련 예상 쟁점

<마치며>

총론 1-1. 세계무역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

◆ 기업의 생존 부등식: $V(\text{Value}) \geq P(\text{Price}) \geq C(\text{Cost})$

- 산업사회에서
-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는 ?
- $V(\text{Value})$ 를 높이는 요소 ?

◆ 무역거래에서 지식재산의 역할과 기능

- 해외에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은 해당 국가에서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권을 신속히 등록하고 제대로 보호받아야 시장진출이 가능하며,
- 상품생산에 활용된 특허기술과 영업비밀, 상품의 디자인은 상품의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소비자의 상품구매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해당 국가에서 특허권 등이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어야 상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1-2. 지재분야 협상의 의의 및 그 중요성

◆ 지재분야 협상의 의의와 역할

1. 전체협상의 레버리지 역할 수행 가능(우리 공세적 vs. 중국 수세적 분야)
2. 지재권 분야는 우리가 중국에게 요구할 것이 중국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분야이다.
3. 다른 분야에서의 수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 지재권 분야 협상의 중요성

- 중국의 지재권 침해나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액수는 연간 약 3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 이러한 액수는 한류의 물결이 더 거세지고 한·중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전체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재권 분야 협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2. 지재권 협상의 방향성과 접근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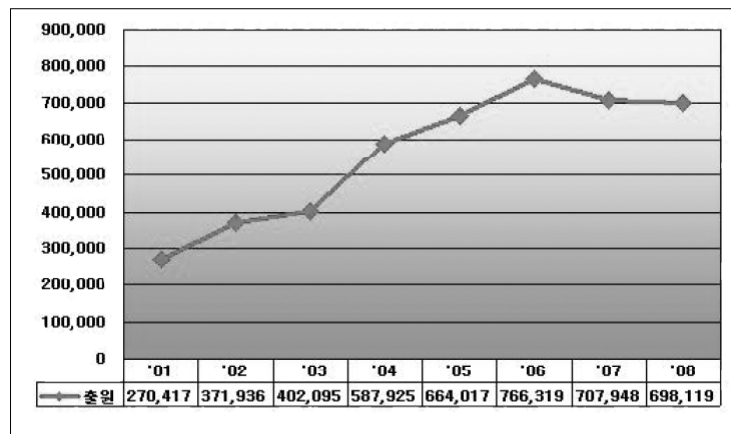
◆ 지재 협상의 방향성 : 한·미 FTA 수준의 협상

우리나라가 이미 미국 및 유럽연합과 체결한 FTA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한층 높이고 제도적 정비를 완료한 만큼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는 한·미 및 한-EU간 FTA 협정 내용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다.

◆ 한국과 중국의 지재권 제도 위상의 차이(개요)

- 한국과 중국은 모두 WTO 가입국가로서 TRIPs 수준의 지재권 보호유지
- 우리는 그간 한·미 FTA 및 한-EU FTA를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지재권 제도를 정비, 운용하고 있다.
- 이에 비해 중국은 워낙 큰 시장으로 인하여 상표출원 7년 연속 세계1위를 기록하는 등 지식재산 출원 강국이지만 중국은 지재법을 운용한 역사가 일천하고 인식부족과 제도미비로 짝퉁과 모조품이 난무하는 등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제도에 비하여 제도가 덜 정비되어 있는 등 양 국간 지재권 보호 수준 차이가 현격하다.(출원현황, 보호, 침해실태 데이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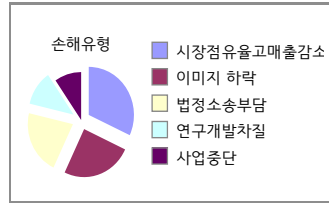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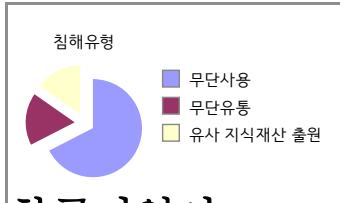
중국의 상표출원 및 심사건수 증감 동향



Applications	2005	Increase	2006	Increase	2007	Increase	2008
Accepted	240,725	-14.8%	205,149	21.9%	249,998	95.3%	488,219
Refused	71,306	51.3%	107,906	8.7%	117,339	87.7%	220,266
Partially					49,175	67.4%	82,339
Totally					68,164	102.3%	137,927
Total Dec	312,031	0.3%	313,055	17.3%	367,337	92.9%	708,485
Appeals	8,753	35.9%	11,893	14.8%	13,657		21,985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침해 현황(2)

침해 및 손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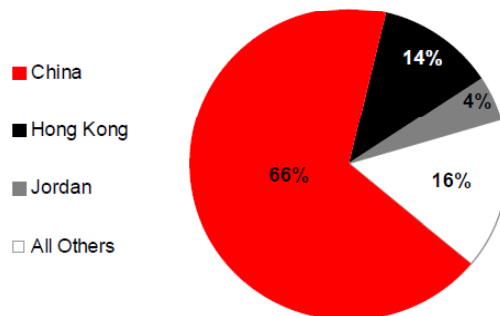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당하는 특허침해의 59%는 중국에서 발생하였다.

- 최근 10년간 3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국내기업 4만 9955 개사 중 조사 응답업체 6,013 개사의 22.1%인 1,328 개사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보았다고 대답하였다.
- 또한 현지 지식재산권침해의 유형별로 해외현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무단 사용이 80.0%로 가장 많았으며 현지 지식재산권의 무단 유통이 20.5%, 현지 지식재산권의 유사 지식재산권 출원이 18.1% 순위였다.
- 침해를 본 국가별로는 중국이 58.3%로 월등히 높았고, 대만·미국·일본·남미가 각각 5~6% 수준이다.
- 지식재산권 침해로 본 손해는 시장점유율 하락과 매출 감소가 74.4%로 가장 높았고, 대외적 자사 이미지 하락 58.6%, 법정 소송에 따른 부담 50.2%, 지속적인 연구개발 차질 27.4%, 사업 중단이 22.3% 등으로 나타났다.

- 7 -

미국의 지식재산 침해 압류 실태

FY 2010 Seizure Domestic Value



- ◆ 미국에서 압류한 지식재산 침해품 중 중국에서 제조된 것이 66%로 가장 많다. '10년 압류품의 Domestic Value는 1.246억 달러

- 8 -

중국의 콘텐츠 산업 규모와 SW 불법복제율

- ◆ 세계 콘텐츠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1조 3,200억 달러이며,
- ◆ 국가별 비중은 미국(1위)→일본(2위)→독일(3위)→중국(4위)→영국(5위)→프랑스(6위)→이탈리아(7위)→캐나다(8위)→한국(9위)→스페인(10위) 순이다.
- ◆ 2009년 중국의 콘텐츠산업 세계 시장규모는 4위(5.74%)로 9위(2.81%)인 우리나라보다 그 규모가 크며 매년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 ◆ 불법복제율
2010 Piracy Study 보고서에 따르면,
- ◆ 중국의 불법복제율은 78%로 상위 국가군에 속해 있으며,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약 78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 ◆ 최근 소폭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 평균치인 26%, OECD 평균치인 27%에는 많이 모자란 실정이며,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대책이 요구됨

II. 협상 각론

1. 예상 쟁점 도출과정

- ◆ 한국과 중국이 기 체결 한 FTA내용 분석
 - 한미 FTA 및 한-EU FTA 지식재산 합의조항 내용
 - 칠레, 파키스탄, 페루, 싱가포르 등과 중국이 체결한 FTA 내용분석
- ◆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분석
- ◆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관련 법제 비교분석
- ◆ 국제조약 가입 유도를 통한 조율
 - 특허법조약(PLT), 상표법조약 가입을 위한 전제적 제도 정비사항
 - 위조상품방지조약(ACTA)
 - 특허실체법조약(SPLT)을 염두

2. 특허 분야의 예상 쟁점들

우리측 주요 요구 사항

- I. 공지에외 인정 기간
- II. 등록지연을 보상하는 존속기간연장
- III. 의약품 판매허가 관련 존속기간연장
- IV.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 V. 부당한 특허권효력제한과 실시태양
- VI. 외국출원제한

- 11 -

2-2 특허법 분야 쟁점들에 대한 접근방법

- ◆ 우리측 예상 요구사항 중 고단계 사항의 처리
 - 우리측 요구사항 중 일부는 중국측이 수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면서, 미국/유럽 등이 이미 채택한 제도이어서 국제적인 조화라는 관점에서 거부하기도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필요, 특히 제약업계의 의견이 중요
 - 고단계 요구사항을 어떻게 관철 또는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인지가 협상의 관건
- ◆ 중국측 예상 요구 사항과 대응
 - 중국은 유전자원 출처를 출원서류에 기재하는 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

- 12 -

2. 저작권 분야의 예상 쟁점들

우리측 주요 예상 요구 사항

I.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II. 등록제도 운영상의 개선 및 상호협력

III. 인증제도 운영상의 협력

IV. 방송, 공연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V. 기술적조치 및 보호범위 명확화

VI. 권리관리정보의 보호강화 외 기타

- 13 -

2-2 저작권 분야 쟁점들에 대한 접근방법

◆ 우리측 예상 요구사항의 우선순위 정리

- 고도사항 위주로 정리: 기타 쟁점 다수 존재 - 문화 콘텐츠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총체적으로 재정비
- 우리측 요구사항들(특히 앞의 고도요구사항)은 중국측이 수용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으나, 미국/유럽 등이 이미 채택한 글로벌 스탠다드 및 국제적인 조화라는 관점에서 거부하기도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측 예상 요구사항

- 나름대로 중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저작권법상 차이에 기초한 중국측 요구사항이 몇 가지 예상되나 중요한 사항 아니거나 대처가 낫
- 예를 들어, 민간문학예술저작물의 보호 /곡예, 잡기 저작물의 보호/업무상 저작물 규정 /수정권 및 판면권 등

- 14 -

4. 상표, 지리적표시 분야의 예상 쟁점들

우리측 요구 주요 예상 쟁점

- I. 상표등록 대상 비전형 상표로 확대
- II. 상표등록 지연 해소(이의신청제도 등)
- III. 출원인을 위한 절차보장(TLT 준수)
- IV. 부당한 상표권 선점대책
- V. 상표권 침해 구제 효율화 대책
- VI. 형사처벌 적용 요건 완화

- 15 -

4-2. 상표법 분야 접근방법

- ◆ 진출기업 애로 및 우리 상표제도와 차이-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 1. 출원인의 절차보장 : 상표법조약 가입 및 싱가포르 개정조약 준수 의무 : 상표 사용권 등록 의무 제도의 폐지/거절이유 예고통지
 - 2. 중국인에 의한 국내 상표의 선점방지
 - (1) 부등록사유 검토 (2) 정보제공제도 (3) 회석화 침해로부터 보호
 - 3. 상표등록 지연문제 해소
 - (1) 심사자체의 지연 : 심사관 추가확충과 자질향상
 - (2) 이의신청제도 불합리성 개선: 불복불가/신청기한
 - 4. 권리구제 효율화 : (1) 위조상표 단속 미흡
 - (2) 단속관련 행정 및 사법 체제 개선 (3) 형사처벌 적용요건 완화
- ◆ 중국측 상표제도 관련 요구 예상
- ◆ 지리적 표시에서의 상호관심사
 - 한- EU FTA에서 TRIPs plus 형태로 보호 확대한 사항

- 16 -

5. 집행 영역의 예상 쟁점들

주요 예상 쟁점

I. 국경조치 관련 쟁점

II. 정보청구권과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III. 법정손해 배상제도

IV. 형사 처벌 요건의 완화

V. 증거보전 처분의 실효화

VI. 인터넷에 의한 침해

- 17 -

5-2. 집행 영역 접근방법

- ◆ 한중 FTA 지적재산권법 분야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
- ◆ 국경조치 관련 해서는 양 측에서 서로 개선촉구 사항 있음
 - 우리 : 담보액 과다, 압류물의 기부 금지, 대상 확대: 상표,저작물에서- 디자인, 특허 까지)
- ◆ 중국측 예상 요구사항
 - 국경조치에 '수출'포함,
 - 법정손해배상제도
 - 증거보전처분의 실효화
- ◆ 우리측 예상 요구사항
 - 인터넷을 통한 침해 규제법제 정비 및 침해단속 강화
 - 형사처벌요건 완화 : 상업적 규모 가벌 요건과 데드카피의 경우에만 적용
 - 비밀유지명령제도 :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서의 영업비밀의 비밀성 보호
 - 정보청구권 :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실효⁸성 확보

.마치며

◆ 특이사항

-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우리가 중국에 요구할 사항은 많은 반면, 중국이 우리에게 요구할 사항은 매우 적은 영역임
- 법개정을 수반해야 하는 쟁점이 대부분

◆ 협상의 전체적인 분위기

- 우리 산업과 기업을 위하여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중국이 수용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중국사회 및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쟁점은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도 있음
- 이슈와 쟁점이 많으므로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는 것이 협상전략의 관건

◆ 지재권 분야 협상의 중요성

-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쟁점이 많고,
- 다른 분야 협상 쟁점과의 bargaining 아이템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음

